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1067-01



EU 무역방어제도(TDI)



발간사

최근 WTO의 분쟁해결기능 약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 통상환경의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중 관계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유럽지역에서도 그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브렉시트, EU 무역 구제조치 개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U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對EU 교역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EU 공동통상정책(OCCP)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무역방어제도(Trade Defence Instruments)는 우리가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이번에 「EU 무역방어제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국제통상규범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고, 관련 연구서 및 홍보자료들을 다수 발간함으로써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EU무역방어제도에 대한 서적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EU는 비교적 합리적인 통상규칙을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 책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발간 과정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원 교수님과 영남대학교 김세환 교수님 그리고 법무부 국제법무과 담당자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아무쪼록 학계, 통상 관련 실무진 및 국제법 관계자들이 이 책을 널리 활용하여 EU 무역방어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필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법무부장관





목차 Contents

— FOCUS 1 — 서론_1

I. 개 요	1
II. EU의 공동통상정책(CCP)	3
1. 리스본 조약과 TDI	3
2. 법적 행위(Legal Acts)로서의 TDI	4
3. EU 공동통상정책(CCP)과 TDI	5

— FOCUS 2 — EU 반덤핑법_9

I. 개 관	9
1. 덤핑의 개념	9
2. EU 규칙(Regulation)의 법적 성격	11
3. EU 반덤핑법의 개요	14
4. 규제되는 덤핑	22
5. 동종상품	23
6. 피해의 형태	24
II. 실체적 요건 (1) : 덤핑의 존재	24
1. EU 반덤핑법 제2조	25
2. 정상가격	25

3. 수출가격	35
4. 공정한 가격의 비교와 조정	36
5. 덤핑마진	39
Ⅲ. 실체적 요건(2) : 피해의 존재	52
1. 덤핑상품(수입품)	53
2. 동종상품	53
3. EU 산업	54
4. 피해의 판정	56
5. 피해마진	60
Ⅳ. 실체적 요건(3) :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65
Ⅴ. 실체적 요건(4) : 반덤핑조치가 연합이익에 부합해야	67
Ⅵ. 반덤핑조사 절차	71
1. EU 반덤핑절차의 개관	72
2. 반덤핑조사의 개시	73
3. 반덤핑조사의 실시	78
4. 잠정조치	81
5. 가격인상약속	83
6. 확정 반덤핑조치	87
7. 반덤핑관세의 부과	92



목차 Contents

8. 소급적용	96
9. 재심, 기간 및 환급	100
10. 흡수재심(Absorption)	105
11. 현장검증 및 샘플링	106
VII. 위원회 절차	112
VIII. 우회덤핑	116
1. 우회덤핑의 개요	116
2. 우회덤핑의 요건	117
3. WTO 반덤핑협정에의 합치성 문제	119
IX. 사법심사	122



EU 반보조금법 _ 125

I. 개 관	125
1. 보조금의 정의	125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126
3. EU 반보조금법의 개요	127
4. 동종상품	130
5. 피해의 의미	131
6. 규제되는 보조금	131

II. 실체적 요건	132
1. 보조금의 존재	132
2. 피해의 존재	136
3. 인과관계	143
4. EU 이익에 부합	144
III. 절차적 요건	145
1. EU 반보조금절차의 개관	145
2. 절차의 개시	146
3. 조사	150
4. 잠정조치	153
5. 가격인상약속	154
6. 확정조치의 부과	159
7. 상계관세의 부과기간	165
8. 재심	165
9. 환급	167
10. 현장검증 및 샘플링	168
11. 비밀정보	171
12. 정보의 공개	173
13. 위원회 절차	174
IV. 상계조치의 우회	174
1. 개요	174
2. 우회의 요건	175
3. 조사절차	176
4. 우회결정의 효과	177



목차 Contents



EU 통상장벽규칙(TBR) _ 178

I. TBR의 의의	178
II. TBR의 근거와 TDI와의 비교	182
1. TBR의 입법적 변천	182
2. TBR과 TDI의 비교	183
III. TBR 개요	185
1. 전문에 대한 분석	186
2. 본문 규정들에 대한 분석	191
IV. TBR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검토: ‘청원권자’와 ‘조사절차’를 중심으로	213
1. 청원권자(Complainant)	213
2. 조사절차	215
V. TBR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검토: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219
1. 통상장벽의 의미	219
2. 통상장벽의 ‘부정적 효과’	221

VI. TBR 사례 연구	225
1. 제3국의 만족스러운 조치 사례	225
2. EU 후속조치가 필요했던 사례	227
3.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	234
VII. 맺음말	238



표 목차 Table Contents

〈표 1-1〉 EU CCP의 설립조약상 변천	8
〈표 2-1〉 WTO 반덤핑협정 및 EU 반덤핑법 조문 비교	20
〈표 3-1〉 WTO 보조금협정 및 EU 반보조금법 조문 비교	129
〈표 4-1〉 TBR의 규범적 변천 (2019년 1월 현재)	184
〈표 4-2〉 EU TBR(통상장벽규칙) 규정	185
〈표 4-3〉 TBR의 실체적 요건의 변화	224



그림 목차 Figure Contents

〈그림〉 TBR 조사절차 (2017년 터키 제지사건 사례)	218
--	-----

제1장 서론

I 개 요

무역방어제도(Trade Defence Instruments: TDI) 또는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ies)는 국가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관련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반덤핑, 반보조금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이 중 세이프가드조치는 급작스러운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조치들은 불공정한 수입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경우는 TDI란 명칭으로 역내산업 보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위의 3가지 조치와 같은 방어적 제도와 통상장벽규칙(Trade Barriers Regulation: TBR)과 같은 공세적 제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무역방어(구제)제도는 국제통상법에서 다루어지나 그 목표나 내용은 자유통상을 추구하는 국제통상법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무역방어제도는 주로 선진국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발전된 체계이다. 즉,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의 상품이 값싸게 수입되는 것을(덤핑) 꺼릴 이유가 없고 또는 외국 상품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수입되

는 것 또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경제학적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점은 명백해 질 것이다. 이것의 시사점은 무역방어제도는 각국의 국내산업의 구조-예를 들어 대기업위주인가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구조인가-에 따라 제도적 운영의 차이가 크고 기술적인 내용이 차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무역방어제도는 국제통상의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각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safety valve)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산업의 필요에 부응하여 국내산업의 고용증대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역방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실체적·절차적 합리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덤핑조치나 반보조금조치의 경우 ‘불공정성’(unfairness) 기준의 남용은 항상 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EU의 TDI에 대한 개략적 고찰이다. 주지하다시피 EU는 나를 가장 합리적인 통상규칙을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방어적 TDI 조치로 반덤핑(2장)과 반보조금제도(3장)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관련하여 2016년 이후 관련 EU 규칙의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소개할 것이다. 공세적 TDI 조치로 TBR(4장)에 대해서도 2015년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그 맥락을 짚어보고 사례 또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관련되는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관련 협정의 내용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II EU의 공동통상정책(CCP)¹⁾

1. 리스본 조약과 TDI

EU²⁾의 TDI는 EU의 2차입법(secondary measures) 또는 법적 행위(legal acts)로서 EU 설립조약인 리스본조약 중 EU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288조에 근거하여 입법되었다. 따라서 TD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설립과정 및 법적 행위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 이전의 EU는 법적으로 보면 2개 범주의 4개 기본조약에 근거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EU의 근간을 이루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성립에 관한 조약군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1)와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1957)가 있다(Treaty on the European Community: TEC). 두 번째 범주는 EU 성립에 관한 것으로 1997년 Maastricht 조약에서 출발한다(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첫 번째 범주의 EC성립은 1965년 단일의 집행위(Commission)와 각료회의(Council)를 성립시킨 통합조약(Merger Treaty)과 1992년 내부시장을 완성시킨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를 거쳐 Maastricht 조약에서 EC(European Community)로 개명되

1) EU CCP에 관해서는 김대원, '2015년 EU 통상장벽규칙(TBR)과 국제통상규범', 「강원법학」 제56권(2019.2)에서 수정 재인용하였다.

2) EU는 이전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에서 출발하여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 이래 EC가 EU로 확대되었고, 2009년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C는 EU로 흡수되고 EU만이 국제법적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범주의 EU성립에 관한 조약은 Masstricht 조약에서 EC를 첫 번째 축으로 하고, 회원국의 외교 및 안보와 경찰 및 사법권 공조에 관한 2개의 축이 추가되면서 성립되었다. EU는 그 후 1997년 Amsterdam 조약과 2001년 Nice 조약을 거치면서 발전하였고, EC와 EU에 관한 조항들의 합본(consolidated version)이 나타났다. 이때까지의 EU는 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가 아닌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였다. 두 개 조약군을 법적으로 통합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2004년 EU헌법조약이었지만 회원국 전체 비준에 실패하여 폐기되었고, 2007년 12월 1일 소헌법으로 불리던 리스본조약 발효에 따라³⁾ EC는 EU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2개 범주의 조약군은 EU 관련조약으로 통합되어 기존의 TEU와 TEC는 TEU와 TFEU로 개정되었다.

2. 법적 행위(Legal Acts)로서의 TDI

EU는 단일국가와는 달리 국가들 간의 권한행사(competence)로 운영되는 바, 정부간 기관과 의사결정절차가 그러한 권한행사와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규범적으로 EU는 TEU나 TFEU와 같은 설립조약과 그를 뒷받침하는 2차입법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데 리스본조약 이후 2차입법의 분류와 그 제정절차가 크게 변화되었다. 먼저 TFEU 제288조는 2차입법의 형식으로 ‘규칙’(regulation), ‘준칙’ 또는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과 권고나 각종 의견을 포함하는 연성법(soft law) 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정 방식에 따라 ‘법적 행위’는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로 나뉘고

3) 본문에서 인용하는 리스본 조약 한글본은 몇 가지 용어 변경 외에는 채형복 (번역), 「영한대역리스본 조약」(국제환경규제기법지원센터 2010)에 근거한다.

전자는 ‘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법적 행위(TFEU 제289조 3항)를 말하고, 비입법행위는 ‘위임행위’나 ‘실행행위’와 같이 비입법절차로 채택되는 법적 행위(TFEU 제289조 1항~3항)를 의미한다. 따라서 TDI의 경우 입법행위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규칙의 형식이지만 조사결과나 관련 조치를 집행위가 시행할 때는 ‘실행행위’라는 비입법행위로 그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적 행위’는 가능한 한 설립조약에 부합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데, TDI의 경우를 들면 설립조약상의 근거인 TFEU 제207조의 목적과 맥락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3. EU 공동통상정책(CCP)과 TDI

1) 개요

EU는 역사적으로는 역내시장(internal market) 확대를 통한 지역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성립된 관세동맹(Customs Union: CU)에서 기원한다. 이러한 유럽공동시장의 형성이라는 EU성립의 경제적 대의는 필연적으로 EU 역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통상정책인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EU라는 건물의 “외관(facade)”으로도 비유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EU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을 위한 EU” 건설을 위한 경제적 핵심동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CCP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며,⁵⁾ 유럽공동시장과 공동통상정책은 하나의 축선에서 원칙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최초 설립조약인 TEEC(로마조약)에서부터(제

4) 예를 들어 ECJ Judgment in case C-149/10 (Zoi Chatzi v Ypourgos Oikonomikon) (2010) 참조.

5) European Commission,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SEC(2006) 1230, p. 13.

111조~제114조) 규정되어 왔다.

EU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며⁶⁾ 따라서 CCP도 객관적인 규범에 근거하는 바 TFEU 제206조와 제207조가 그것이다. 그 동안의 개정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진화적 해석(evolutionary interpretation)을 거친 TFEU 제207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CP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보통입법절차에⁷⁾ 따른 규칙(regulations)으로 법적 형식을 규정하여 그 구속력을 높였다(TFEU 제207.2조). 둘째, 이전의 TEC에 비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통상 관련 지적재산권 및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까지 EU의 전속적 관할범위 (exclusive competence)가 되었다. 특히 처음으로 FDI가 CCP에 포함되었고 2001년 니스조약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서비스(예를 들어, 문화와 시청각 서비스 등)도⁸⁾ 예외 없이 EU의 관할대상이 되었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경우 이전에는 단순히 협의대상이었던 유럽의회가 리스본 조약에 의해 CCP의 기본골격에 관한 공동결정(co-decision)의 주체가 되는 등 CCP의 주요한 축으로 부상하였다(TFEU 207조 2항 및 3항). 넷째, 통상협정의 협상개시와 체결에 관한 각료회의 결정에 관해 이전의 '비례투표제'가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가중다수결제'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제207조 4항에

6) TEU 2조; 이전의 EC는 TEC 제281조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았지만 EU에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았다. 리스본조약 후 EC는 EU로 통합되면서 EU는 TEU 제47조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7) 리스본 조약상 입법절차는 '보통입법절차' (OLP), '특별입법절차' (SLP)의 2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EU 입법절차의 개시는 집행위의 권한이고 (TEU 17.2조) 유럽의회와 각료회의의 결정관여에 따라 OLP와 SLP로 나누어진다. OLP는 집행위의 제안으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가 공동으로 규칙, 지침 또는 결정을 채택하는 절차이고 (TFEU 289조 1항), SLP는 여러 조약에서 정하는 특수한 경우 각료회의의 참가와 함께 유럽의회가, 또는 유럽회의의 참가와 함께 각료회의가 규칙, 지침 또는 결정을 채택하는 절차를 (TFEU 289조 2항) 말한다.

8) CJ C 80/1 (2001), Treaty of Nice, 133조 5 & 6항 참조.

규정된 경우에는 전원일치제(unanimity)가 적용되는 등 (TFEU 제207.4조) 의사결정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2) CCP의 원칙과 4가지 통상정책수단

전통적으로 CCP는 통일성(uniformity)과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원칙으로 하였고, 리스본조약 이후에는 유럽연합조약(TFEU) 제5편 제1장의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른 원칙들이 추가되었다. 통상정책에 관한 일반적 분류 중 하나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인데, EU CCP도 이러한 2가지 분야에 대해 ‘통일성’과 ‘무역자유화’ 원칙이 적용되어 해석된다. 즉, (1) EU의 내부적 규율인 공동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 CCT)과 (2) EU의 수출입체제나 TDI와 같은 비관세조치의 2가지 유형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분류된다.⁹⁾ 더 나아가 (2)의 비관세장벽 관련 무역정책조치로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칙에 근거한 TDI와 TBR 등 4가지 정책수단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근본적 기초는 무역자유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¹⁰⁾

CCP와 관련하여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교섭·체결할 때 각료회의가 가중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서비스무역 등의 특정 분야 협상과 협정의

9) TFEU 206조와 I. Macleod et al.,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xford UP, 1996), p. 274 참조.

10) 4가지 정책수단은 TFEU 207.1조 ‘무역보호조치’ (“measures to protect trade”)로 규정되어 있다: “1. 공동통상정책은 특히 관세율의 변경, 상품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 협정의 체결, 지적 재산의 통상적 측면,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의 통일화, 수출정책, 덤핑 또는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와 같은 무역보호조치 등에 관한 통일원칙에 기초한다. 공동통상정책은 연합의 대외적 행동의 원칙 및 목표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다.”

체결은, 만일 그 협정에 역내법규의 채택에 전원일치가 요구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전원일치로 결정한다(TFEU 제207.4조 2단).

〈표 1-1〉 EU CCP의 설립조약상 변천

TEEC 113조 (1958년)	TEC 133조 (2002년 합본)	TFEU 207조 (2019년 현재)
1. After the expiry of the transitional period,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based on uniform principles, particularly in regard to tariff amendments, the conclusion of tariff or trade agreements, the alignment of measures of liberalisation, export policy and protective commercial measures including measures to be taken in cases of dumping or subsidies.	1.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based on uniform principles, [...]. [...] 5. Paragraphs 1 to 4 shall also apply to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in the fields of trade in <u>services and the commerci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u> , in so far as those agreements are not covered by the said paragraphs and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6. (밑줄 첨가)	1.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based on uniform principl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hanges in tariff rates, the conclusion of tariff and trade agreement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u>services</u> , and <u>the commerci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u> , <u>foreign direct investment</u> , the achievement of uniformity in measures of liberalisation, export policy and measures to protect trade such as those to be taken in the event of dumping or subsidies. <u>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Union's external action.</u> (밑줄 첨가)

제2장 EU 반덤핑법¹¹⁾

I 개 관

1. 덤핑의 개념

덤핑이란 수출품이 수출국내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성립된 수출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게 수입국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무역에서 덤핑행위는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국내산업에는 피해를 야기하지만, 수입국 국내산업을 붕괴시킨 후 다시금 가격 인상을 도모하는 약탈적 또는 집중적 덤핑이 아닌 한, 수입국의 사용자와 최종소비자 등에게는 동종상품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해 이익이 되고, 이로 인해 수입국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순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덤핑 그 자체보다는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얼마나 발생시키는 것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덤핑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94년 GATT 제6조와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WTO 반덤핑협정(Anti Dumping Agreement;

11) 제2장 EU 반덤핑법에 관해서는 그 내용 중 일부를 김세환, '유럽연합의 우회방지조치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8); 김세환,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 8)에서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하였다.

ADA)이다.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 제1조에서는 “비록 덤핑행위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타국 기업의 덤핑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려면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WTO 반덤핑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개시 및 수행할 경우에만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18조 제1항은 “상기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반덤핑조치가 국제규범에 합치할 때 비로소 적법한 조치가 됨을 천명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1항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비교가격(comparable price)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¹²⁾고 규정하여 덤핑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도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EU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반덤핑 규칙(Regulation)을 제정하여 덤핑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EU 반덤핑법(Regulation 2016/1036) 제1조 제2항에서는 “유럽연합에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확립된 비교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덤핑의 개념을 국제규범과 동일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정리

수출가격(export price)이 정상가격(normal value; 국내시장의 비교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덤핑이 발생 : 정상가격>수출가격

12) GATT 제6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that dumping, by which products of one country a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s...

- ※ 여기에서 말하는 비교가격은 수출국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출국의 국내소비판매로 예정된 동종물품의 가격을 말한다.
- ※ 수출국은 원칙적으로는 원산지국가이지만, 덤핑상품의 단순 환적국가가거나 덤핑상품이 당해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아 비교가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간국(intermediate country)도 수출국이 될 수 있다 (EU 반덤핑법 제1조 제3항)

2. EU 규칙(Regulation)의 법적 성격

1) EU의 법적 성격

유럽연합은 현재 28개 회원국(영국 포함)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이다. 유럽'연합'(Union)이란 의미 또는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다. 즉 이것은 유럽연합이 단순한 국가연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국가의 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EU는 단순한 국가연합의 단계보다는 진전된 형태이기는 하나(예를 들면, 외교안보대표부, EU의 집행부, 의회, 사법기관, 중앙은행, 유로화의 사용 등),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연방국가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은 그의 기관(Institutions)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EU의 기관으로서 리스본 조약을 구성하는 두 조약 중 하나인 유럽 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각료회의(Council),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 등 7개 기관이 있으며, 또 다른 조약인 EU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6부에서는 EU의 7개 기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EU 반덤핑규칙의 법원(法源)

EU 반덤핑규칙의 법원(法源)은 구 유럽공동체조약(TEC) 제133조 제1항을 계승하고 있는 TFEU 제207조이다. 동조는 “특히 관세율 변경, 관세 및 무역 관련 협정 체결, 무역자유화조치의 통일성 유지, 수출정책, 덤핑 및 보조금 교부시 취해지는 무역보호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근거해 공동통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덤핑조치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가 공동통상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틀을 정하기 위해서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TFEU 제207조에 의거하여 EU는 1968년 최초의 반덤핑법인 기본규칙(Basic Regulation) 459/68¹³⁾을 제정한 이래 2016년 6월 8일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Regulation 2016/1036¹⁴⁾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3) Regulation (EEC) No 459/68 of the Council of 5 April 1968 on protection against dumping or the granting of bounties or subsidies by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68, 45 OJ (L 93)1.

14)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2016 OJ(L 176/21).

3) 규칙의 법적 성격

한편 TFEU 제288조에 규정된 EU법의 위계질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본 조약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그 적용을 위해 별도의 국내적 도입절차(transposition)가 필요치 않은 규칙(Regulation)이 있으며, 규칙과 같은 구속력이 있으나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결정(Decision)과 권리의 주장에 있어서 국내적 변환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준칙(Directive)으로 그 위계질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EU법의 위계질서에 비추어 보면, 공동체기관의 반덤핑 사건에 대한 처분 즉 잠정조치 및 확정조치는 규칙 2016/1036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규칙(Regulation)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종전에는 집행위원회가 잠정조치를 부과하면 이에 따라 각료회의가 확정조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유럽의회의 권한확대와 집행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위해 제정된 Regulation 182/2011에 따르면 반덤핑조치시에 반드시 위원회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회의 확정반덤핑조치도 행사하도록 개정하였다(EU 반덤핑법 제15조).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면 각료회의에도 의회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EU의 독특한 권력구조상 유럽의회와 각료회의가 서로 협조하여 보통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하는 ‘규칙(Regulation)’은 우리 행정법상의 법규 명령보다도 상위개념인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개개의 반덤핑사건에서 잠정 및 확정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의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발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는 각료회의 및 유럽의회가 제정한 일

반적 적용가능성이 있는 규칙과는 달리 개별적 적용을 위한 법규명령적 규칙이다. 그리하여 각료회의 및 유럽의회가 제정한 규칙을 기본규칙(Basic Regulation)이라고 하여 개별적 적용을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EU 반덤핑 기본규칙은 개별사건에서의 규칙과는 달리 제정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이후에는 EU 반덤핑‘법’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3. EU 반덤핑법의 개요

1) 현행 반덤핑법(Regulation) 2016/1036¹⁵⁾ 시행 이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 등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창설 당시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는 GATT에서 타결된 무역구제조치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Regulation) 459/68¹⁶⁾을 최초로 제정하였는데, 이에에는 반덤핑조치 뿐만 아니라 반보조금 조치 및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최초의 기본규칙이 제정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규칙에 이르기까지 총 6회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79년 도쿄라운드 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규칙 3017/79¹⁷⁾을 거쳐 1984년 일몰조항을 도입한 기본규칙 2176/84¹⁸⁾ 그리

15) 2016년 7월 20일 발효된 현행 기본규칙 2016/1036은 직전의 개정전 반덤핑규칙인 2009/1225를 계승하고 있다.

16) Regulation (EEC) No 459/68 of the Council of 5 April 1968 on protection against dumping or the granting of bounties or subsidies by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68 OJ (L 93) 1.

17) Council Regulation (EEC) No 3017/79 of 20 December 197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고 1988년 반덤핑흡수관세를 도입한 기본규칙 2423/88,¹⁹⁾ 최초로 반덤핑 조치와 반보조금(anti-subsidy)조치가 분리되어 시행된 1996년의 기본규칙 384/96²⁰⁾이 있었다.

한편 기본규칙 384/96에서는 처음으로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된 공익(public interest) 조항을 받아들여 이를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공동체이익(Community Interest)을 제21조에서 규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에서 공익조항의 적용은 당국의 재량사항이었던 반면에 EU에서는 공동체이익 조항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9년의 전부개정 작업으로 기본규칙 1225/2009²¹⁾이 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미소덤핑(de minimis) 판정시 조사가 종결될 수 있는 수입물량의 비율에 관한 것이었다.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무시할 만한 덤핑수입량은 덤핑된 수입물량이 수입국에서 동종상품의 수입물량의 3%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²²⁾ 동 개정법에서는 EU에서 덤핑수입량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79 OJ (L 339) 1; 동 기본규칙에서는 반보조금 조치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반덤핑법과 함께 규정되다가 1996년에 분리되었다.

18) Council Regulation (EEC) No 2176/84 of 23 July 1984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84 OJ (L 201) 1.

19) Council Regulation (EEC) No 2423/88 of 11 July 1988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88 OJ (L 209) 1.

20)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of 22 December 1995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1996, OJ(L 56)1.

21)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9 OJ(L 343)51(이하 기본규칙 1225/2009라 한다).

이거나 덤핑수출국들의 덤핑수입량 합계가 공동체 전체 소비의 3% 미만이면 조사가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WTO 반덤핑협정 보다는 그 조건을 약간 완화하고 있다.²³⁾

2) 현행 반덤핑법(Regulation) 2016/1036의 도입

2012년 2월에 브로스만 사건²⁴⁾에서 ECJ는 시장경제국에서의 샘플링 방법을 규정한 제1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요한 판결을 내렸다. 동 사건에서 ECJ는 구 기본규칙 제17조(현행 규칙과 동일)에 규정된 샘플링 방법은 구 기본규칙 제2조 제7항 C(현행 규정과 동일)에서 규정된 시장경제국 대우(Market Economy Treatment; MET)²⁵⁾ 결정을 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구 기본규칙 제2조 제7항 C에 따르면 샘플링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 생산업자에게도 시장경제적 지위가 적용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구 기본규칙 제2조 제7항 C에서 규정된 조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브로스만의 판결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모든 사건에서 그 적용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되면 반덤핑조사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기본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22) WTO 반덤핑협정 제5.8조.

23) 기본규칙 1225/2009 제9조 3항 및 제5조 7항.

24) Case C-249/10 P, Brosmann Footwear (HK) Ltd and Others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5) 덤핑마진율은 보통 수출국의 시장가격 내지는 생산비용과 수출가격(덤핑가격)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개발도상국과 같이 수출국 정부가 개입하여 수출국 시장가격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수출국 시장가격을 믿지 못하면 다른 대체국(제3국)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새로이 정상가격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게 적용되는 것이 비시장경제 대우(Non Market Economy Treatment; NME)이며,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장경제 대우(Market Economy Treatment; MET)라고 한다.

또한 개정규칙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집행권한의 시행 주체를 변경하였다. 즉 이제까지 잠정 반덤핑조치는 집행위원회에게, 확정 반덤핑조치는 각료회의에 그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개정규칙에서는 확정 반덤핑조치의 집행권한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였다.²⁶⁾ 이렇게 확대된 집행위원회의 집행권한(implementing powers)을 제한하고자,²⁷⁾ 규칙 182/2011에서 규정된 자문절차, 심사절차 및 항소절차 등의 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를 기본규칙 제15조에 도입하였다.

3) 현행 반덤핑법 2016/1036의 일부 개정 : Regulation 2017/2321²⁸⁾

지금까지 EU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대우하여 중국 상품의 덤핑 판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에는 비시장경제국에 적용되는 대체국 가격(analogue price)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협정상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 후 15년이 경과하는 2016년 12월 11일 이후로 비시장경제국 대우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²⁹⁾ 더 이상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의 구분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을 강구할

26) Regulation 2016/1036 제9조 4항.

27) 집행위원회 권한에 대한 대표적인 조약 규정은 유럽연합조약(TEU) 제17조 제2항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TEU 및 TFEU)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의가 없으면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없다.

28)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19.12.2017 OJ (L 338) 1.

29)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제2항 (d):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였다.

필요성이 제기되어 EU집행위는 이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WTO 가입 15년이 경과하는 2016년 12월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취득한다고 주장하지만, EU 및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려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EU 및 미국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³⁰⁾

그리하여 이러한 중국의 국가주도적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반영되게끔 하는 규정들이 개정규칙에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출국 국내시장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significant distortions)할 때는 별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반덤핑조사 때에는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새로이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개정규칙 2017/2321 제1조 1항 참조).

4) 현행 반덤핑법 2016/1036의 일부 개정: Regulation 2018/825

EU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EU 반덤핑법 제9조 4항에 따라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인 덤핑마진과 수출가격과 EU 자체의 목표가격과의 차인 피해마진 중 더 적은 것을 기준으로 반덤핑관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왔는데(최소부과의 원칙 적용), 이것은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이러한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의무가 아니었던 반면에 EU의 경우에는 의무로 되어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

30) 중국은 2016년 미국과 EU를 WTO 분쟁패널에 제소하였지만 2019년 이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전기자전거(e-bike) 사건을 계기로 EU는 향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최소부과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원재료에 대해 변형을 가할 때)가 있을 때에는 피해마진보다 덤핑마진이 더 높다고 할지라도 덤핑마진에 근거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EU 개정반덤핑법(Regulation 2018/825) 제1조 6항 참조).

이러한 점은 연합이익(Union Interest) 테스트가 최소부과원칙을 매개로 하여 반덤핑조치의 실행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연합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지만, 향후에는 반대로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중 더 높은 것을 선택해 부과하는 것이 연합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반해 반보조금조치에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연합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개정규칙 2016/1037 제12조 1항, 제15조 1항 및 개정규칙 2018/825 제2조 4항과 7항 참조).

또한 개정법에서는 연합이익의 평가시에 EU 생산자(producer)의 이익중심에서 사용자(consumer) 이익 즉 EU의 중간재 산업 및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중시하기 위해 사용자 및 소비자단체의 반덤핑조사 및 부과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에서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5) Regulation 182/2011³¹⁾

반덤핑조치를 포함한 무역보호조치의 실행과 관련하여 매우 비대해진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 및 비대해진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31) Regulation (EU) No 182/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2011 OJ(L 55)13(이하 규칙 182/2011 이라 함).

실제로 통제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을 제정하였다. 동 규칙 전문 (4) 및 제1조 등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는 집행권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 또는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중 하나의 절차를 택해서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심사절차가 반덤핑조치 또는 반보조금조치에 적용될 때는 집행위원회는 위원회내 반대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유럽의회와 각료회의의 합의로 제정된 규칙 182/2011의 주요내용이 EU 반덤핑법에서 준용될 수 있도록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반보조금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표 2-1〉 WTO 반덤핑협정 및 EU 반덤핑법 조문 비교

WTO 반덤핑협정		EU 반보조금법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전문	목적 및 연혁	전문	목적 및 연혁
1	원칙	1	원칙
2	덤핑의 결정	2	덤핑의 결정
3	피해의 결정	3	피해의 결정
4	국내산업의 정의	4	EU산업의 정의
5	조사의 개시 및 실시	5	절차의 개시
6	증거	6	조사
부속서	현장검증절차,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의 적용요건		
7	잠정조치	7	잠정조치

WTO 반덤핑협정		EU 반보조금법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전문	목적 및 연혁	전문	목적 및 연혁
8	가격인상억속	8	가격인상억속
9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9	조치없는 종결, 확정관세의 부과
10	소급	10	소급
11	반덤핑관세 및 가격인상억속의 기간과 심사	11	존속기간, 재심 및 환급
12	공고 및 판정내용에 대한 설명	12	흡수재심
13	위법심사	13	반덤핑조치의 우회
14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	14	일반규정
		14a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15	개발도상국	15	위원회 절차
16	반덤핑관행위원회	16	현장검증
17	협의 및 분쟁해결	17	샘플링
18	최종조항	18	비협조기업
		19	비밀정보
		20	공고
		21	연합이익
		22	최종조항
		23	보고서
		23a	위임권한의 행사
		24	폐지
		25	발효

4. 규제되는 덤핑

덤핑은 수출업자가 수출품의 국내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수출가격은 낮게 책정하여 수출가격을 국내가격보다 차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가격 차별이다. 그리고 GATT와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이러한 가격덤핑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한편 1947년 체결된 GATT 협정 제6조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서비스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6조도 환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환율 덤핑, 임금격차 및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덤핑,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보다 엄격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이 보다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데서 오는 환경 덤핑, 수출국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위한 서비스 가격 및 운임률 저가책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덤핑 내지 운임 덤핑을 제외하였다.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제하는 가격덤핑에는 은폐덤핑, 약탈적 덤핑, 시장팽창덤핑, 간헐적 덤핑, 국부적 덤핑 등이 포함된다.

EU 반덤핑법도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므로 수출가격과 수출국 시장의 정상가격 간의 차이가 나는 덤핑이 그 대상이 되며(EU 반덤핑법 제1조 2항), 또한 이러한 가격덤핑으로 인해 EU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비로소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EU 반덤핑법 제1조 1항).

5. 동종상품

동종상품(like product)이란 조사 중인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identical)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조사 중인 상품과 밀접하게 유사(closely resembling)한 특성(characteristics)을 가지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EU 반덤핑법 제1조 4항).

일반적으로 동종상품의 정의는 덤핑 및 피해결정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수출업자는 동종상품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좁게 하여 관세부담액을 줄이려고 할 것이지만, 반덤핑조사 당국은 동종상품이 범위를 넓게 보아 관세부과액을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동종상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은 위에서 보듯이 동종상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기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밀접하게 유사한(closely resembling)’, ‘특성(characteristics)’ 등은 각국에서 자국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EU도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6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EU 차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동종상품의 개념은 세이프가드(Safeguards) 협정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서와는 달리 “동종 혹은 직접적 경쟁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상품의 개념은 반덤핑조치에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6. 피해의 형태

EU 반덤핑법 제3조 2항에서 말하는 피해(injury)는 EU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의미하며(EU 반덤핑법 제3조 2항),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협(threat)과 EU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체(material retardation)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EU 반덤핑법 제3조 1항).

WTO 반덤핑협정 제3조 1항에 따라 규정된 EU 반덤핑법 제3조 2항은 피해결정을 할 때는 덤핑상품의 수량과 공동체시장에서 동종상품의 가격에 끼치는 효과 및 덤핑상품으로 인해 동종상품의 EU산업에 끼치는 효과에 관해, 또한 덤핑상품이 공동체시장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연속적인 영향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피해의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I

실체적 요건 (I) : 덤핑의 존재

집행위원회가 외국상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존재해야 하고 EU산업에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와 덤핑간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EU 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달리 이러한 덤핑부과 조건 외에 반덤핑조치가 EU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덤핑의 실체적 조건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EU 반덤핑법 제2조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우선 덤핑이 존재해야 한다. EU 반덤핑법 제2조는 이러한 덤핑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는 정상가격에 대해서, 제8항 내지 제9항에서는 수출가격에 대해서, 제9항에서 제10항까지는 공정한 비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덤핑마진을 제1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제2조가 덤핑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EU 반덤핑법 조항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정상가격

1) 원칙: 수출국 국내가격

정상가격(normal value)이란 수출국의 국내소비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즉 독립된 소비자가 지불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EU 반덤핑법 제2조 1항).

반덤핑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출상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

격으로 수입국에 판매되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끼쳤을 때 이러한 수출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만큼(이 차이가 덤핑마진이다)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덤핑의 판정에 있어 이러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정상가격은 보통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됨이 원칙이다.

2) 예외: 대체가격

(1) 구성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

수출국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판매가 없거나 그 판매량이 충분치 않은 때, 또는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으로 인해 정상가격을 산출하기에 적절치 않다면 원산지국가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가격에 근거하여서 구성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수출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한다(EU반덤핑법 제3조 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조 2항 참조).

가) 구성가격 산출예

원산지국가에서 정상적인 생산비용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 가격이다. 즉 이는 단위당 제조원가에다가 단위당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단위당 이윤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 구성된 정상가격의 3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생산 비용
- 합리적으로 산출된 판매 및 일반관리비(SG&A; 이하 '판관비'라 한다)
- 합리적으로 산출된 이윤

예를 들어 A기업 상품의 한 단위당 산출된 생산비용 및 이익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가격을 산출해보자.

※ 재료가 10,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50, 제조간접비가 10이며, 내부포장비가 1이라고 하자. 또한 판관비 및 일반관리비가 100이며, 이윤이 50이라고 가정하면 구성가격은 어떻게 되겠는지 산정해보자.

일단 제조원가를 구해보면, 상기의 자료에 따른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및 내부포장비를 모두 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생산원가를 구해야 하는데, 생산원가는 제조원가에 판관비를 더하면 된다. 이러한 생산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면 구성가격이 산출되게 되는 것이다.

$$\text{제조원가}(71) = \text{재료비}(10) + \text{노무비}(50) + \text{제조간접비}(10) + \text{내부포장비}(1)$$



$$\text{생산원가}(171) = \text{제조원가}(71) + \text{판관비}(100)$$



$$\text{구성가격}(221) = \text{생산원가}(171) + \text{이윤}(50)$$

나) 제3국 수출가격

제3국 수출가격이라 함은 조사 중인 상품과 동종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

의 EU 이외의 제3국으로 수출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제3국 수출가격은 수출국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수출국 국내의 판매가격이 없거나, 수출국 국내의 판매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가격비교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있을 때에는 제3국으로 수출된 동종상품의 수출가격을 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수준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동일한 거래수준이란 보통 공장도 거래수준을 의미하며,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란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된 가격이 있을 때, 물물거래량이 상당하여 그 거래량이 의미가 있을 때 그리고 비상업적인 처리협약(non-commercial processing arrangements)이 있을 때 등이다(EU 반덤핑법 제3조 3항).³²⁾

그러나 제3국으로의 동종상품의 수출이 원가미만의 판매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판매자 또는 생산자의 가격

EU는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동종상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판매자나 다른 생산자의 가격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판매자나 다른 생산자의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된다면 수출업자는 자기의 수출가격이 덤핑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 EU에서는 관행적으로 구성가격을 선호하여

32)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4 공정한 가격의 비교와 조정' 부분을 참고할 것

왔는데, 그 이유는 제3국 수출가격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을 EU 당국이 실제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구성가격 선택시에는 기업의 원가와 판매비 및 이윤에 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검증이 쉽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성가격 산정은 이윤의 적용이 자의적이어서 정상가격이 의도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마찰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가)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제휴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와 판매자 상호간 제휴관계이거나 보상약정이 맺어져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정의 존재여부는 2015년에 공포된 EU관세법 시행규칙³³⁾에 근거한다(EU 반덤핑법 제2조 1항).

② 원가 이하의 판매의 경우

동종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 또는 제3국 수출가격이 단위당 생산 원가에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더한 원가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 내 상당한 양을 판매하고, 동 판매가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가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한정된다(EU 반덤핑법 제2조 1항).

3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of 24 Novem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OJ L 343, 29.12.2015, p. 558).

여기에서 첫째, 연장된 기간 내라 함은 보통 1년이며 6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합리적인 기간 내 원가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판매 당시의 단위당 원가에는 미달하였지만 기간 전체에 걸친 단위당 가중평균 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예를 들어 가격 하락이 심한 원자재를 사용해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상당한 수량(substantial quantities)으로 판매된 경우라 함은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단위당 가중평균원가보다 낮은 경우 또는 원가 이하의 판매량이 정상가격 산정시 판매량의 20%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제2조 2항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2항 1호에서는 원가이하의 판매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 산정에서 수출국 국내판매를 제외하는 경우: 동종상품의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 또는 제3국 수출가격이 원가 이하일 경우 + 연장된 기간 내에 상당한 양을 판매(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단위당 가중평균원가보다 낮은 경우 또는 원가 이하의 판매량이 정상가격 산정시 판매량의 20% 이상) + 판매가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국내판매량

수출국 국내판매량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U로 수출된 판매량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5% 미만인 경우에도 상품가격이 관련시장에서 대표가격으로 인정되면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이 된다(EU 반덤핑법 제2조 2항).

다) 특별한 시장상황

EU 반덤핑법 제2조 3항 첫째 문장에서는 정상가격 산정시 수출국 국내 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동종상품의 판매가 없거나, 그 판매량이 충분치 않을 때(5% 이하), 그리고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으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된 가격이 있는 경우, 상당한 양의 물물거래가 있는 경우, 비상업적인 처리협약(non-commercial processing arrangements)이 있는 경우 등을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특별한 시장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여지가 있는 것에 비하여 EU 반덤핑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라) 원가의 계산

조사대상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그 해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을 준수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원가가 조사대상 상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동 원가가 반영된다(EU반덤핑법 제2조 5항).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의 원가를 합리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해당국의 다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가에 근거하여 조정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활용되어온 원가의 적절한 배분에 근거해서 제출된 증

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없다면 총매출액 기준으로 원가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

만약 원가배분이 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원가는 미래 또는 현재의 생산에 이익을 주는 비정상적인 원가항목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조사대상기업의 원가계산이 인정되는 조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준수 + 원가의 합리적인 반영

원가의 계산은 보통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으로 EU는 제2조 제5항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를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각 국의 기업회계준칙이 될 것이므로 기업은 보통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당국이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이다. 이러한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조사대상기업의 원가계산이 상품의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EU는 반덤핑법 제2조 6항에서 판관비 및 이윤의 산출과 관련하여 이러한 판관비 및 이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아닐 경우 다음 아래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를 따른 것이다.

첫째,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둘째,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셋째,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 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EU는 현재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몽고, 북한 등 12개국을 포함하여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베트남 및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비시장경제국이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EU반덤핑법 제2조 7항).

이러한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정상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형성된 수출국 국내가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시장경제국에서의 가격이나 그 국가에서 구성된 구성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가격이 EU를 포함하여 타국으로의 가격,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EU에서 동종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 있는 가격을 포함하여 이익마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시장경제국을 선택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조사대상국에 다른 시장경제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국가를 제3의 시장경제국으로 선택하여 한다.

반덤핑조사 개시일에 WTO 회원국인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및 비시장경제국의 수입품의 정상가격은 동 국가의 조사대상기업이, 관련 동종상품의 제조 및 판매가 EU 반덤핑법 제2조 7항 c에 정해진 기준-국가의 개입이 없었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되었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등-과 절차를 따라 시장경제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정상가격은 EU 반덤핑법 제2조 1항 내지 제6항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즉 이 말은 조사대상기업의 국내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상태의 주장은 특정한 산업별 또는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다른 산업분야에는 비시장경제국 대우가 계속 적용된다.

참고로 WTO 가입의정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가입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대체국 규정이 상실된다는 즉 비시장경제국 지위에 따른 반덤핑조사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가입의정서 제15항 d) 대해 미국과 EU는 아직도 국가 및 국영기업의 지원 및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국에게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중국은 자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여, WTO에 제소하여 최근까지 이를 다투었지만, 최종 판결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중국이 제소를 철회하였다(WT/DS516/13 참조).

3. 수출가격

수출가격이란 수출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지불된 또는 지불가능한 가격을 말한다(EU 반덤핑법 제2조 8항). 다시 말해서 어떤 상품의 수출국 생산자(수출업자)에 의해 유럽연합내 수입업자에게 팔리는 가격을 말한다. 수출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발행한 송장가격이나 기타 선하증권과 신용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로 수출가격이 없거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또는 제3자)간에 제휴 또는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즉 덤핑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동 상품을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한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이라 하며, 구성수출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 및 재판매시 발생된 관세와 세금, 각종 비용 등이 반영되어 산출된 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수출가격의 구성

- A : 어떤 수출품(또는 동종상품)의 수출국 내수가격이 10,000 유로라고 할 때
- B : 동 상품을 EU에 수출할 때 표시된 송장가격이 11,000 유로라고 하자.
- C : EU 수입업자가 제3자인 C에게 재판매한 가격이 9,000 유로라고 하면

A와 B사이에 제휴 또는 보상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어 송장가격을 높게 발행하였다면 11,000원이 수출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C에게 재판매한 9,000원을 기초로 하여 관세와 조세 및 이윤 등을 공제가감하여 조정된 가격이 수출가격이 될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 제2.3조 내지 제2.4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가격을 새로이 구성하게 되면 수출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은폐된 덤핑을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공정한 가격의 비교와 조정

EU 반덤핑법 제2조 10항에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마진을 산출하기 위하여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WTO 반덤핑협정 제2.4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덤핑마진이란 수출가격을 상회하는 정상가격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수출가격과 국내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은 대금결제조건이나 판매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하게 되면 덤핑마진이 공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비교와 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U 반덤핑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공정한 비교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준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는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둘째로는 동시에 가능한 한 근접한 시점에서, 셋째로는 공정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1)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가격비교

상거래의 동일한 단계라 함은 보통은 공장에서 출하되는 단계를 의미하

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수준의 거래단계이면 서로 대칭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각각의 원가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장출하단계 → 내륙운송단계 → 선적단계 → 국제운송단계 → 수입통관 → 수입국 판매

상기의 경우 원가 발생은 공장출하단계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는 내륙운송단계에서 선적시까지 운송비용이, 세 번째 선적시부터 수입통관시까지는 컨테이너 비용, 국제운임 및 보험료와 수입통관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네 번째 수입통관에서 수입국 판매까지에는 수출국에서의 운송비와 판매에 따른 비용 및 이윤 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수출은 내수판매보다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은 내수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가격을 내수가격과 동일한 단계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선적되기 전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내수판매단계로 돌아가더라도 수출가격에는 선적까지의 비용(대표적으로는 운송비용)이 드는 것에 비하여 내수가격에는 개별 운송비와 판매비가 들기 때문에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즉 정상가격을 서로 공정하게 대칭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장에서 상품이 출하되는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2) 가능한 한 근접한 시기에서 가격비교

WTO 반덤핑협정과 EU 반덤핑법에서는 가능한 한 근접한 시기가 구체

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그 기간이 1년 인지, 아니면 월 별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않고 가능한 한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판매가격을 비교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두 가격 간 기간에 있어서의 대칭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른 요인들을 감안한 가격비교

만약 위의 기준을 따라 가격 비교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개별 사건에서 가격과 가격비교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되고 입증된 요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적절한 공제를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이중공제가 행해져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할인, 리베이트, 수량 및 거래단계에서 그러하다.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 조정이 행해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특성, 수입세와 간접세, 할인과 리베이트 그리고 수량, 거래단계, 운송보험료와 핸들링, 적재 및 부속비용, 포장, 외상판매, 판매 후 비용, 커미션, 통화환산 및 기타 요인 등을 들고 있다.

4) 조정요인의 입증책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증거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5. 덤핑마진

1) 정의

덤핑마진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이다. 즉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상회할 때 바꾸어 말하면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싸게 판매되어 발생하는 차이가 바로 덤핑마진이다. 이러한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으로 백분율하여 산정한 값이 바로 덤핑마진율이며 반덤핑관세에서 부과되는 기준이 바로 덤핑마진율인 것이다. 보통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CIF)³⁴⁾임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덤핑마진} = \text{정상가격} - \text{수출가격}$$

$$\text{덤핑마진율} = (\text{덤핑마진}/\text{수출가격}) \times 100 \rightarrow (\text{덤핑마진}/\text{CIF 수출가격}) \times 100$$

2) 덤핑마진의 산정방법

EU 반덤핑법 제2조 11항은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를 따라 가격의 비교방식 즉 덤핑마진의 산정방식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칭적 비교방식인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또는 거래 대 거래에 근거한 개별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방식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비대칭적 방식인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개별수출가격의 비교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34) 무역상거래조건인 하나인 CIF(Cost Insurance Freight)는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에서 보내는 목적지(도착항)까지의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에 반해 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가중평균 정상가격이란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가중평균된 가격을 말하며, 가중평균 수출가격이라 함은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중평균된 수출가격을 의미한다. 가격비교시에 단순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각 거래별로 판매량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덤핑마진이 상이하면 이를 평균한 가중평균덤핑마진이 산정된다.

그리고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가중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은 물품이 대량생산되고 사양이 표준화되어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원칙 : 대칭적 비교방식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 즉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또는 거래 대 거래에 근거한 개별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방법을 들고 있다. 조사대상상품에 따라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가)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다음 아래는 수출된 어떤 상품의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이다. 단, 한 단위당 거래라고 가정하고 덤핑마진 및 덤핑마진율을 구해보자!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1월	11,000원	12,000원
3월	10,000원	9,000원
5월	9,000원	9,000원

가중평균 정상가격은 $(11,000+10,000\text{원}+9,000\text{원})/3 = 10,000\text{원}$ 이며, 가중평균 수출가격은 $(12,000\text{원}+9,000\text{원}+9,000\text{원})/3 = 10,000\text{원}$ 이 된다.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은 0이 되며, 덤핑마진율은 없게 된다.

나) 거래 대 거래

거래 대 거래 비교방식은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비교하여 덤핑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1월	11,000원	12,000원
3월	10,000원	9,000원
5월	9,000원	9,000원

1월에는 $11,000\text{원}-12,000\text{원} = -1,000\text{원}$, 3월은 $10,000\text{원}-9,000\text{원} = 1,000\text{원}$ 이고 5월에는 $9,000\text{원}-9,000\text{원} = 0$ 이므로 덤핑마진은 $(-1,000\text{원} + 1,000\text{원} + 0)/3 = 0$ 이 되고 덤핑마진율은 없게 된다.

(2) 예외: 비대칭적 비교방식(가중평균 대 거래)

비대칭적 비교방식인 가중평균 대 거래 방식은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방식이 (-)의 덤핑과 (+)의 덤핑이 서로 상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업자가 특정 기간, 특정 지역, 특정 거래처 등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덤핑

함으로써 시장을 확보한 다음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덤핑 마진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은폐된 덤핑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안된 비교방식이 바로 가중평균 대 거래 비교방식이다.

가중평균 대 거래의 비교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구매자와 지역 및 기간이 달라 수출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그리고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또는 거래 대 거래 방식으로는 덤핑마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때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EU에서 거래된 모든 개별 수출거래의 가격과 비교하여야 한다.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1월	11,000원	12,000원
3월	10,000원	9,000원
5월	9,000원	9,000원

가중평균 정상가격은 10,000원이 되며, 이러한 가중평균 정상가격인 10,000원을 개별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구해보면 1월은 -2,000원, 3월은 1,000원이며, 5월도 1,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전체의 덤핑마진은 $(-2,000원 + 1,000 + 1,000)/3 = 0$ 이 되며, 덤핑마진율도 없다.

⇒ 사례: 페트로브(Petrotub and Republica) 사건³⁵⁾

가. 사건개요

1997년 5월 29일에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수입되는

35) Case C-76/00 P, Petrotub SA and Republica SA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of 9 January 2003, ECR I-00079; Joined cases T-33/98 and T-34/98, Petrotub SA and Republica SA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econd Chamber, extended composition) of 15 December 1999 II-03837.

이음매없는 파이프와 강관과 비합금강(certain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non-alloy steel)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는데, Petrotub and Republica는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이유 및 결정에 대한 근거사실에 대한 공표를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였다. 최종적으로 각료회의(Council)는 Petrotub and Republica사의 상품에 대해 9.8%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며, Petrotub and Republica사는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사건에서 법원에 제기된 가장 주요한 쟁점은 EU 반덤핑법 제2조 11항당시의 규칙 384/96 제2조 11항은 현재와 같다)과 관련한 해석이었다. 즉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교방식에는 EU 반덤핑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먼저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가중평균 수출가격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개별 정상가격을 개별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방식으로도 덤핑의 정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구매자와 지역 및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반덤핑법(384/96) 제2조 11항 :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export transactions to the Community [the first symmetrical method], or by a comparison of individual normal values and individual export prices to the Community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the second symmetrical method]. However,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all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to the Community [the asymmetrical method], if there is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s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the methods specified in the first sentence of this paragraph would not reflect the full degree of dumping being practised. ...□

그리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집행위원회는 페트로브사 등에 대해 조사기간 동안 현저하게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이 존재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가중평균 수

출가격 비교방식으로는 덤핑의 정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세 번째 방법인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 비교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조사방식에 대해서 제소자인 페트로브사는 첫째 방식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셋째 방식인 비대칭적 방법을 사용하려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기관(집행위원회 및 각료회의)은 이러한 설명 없이 세 번째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절차의 위배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는 EU 반덤핑법과 마찬가지로 덤핑마진의 공정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EU 반덤핑법의 내용과 거의 같지만,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방식을 대칭적 비교방식에서 비대칭적 비교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 : ...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first symmetrical method]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second symmetrical method].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asymmetrical method]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

나. 판결

동 사건에서 1심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1심인 일반법원의 판단은 EU법과 WTO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EU법을 따랐다면 그것은 아래의 TFEU 제296조의 적용에 의거하여 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EU 반덤핑법 제2조 11항에서는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가중평균 수출가격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개별 정상가격을 개별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교방식으로도 덤핑의 정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구매자와 지역 및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서는 “덤핑마진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를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발견하고, 왜 가중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방식으로는 이러한 차이점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로 차이점이 있지만, TFEU 제296조 1항에서는 “채택되어야 할 행위의 종류를 제 조약이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동체기관은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위원회 및 각료회의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소심인 ECJ는 비대칭적 방법에 의존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의 사용이 덤핑마진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법원은 EU 반덤핑법이 WTO 반덤핑협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ECJ는 WTO 반덤핑협정에 비추어 EU 반덤핑 기본규칙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서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가격비교시에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대칭적 방법 즉 가중평균에 의한 비교와 거래별 비교를 행하고 두 방법에 의해서 덤핑마진이 완전히 산정되지 않으면 비대칭적 비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기관이 이러한 고려 없이 곧바로 비대칭적 방법에 의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EU 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덤핑마진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제 : 제로잉

WTO 반덤핑협정이나 EU 반덤핑법에서는 이러한 비교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방식 2개와 예외적인 방식 1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세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GATT 체제 이후 WTO 반덤핑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로잉의 문제이다.

제로잉이란 (-)의 덤핑의 경우에 이를 덤핑마진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덤핑마진은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네거티브(-) 덤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네거티브 덤핑을 '0'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을 제로잉(Zeroing)이라 일컫는다. 결국 제로잉을 채택하는 목적은 덤핑마진을 높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제로잉 예시

- 정상가격을 하회하는 수출가격은 그대로 채택
-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수출가격은 제로잉을 한다.
- 산출된 개별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여 덤핑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떤 상품의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다.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1월	11,000원	12,000원	-1,000원	
3월	10,000원	9,000원	1,000원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5월	9,000원	9,000원	0원	
가중평균	10,000원	10,000원	0	0

먼저,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가중평균 수출가격의 비교에서는 가중평균 정상가격인 10,000과 가중평균 수출가격인 10,000원을 비교해야 하므로 덤핑마진은 없게 되고 덤핑마진율도 0이 된다.

다음으로 개별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사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1월	11,000원	12,000원	-1,000원	0
3월	10,000원	9,000원	1,000원	1,000
5월	9,000원	9,000원	0원	0
가중평균	10,000원	10,000원	0/3	1,000/3

개별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에서는 개별 거래마다 덤핑마진을 구해야 한다. 1월의 덤핑마진은 11,000원-12,000원 = -1,000원 이지만 제로잉을 사용하면 0이 된다. 3월은 10,000원-9,000원 = 1,000원이 되고, 5월에는 9,000원-9,000원 = 0이므로 결국 덤핑마진은 (0원 + 1,000원 + 0원)/3 = 333원이 되고 덤핑마진율은 333/10,000 = 3.33%가 되어 결국 개별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에서는 제로잉을 사용하게 되면 덤핑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품의 덤핑마진 산정시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을 사용하여 제로잉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1월	11,000원	12,000원	-2,000원	0
3월	10,000원	9,000원	1,000원	1,000
5월	9,000원	9,000원	10,000원	1,000
가중평균	10,000원	10,000원	0/3	1,000/3

가중평균 정상가격은 10,000원이 되며, 이러한 가중평균 정상가격인 10,000원을 개별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구해보면 1월의 덤핑마진은 10,000원-12,000원 = -2,000원이지만 제로잉하면 0이 된다. 3월은 10,000원-9,000원 = 1,000원이 되어 (+)의 덤핑마진이 발생되고, 5월에는 10,000원-9,000원 = 1,000원이 되어 역시 (+)의 덤핑마진이 발생된다. 결국 덤핑마진은 (0원 + 1,000원 + 1,000원)/3 = 666원이 되고 덤핑마진율은 666/10,000 = 6.66%가 되게 된다.

위의 예와 같이 개별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 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덤핑이 없더라도 개별 거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의 덤핑이 발생하게 되면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중평균 대 거래 방식에서 제로잉을 사용하게 되면 덤핑마진이 더욱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거래에서는 지역의 경쟁 상태와 기간 별로 그리고 고객의 규모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제로잉을 사용하게 되면 덤핑마진이 과다 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

(2) EU 제로잉

한편 EU는 WTO 반덤핑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조사대상상품 중 복수의 모델에서 제로잉을 행하여 이를 모델마다 가중평균하여 조사상품의 덤핑마진을 산정하여 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모델의 경우

구분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A 모델	1월	11,000원	12,000원	-2,000원	0
	3월	9,000원	11,000원	-2,000원	0
	5월	10,000원	9,000원	1,000원	1,000
가중평균		10,000원	10,000원	-3,000원	1,000/3

- B 모델의 경우

구분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B 모델	1월	11,000원	13,000원	-2,000원	0
	3월	9,000원	7,000원	2,000원	2,000
	5월	10,000원	10,000원	0	0
가중평균		10,000원	10,000원	0	2,000/3

최종단계에서는 모델 내 제로잉한 덤핑마진인 A 모델의 경우 1,000원과 B 모델의 경우 2,000원을 더한 3,000원이 되며 이것을 가중평균하면 $3,000/6 = 500$ 원의 덤핑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WTO 체제에 와서는 이러한 비교방식을 바꾸어 모델간 제로잉(inter-model zeroing)으로 변경하였다. 이 방법은 모델 내 단계에서는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모델 간 종합단계에서 제로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다:

– A 모델의 경우

구분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A 모델	1월	11,000원	13,000원	-3,000원	0
	3월	9,000원	9,000원	1,000원	1,000
	5월	10,000원	11,000원	-1,000원	0
가중평균		10,000원	11,000원	-3,000원/3	1,000/3

A 모델의 덤핑마진은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면 -1,000원이 된다.

– B 모델의 경우

구분	월별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제로잉의 경우
B 모델	1월	11,000원	13,000원	-2,000원	0
	3월	9,000원	4,000원	2,000원	2,000
	5월	10,000원	10,000원	0	0
가중평균		10,000원	9,000원	0	2,000/3

B 모델의 덤핑마진은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면 1,000원이 된다. 이제 종합단계에서 제로잉을 사용하면 A 모델은 덤핑마진이 0이 되고 B는 1,000원이 된다. 이러한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면 $1,000/6 = 160$ 원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제로잉 관행은³⁶⁾ EC-인도산 침구류(Bed Linen) 사건 및 다른 WTO 회원국들의 반발로 인하여 현재 EU는 덤핑마진 산정 시에는 제로잉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EC-Bed Linen 사건에서의 항소기구 보고서³⁷⁾

...이러한 방법 하에서, 조사당국은 가중평균에 기초한 정상가격을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 가격의 가중평균과 비교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2.4.2조가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를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의 덤핑 마진"을 "제로잉"함으로써, EC는 몇몇 수출거래, 즉 그러한 수출거래가 "부(-)의 덤핑 마진"으로 판정된 면 소재의 bed linen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출거래 가격의 전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EC는 그러한 수출가격을 있는 것보다 적은 것처럼 다루었다. 이것이 덤핑 마진의 산정결과를 부풀렸다. 따라서 EC는 가중평균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의 비교에 기초하여, 면 소재의 bed linen에 대한, 즉 조사 중인 상품의 모든 모델 또는 타입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들에 대한 "덤핑 마진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수출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상가격 사이의 비교가 - 이 분쟁에 있어서 "제로잉"의 관행처럼 - 제2.4조와 제2.4.2조에 의해 요구되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사이의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본다.

36) 유럽사법재판소도 볼베어링 사건에서 제로잉에 관한 EC 당국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당시 EC는 정상가격은 가중평균으로 수출가격은 개별거래가격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제로잉하였기 때문에 일본기업 5개사들은 이러한 EC의 제로잉이 당시의 기본규칙 제2조 9항의 공정한 비교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시 덤핑마진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던 기본규칙 제2조 13항을 살펴보면 덤핑마진의 산출방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규칙 제2조 9항의 공정한 비교 조항은 특정한 상황 이룰때면 상품의 물리적 특성, 수량, 판매조건의 차이 등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제2조 9항은 덤핑마진의 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조 13항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공동체 내에서 은폐된 덤핑을 발견하여 공동체산업에 끼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2조 13항 b에서 규정된 산출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 대 거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7) EC-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WT/DS 141; 추가적으로 패널은 공정한 비교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판매수량이나 대금결제조건 등이 서로 다른 국내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을 단순히 비교하여 나온 덤핑마진은 공정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 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는 우선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는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비교해야 하고 둘째, 덤핑률의 산정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중평균된 1개의 조정된 정상가격과 가중평균된 1개의 조정된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구매자, 지역, 기간에 집중덤핑이 있을 경우 또는 기계류와 같이 개별거래에 따라 가격 및 제품 특성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가중 평균가격과 개별거래가격간의 비교 또는 개별거래가격과 개별거래가격간을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하지만 EU는 여전히 피해마진(Injury Margin)을 산정할 때에는 제로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피해의 판정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WTO Plus Rule

오늘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제로잉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이러한 추가적인 규정을 WTO Plus Rule이라 한다.

III

실체적 요건(2) : 피해의 존재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덤핑이 EU산업에 피해를 끼쳤어야 한다. EU 반덤핑법 제3조 내지 제4조는 피해와 EU의 국내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U 반덤핑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란 EU산업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EU산

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공장도 거래수준)로 조정하여 비교한다.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수량이 불충분하는 등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판매와 가장 비교가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 물품판매를 기준으로 비교시장가격을 산정하고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차이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한다. 넷째, 이해관계인이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판매수량의 차이, 물리적 특성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가격조정에 반영한다.

업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threat), EU산업의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체(material retardation)를 가져오는 피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덤핑상품과 EU 산업내 동종상품 그리고 EU 산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피해에서 의미하는 ‘실질적(material)’이라는 의미는 ‘매우 크고 현실적인 또는 중대한’이라는 의미이다.

1. 덤핑상품(수입품)

반덤핑관세의 대상은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어 덤핑을 인정받은 덤핑수입품에 한정되며, 덤핑된 상품의 동종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WTO 반덤핑협정 제9조 2항). WTO 반덤핑협정 제9조 2항을 따라 규정된 EU 반덤핑법 제3조도 덤핑수입품(dumped impor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종상품의 개념과 분리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덤핑과 덤핑이 아닌 거래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덤핑 결정은 덤핑되지 않은 수입품에도 덤핑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 동종상품

덤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덤핑으로 의심받는 수입품과 EU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을 확정해야 하고, 피해 인정에도 EU내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EU산업이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동종상품의 정의는 덤핑의 존재와 피해의 인정에 중요하다.

동종상품은 동일한 상품 즉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같지는 않아도 덤핑 상품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므로 와인과 포도, 가공 쇠고기와 살아있는 소가 동종상품이 아닌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3. EU 산업

EU산업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EU생산자 전체 또는 상품 생산량 합계가 해당 상품의 EU 총생산량 중 대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EU 반덤핑법 제4조).

다만 다음의 두 경우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제외한다.

a) 덤핑혐의를 받는 당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가 그 수입자인 경우에는 이 생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자를 말한다.

⇒ 생산자가 수출자와 수입자에 관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세 경우를 말한다.

-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작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둘 모두 제3자에 의해 작간접적으로 통제받는 경우
- 둘 모두 제3자를 작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또는 관련된 효과로 생산자를 관련되지 않은 생산자와 다르게 행동하게 할 수 있다고 믿거나 다르게 행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또는 영업적 지위에 있을 때 그 일방은 타방을 통제한다고 본다.

⇒ 이러한 생산자들을 EU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생산자들은 덤핑에서 이익을 볼 수 있어 피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EU는 2개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고 구분된 개별시장내 생산자도 분리된 산업으로 간주된다.

- 한 시장에 속한 생산자가 해당 상품의 생산량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 시장에 판매하고
- 그 시장에서의 수요는 EU내 다른 지역에 있는 당해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충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EU 전체산업의 대부분에 피해가 없더라도 구분된 지역으로 집중적인 덤핑이 있었고, 덤핑상품으로 인해 동 시장내 생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U 산업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생산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수출자는 특정지역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가격이행약속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 연합이익에 대한 평가시 그 지역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가격이행약속이 즉시 없거나, 제8조 9항과 제8조 10항에 규정된 상황이 적용되면 잠정관세 또는 확정관세가 EU 전체차원에서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는 특정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세분된 시장에도 불구하고 EU 전체로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EU 당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4. 피해의 판정

1)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피해의 결정은 덤핑상품의 수량 및 EU 시장내 동종상품이 가격에 미치는 덤핑상품의 효과와 덤핑상품으로 인해 EU 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EU 당국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거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1) 덤핑상품의 수량 및 이로 인한 가격의 변동

우선 덤핑상품의 수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나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의 증가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덤핑수입 자체의 증가량을 의미하며, 상대적이라는 것은 EU 산업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가격에 미친 덤핑상품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U산업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상품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는지, 또는 덤핑상품의 효과로 상당한 정도의 가격하락이 있었거나 덤핑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상당한 정도의 가격상승이 저지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 비교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덤

핑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서 가격상승이 상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EU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덤핑상품 효과의 누적적 평가

여러 국가가 동시에 덤핑을 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반덤핑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는 데 이 경우 여러 국가에 의한 덤핑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3조 4항).

a) 국가별로 계산한 덤핑마진은 미소마진보다 커야 하고 국가별 수입물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b)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입품간, 수입품과 EU내 동종물품 간 경쟁조건에 따라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미소마진이란 수출가격의 2% 미만의 덤핑마진을 의미한다.

⇒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란 WTO 반덤핑협정 제5조 8항에서는 대체로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EU가 수입하는 동종상품 전체의 3%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2009년 반덤핑법 개정시(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제5조 7항에서 덤핑수입량이 EU에서의 시장점유율 1% 미만인 국가들에 대해서 또는 덤핑수출국들의 덤핑수입량 전체가 EU전체 소비의 3%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반덤핑법 제5조 7항에서도 동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WTO 반덤핑협정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EU 당국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각 국가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누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국가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동시에(simultaneously)' 실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이미 종료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2) 실질적 피해의 위협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인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희박한 가능성에 근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덤핑이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만드는 환경의 변화는 명확하게 예견될 수 있어야 하고 임박한(imminent)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의 예로는 WTO 반덤핑협정 주석 10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으로 수입상품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실질적으로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덤핑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b) 자유롭게 처분가능할 만큼 충분히 큰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존재 또는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실질적인 덤핑수입품의 증가가능성을 나타내는 생산시설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c)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이러한 수입품이 없었더라면 가격이 상승되었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품이 유입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격으로 유입되는지 그 여부

d) 조사 중인 상품의 재고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덤핑수입이 임박하여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위의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 ‘위의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즉 상기의 4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위 4 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결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EU 산업 설립의 실질적 지체

EU 반덤핑법은 어떠한 경우에 EU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체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규정은 사실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산업 설립의 지체에 대해서는 단지 주석 9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주석 9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산업의 피해에 대한 유형을 거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실제로 EU에서 산업설립의 지체로 인해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치를 취한 사례는 일본산 DRAMs 사례³⁸⁾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38) Certain types of electronic microcircuits known as DRAMs(Japan), 1990 OJ(L 20) 5.

5. 피해마진

1) 피해마진의 개념

EU 당국이 EU 반덤핑법 제7조 2항 및 제9조 4항 등에서 규정된 반덤핑 조치를 부과할 때에는 덤핑마진을 초과해서 부과해서는 아니 되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적을 경우에는 덤핑마진보다 적은 피해마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을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라고 한다.

문제는 최소부과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EU 반덤핑법 제7조 2항 및 제9조 4항에서는 공동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피해마진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조사 기관의 재량여지가 남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까지 EU에서 피해마진을 산정할 때는 관행적으로 염가판매마진(price underselling margin) 방식을 선택하여 왔다. 염가판매마진 방식이란 EU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이를 피해마진으로 삼는 방식이다.

- ⇒ 목표가격(target price)이란 EU 산업이 동종상품의 적절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을 가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덤핑상품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이윤을 가정하는 가상의 가격이다.
- ⇒ 적절한 이윤은 EU 산업의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더한 후 덤핑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합리적 이윤을 더해서 나온다.

⇒ 피해마진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U\text{산업의 적정판매가격}-수출업자의 CIF(비용(Cost) + 보험료(Insurance) + 화물 운임(Freight) 가격)/(수출업자의 CIF 가격)\} \times 100.$$

⇒ EU 산업의 적정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a) 국내생산자의 자료를 근거로 하는 방식
- b) 외국 생산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
- c) 시장의 판매가격을 중시하는 방식
- d)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는 방식

EU는 내수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 있어서 EU 자체내 생산자들의 역할이 크고 오랜 공동체시장의 경험으로 표준규격이 발달하여 원가자료 등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우선하여 산출하고 있다.

2) 목표가격과 관련한 문제점

문제는 EU가 설정한 목표가격은 EU 당국의 재량이 개입되어 적절한 이윤이 더해진 가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가격보다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는 피해마진 산정시 행하는 제로잉의 경우에서 나타나지만, 제로잉의 경우 외에도 다른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마진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

EU가 최초로 반덤핑법인 각료회의 기본규칙 459/68을 제정할 때에는

덤핑마진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가 이 후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가중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은폐된 덤핑을 발견하기에 쉽지 않자, 가중평균 대 개별거래 방식을 사용하면 서 네거티브 덤핑을 제로잉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가중평균 대 개별거래 방식에 따르면 개별수출상품의 수출가격이 거래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와 배송국별로 다른 경우에는 은폐된 덤핑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덤핑마진이 과다하게 산정되게 된다.

이러한 EU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EC 대 인도산 Bed Linen 사건에서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이러한 EU의 제로잉 관행이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의 공정한 가격비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이후로 EU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더 이상 제로잉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마진을 산정할 때에는 역시 제로잉을 행하여 오고 있다.

공정한 가격 비교의 원칙이란 판매수량이나 대금결제조건 등이 서로 다른 국내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을 단순히 비교하여 나온 덤핑마진은 공정하게 산출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선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는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비교해야 하고 둘째, 덤핑률의 산정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중평균된 1개의 조정된 정상가격과 가중평균된 1개의 조정된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구매자, 지역, 기간대에 집중적 덤핑이 있을 경우 또는 기계류와 같이 개별거래에 따라 가격 및 제품 특성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가중 평균가격과 개별거래가격간의 비교 또는 개별거래가격과 개별거래가격간을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공장도 거래수준)로 조정하여 비교한다.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수량이 불충분한 경우 등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판매와 가장 비교가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 상품판매를 기준으로 비교시장가격을 산정하고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차이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한다. 넷째, 이해관계인이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판매수량의 차이, 물리적특성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가격조정에 반영한다.

하지만 피해마진 산정시 제로잉을 행하는 EU의 관행이 반드시 WTO 반덤핑협정을 위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WTO 반덤핑협정상 위배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에 제로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적을 경우 그러한 피해마진을 반덤핑관세액으로 부과하여도 WTO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WTO 반덤핑협정 제2조 및 제9.4조는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 이하(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로 부과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마진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EU의 피해마진에서의 제로잉 사용은 EC-Pipe Fittings 사건에서³⁹⁾ 다투어졌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EC-Bed Linen 사건에서와 같이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를 위반한다고 판정하였지만, 피해마진 산정시 제로잉은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에 관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ECJ는 유럽비료제조업자협회(EFMA) 사건⁴⁰⁾에서 공동체기관의 피해마진 산정방식이 EU법과 WTO법상의 불일치의 측면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였다. 즉 법원은 “공동체산업이 달성할 수 있었을 적절한 이윤은 꼭 덤핑이 아니라 공동체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다른 요인들 예컨대 공동체산업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생산시설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덤핑에 의해서

39) WT/DS219/R

40) T-121/95, European Fertiliz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FMA)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210/95, European Fertiliz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FMA)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만 이윤이 감소되었다고 피해마진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공동체기관이 적정한 이윤을 산정할 때에는 그 산정기준으로서 당시의 반덤핑 기본규칙인 2423/88 제4조 1항⁴¹⁾ 및 제13조 3항⁴²⁾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 조에 따르면 공동체 산업의 피해는 덤핑 외에도 덤핑이 아닌 수입품의 수량의 증가 및 가격의 인하와 수요의 감소 등 공동체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마진 산정시 덤핑 외 이러한 요소들까지도 피해에 포함하여 피해마진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⁴³⁾

한편 동 판결에서는 피해마진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피해마진을 산정하는데 선결조건인 적정한 이윤을 도출해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다음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 가)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큰 경우에는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으로 축소
- 나)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적을 경우에 최소부과의 원칙이 적용되어 반덤핑 관세액은 피해마진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가)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마진이 과다하게 부풀려 산정되어 덤핑마진보다 클 경우에는 덤핑마진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인데 이것은 EU 반덤핑법 제9조 4항을 위배하게 된다. 나)의 경우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모두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경우에 만약 덤핑마진이 더 크다면 관세액은 피해마진

41) 기본규칙 2423/88 제4조 제1항(현행 기본규칙 제3조).

42) 기본규칙 2423/88 제13조 제3항(현행 기본규칙 제9조 4항).

43) 위의 판결, paras. 58, 69, 97 등 참조.

만큼 부과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EU 반덤핑법 제9조 4항을 위배하게 된다.

IV

실체적 요건(3) :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덤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덤핑과 EU 산업에 대한 피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는 바로 덤핑된 상품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3조 5항에 따라 제정된 EU 반덤핑법 제3조 제6항에서도 덤핑된 수입품으로 인해서 EU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를 덤핑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EU 산업의 피해가 덤핑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덤핑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과관계의 증명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해서는 EU 반덤핑법 제3조 6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당국은 덤핑과 관련된 요인과 덤핑과 관련되지 않은 요인들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덤핑과 관련되지 않는 요인이란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 국내 수요의 감소와 국내소비행태의 변화, 제3국 생산자와 EU 생산자의 제한적인 거래관행, 제3국 생산자와 EU 생산자간 경쟁, EU 산업의 기술과 수출역량 및 생산성의 발전 등을 의미한다(EU 반덤핑법 제3조 7항).

⇒ 엑스트라메사(Extramet Industrie) 사건⁴⁴⁾

– 사실관계

Extramet는 칼슘강(calcium metal)을 재처리해 야금산업에 사용되는 순수칼슘 과립(purified calcium granules)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및 소련산 칼슘강 최대 수입업자이기도 하였다. 동사는 이 원료를 프랑스의 빠시네(Péchiney)에서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원료들의 공동체시장내 유일한 공급자이기도 하였던 빠시네는 Extramet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Extramet는 프랑스 당국에 경쟁법 위반으로 빠시네를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빠시네는 EC 위원회에 Extramet를 덤핑으로 제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료회의는 Extramet의 중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21.8%, 소련산 원료에 대해서는 22%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Extramet사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각료회의 규칙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ECJ에 제기하였다.

Extramet는 동 소송에서 ‘동종 상품’의 정의, 정상가격의 산정,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의 인정, 공동체 이익에 대한 평가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적 오류를 주장하였는데, 이 중 특히 공동체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체 생산업자인 빠시네가 스스로 Extramet에 대해 원료공급의 거절로 인해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사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4) Case C-358/89, Judgment of the Court(Sixth Chamber) of 11 June 1992, Extramet Industrie SA v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법원의 결정

동 사건에서 법원은 Pechiney사의 Extramet사에 대한 원료 공급 거절 때문에 Extramet사가 Pechiney사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abuse of a dominant position)을 이유로 프랑스 당국에 제소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각료회의 규칙 제4조 1항⁴⁵⁾에 근거하여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가 덤핑 수입품에 의해 야기된 피해인지? 그리고 덤핑 이외의 요인에서 야기된 피해는 무시할 만한 피해인지? 즉 다시 말해서 공동체 생산자(Pechiney사)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피해는 무시해도 좋은지?에 관해 조사할 의무가 각료회의 및 집행위원회에게 있으나 각료회의 및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공동체 생산자(Pechiney사)의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제적인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해 판정에 있어 각료회의 및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V

실체적 요건(4) : 반덤핑조치가 연합이익에 부합해야

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존재하며 이러한 덤핑으로 인해서 EU 산업에 피해를 끼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덤핑과 피해의 존재 및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 조건의 충족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EU에서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연합이익(Union interest) 테스트라는 조건 하나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CJ는 EU 합금

45) Council Regulation (EEC) No 2423/88 of 11 July 1988.

철무역협회(European ferro-alloys trade association; Euroalliances) 사건⁴⁶⁾에서 “EU 반덤핑법 제9조 4항 및 제21조에 규정된 연합이익 테스트는 일몰재심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것은 일몰재심에 연합이익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으로 당연히 원심의 반덤핑조치의 부과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 연합이익의 규정은 각료회의의 기본규칙(Council Regulation) 384/96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공동체 이익(Community Interest)이란 용어로 지칭되었다. 당시는 아직까지 EC(European Community) 체제였으며 아직까지 리스본 조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EU 체제로 전환된 리스본 조약이 체결될 무렵에 시행 중이었던 EU 반덤핑법인 각료회의의 기본규칙(Council Regulation) 1225/2009에서는 ‘연합이익(Union Interest)’로 지칭하였다.

EU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연합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EU 산업, 사용자, 소비자 등 공동체 전체의 다양한 이익을 전부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합이익을 평가할 때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해를 주는 덤핑의 무역왜곡효과를 없앨 필요성과 효과적인 경쟁을 회복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EU 반덤핑법 제21조 1항). 그러므로 연합이익 테스트는 다음 3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EU 산업, 사용자, 소비자 등 공동체 전체의 다양한 이익을 전부 평가

46) T 132/01, Euroalliances and Others v Commission

- 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 다) 피해를 주는 덤핑의 무역왜곡효과를 없앨 필요성 및 효과적인 경쟁을 회복할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할 것

⇒ EU 반덤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합이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제소한 EU 산업 및 수입자와 이들의 대표협회,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사용자 산업(user industry) 대표, 소매판매업자,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이익까지 EU 산업에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량하여야 한다.

⇒ 절차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고, 다른 이해당사자가 제시한 의견 및 정보에 대해 접근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규정에 근거하여 청문을 요구하여 들을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다.

EU 반덤핑법 제21조에 규정된 연합이익 조항은 WTO 반덤핑협정과 구별되는 조항이다. WTO 반덤핑협정 제6.12조는 “당국은 조사대상 상품의 산업적 이용자와 동 상품이 소매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에게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오로지 조사당국의 절차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제9.1조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입회원국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다”고 하여 최소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소부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연합이익의 테스트 실시 및 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EU 반덤핑법과 WTO 반덤핑협정은 이 점에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가 연합이익 테스트를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특성상 EU내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연합이익을 집행위원회가 EU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EU 기관은 실제로는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소한 EU 산업의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연합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덤핑 사례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익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통해서 집행위원회는 반덤핑조치의 행사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거의 제한 없이 행사함으로써 특정 외국상품의 EU 내로의 수입을 차단시키고 EU 산업을 보호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아파치 신발(Apache Footwear) 사건⁴⁷⁾에서 잘 드러난다. 동 사건에서 EU 기관의 공동체 이익 측정방법에 대한 선택에 관해서 일반 법원이, “기본규칙 384/96 제21조(현 2016/1036 제21조)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형량하는 방법에 관한 재량을 EU

47) Case T-1/07, Apache Footwear Ltd and Apache II Footwear Ltd (Qingxin)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⁴⁸⁾고 함으로써 추상적인 공동체이익의 측정 방법에 관한 재량권을 EU 기관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갑피달린 신발 사례⁴⁹⁾에서 EU 기관이 공동체 이익의 분석이 정치 외교적 분석이 아니며,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경제적 분석이고, 이것이 결코 대외정책을 행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EU 기관의 이러한 선언은 실제 관행과는 많이 다르다.

VI 반덤핑조사 절차

EU가 덤핑상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과 피해의 존재, 이러한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의 존재 및 이에 더하여 EU이익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EU 반덤핑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만약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반덤핑조치는 자의적인 조치가 되어 결국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하는 조치가 된다. 왜냐하면 EU 반덤핑법도 WTO 반덤핑협정을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48) Case T-1/07, Apache Footwear Ltd and Apache II Footwear Ltd (Qingxin) v Council, 2009 II-00232, para. 111.

49)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 1.

그러므로 EU 반덤핑법도 제5조 이하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당국이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EU 반덤핑절차의 개관

EU 반덤핑법은 제5조 이하에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5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절차의 개시와 직권에 의한 절차의 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제소자 적격, 증거채택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6조는 조사의 실시 및 조사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잠정 반덤핑조치를 제8조에서는 가격인상약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없이 조사의 종결하는 경우 및 확정 반덤핑조치의 부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소급규정을, 제11조에서는 확정 반덤핑조치의 기간과 재심 및 환급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반덤핑관세 흡수재심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우회덤핑의 판정을, 제14조에서는 반덤핑관세액의 부과와 회원국의 징수에 관한 일반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집행위원회의 확정반덤핑조치에 대한 견제책으로 반덤핑조사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집행위원회의 현장검증을, 제17조에서는 샘플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와 제20조에서는 조사 종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단순한 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위에서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절차들은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반덤핑조사의 개시

개시(initiation)란 EU 반덤핑법 제5조에 규정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를 말하는데, 조사개시일은 조사기간과 반덤핑조치(잠정 조치 및 확정조치)의 적용가능시기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개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사개시일은 ‘조사신청서의 제출일자’와도 틀리고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 및 ‘조사개시 공고일’과도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을 제소의 상대방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신청서의 제출일자나 집행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을 상대방은 알 수 없다.

다만 조사개시 공고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EU 반덤핑법 제5조에서는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조사개시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조사개시문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것을 조사를 시작하는 절차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개시문의 게재일자를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덤핑조사의 개시는 신청에 의한 개시와 직권에 의한 개시로 나뉘어진다.

1) 신청에 의한 개시

신청에 의한 개시는 덤핑으로 피해받았다고 또는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반덤핑조사 신청을 서면으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자격은 EU 산업을 위해 행위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하다.

만약 서면이 회원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또한 제소자의 서면신청이 없더라도 회원국이 덤핑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집행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

제소자가 생산하는 EU 생산량 및 생산액, 서면신청이 EU 산업을 대표해서 신청을 한 경우,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알려진 EU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회 명단에 의해서 제소자가 대표하는 산업과 동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동종상품의 EU 생산량과 생산액을 명시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2항 a).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당해 원산지 국가(들) 또는 수출국(들),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 및 당해 상품의 수입자의 신원(EU 반덤핑법 제5조 2항 b)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국가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된 당해 상품의 가격과 원산지 국가 또는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판매된 가격 또는 구성가격 정보, 수출가격 또는 당해상품이 EU에서 독립한 구매자에게 처음으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2항 c).

또한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수입품의 수량 변화, EU 시장에서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당해 수입품의 효과와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량 변화와 효과 및 영향에 대해서는 제3조 3항 및 5하에 규정된 EU산업의 상태와 관련된 요인 및 지표를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2항 d).

집행위원회는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소자가 제시한 증거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조사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3항).

한편 동종상품의 EU 생산자가 신청서에 표명한 찬반의사의 정도에 대해 검토한 것에 따라서 동 신청서가 EU 생산자에 의한 또는 EU 생산자를 대표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까지는 조사는 개시되지 않는다(EU 반덤핑법 제5조 4항).

그리고 조사에 참가하여 신청서에 찬반의사를 표명한 EU 생산자의 합계 생산량이 동종상품의 EU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동 신청서는 EU 생산자에 의해 또는 EU 생산자를 대표하여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조사에 찬성한 EU 생산자가 EU산업이 생산한 동종상품의 총생산량 중 25%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 50% 초과 기준 및 25% 초과 기준: EU산업의 대표성 판단 기준

EU 총생산량의 50% 초과 기준은 반덤핑조사에 대해 찬성한 EU산업의 생산량이 반덤핑조사에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EU산업의 생산량 중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임으로, 찬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EU산업의 생산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25% 기준은 EU산업이 생산한 동종상품의 총생산량 중 25%를 초과하여야 비로소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5% 기준에서 의미하는 수량은 생산량이지 판매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찬성을 표시한 EU산업의 총생산량이 전체 산업의 총생산량 중 25% 미만인 경우에는 EU 전체산업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조사의 실익이 없어 조사 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설명을 아래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찬성 산업 A	반대 산업 B	찬반의견 미표명 C
---------	---------	------------

→ 전체산업(D) = A + B + C

(1) 50% 기준 충족의 경우 : $A/A+B > 50\%$

(2) 25% 기준 충족의 경우 : $A/A+B+C > 25\%$

(3) 조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1) + (2)를 충족해야 한다.

※ 문) EU 자전거산업에 30,000대와 10,000대의 자전거를 생산하는 A, B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A사는 덤핑조사의 신청에 찬성하고 있고, B사는 찬성도 반대도 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덤핑조사의 절차가 개시될 수 있겠는가?

1) A사는 현재 EU에서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EU산업의 전체임으로(상기 예에서는 반대회사가 없으므로) 50% 기준을 충족한다. → $30,000/30,000 \times 100 = 100\%$

2) A사는 총생산량의 75%에 해당하므로 25% 기준을 충족한다. → $30,000/(30,000+10,000) = 75\%$

3) A사는 1) + 2)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제소 자격을 갖춘 산업이다.

당국은 조사결정 때까지 신청서를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개시 전에 관련 수출국 정부에는 고지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5조 5항).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조사개시를 결정할 때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신청서는 기각된다.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1% 미만 국가의 수입상품 합계가 EU 소비량의 3%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소비량의 3% 미만인 상품이 덤핑되었다고 실질적으로 EU 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 조항이다(EU 반덤핑법 제5조 7항). 그리고 신청서는 조사의 개시 전에 철회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5조 8항).

⇒ 조사의 개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되면 집행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45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제소자에게 신청서가 집행위원회에 접수된 지 4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관련 회원국에 신청서 분석정보를 신청서가 접수된 지 21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9항).

⇒ 개시의 통지

집행위원회의 반덤핑조사 개시 통지는 조사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관련 당사자가 자신을 알리고, 서면으로 견해를 제시하고, 이러한 견해와 정보가 조사기간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면 동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통지는 관련당사자가 제6조 5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청문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10항).

집행위원회는 수출국 대표와 제소자 뿐만 아니라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대표협회가 절차개시에 관해 잘 알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절한 주의를 하면서 알려진 수출자와 수출국 당국에 서면신청서 전문(全文)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5조 11항).

⇒ 반덤핑조사를 이유로 통관절차를 방해할 수 없다(EU 반덤핑법 제5조 11항).

3) 직권에 의한 개시

집행위원회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있으면 제소자의 서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권조사를 정당화할 덤핑과 피해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련수출국 정부에는 직권조사 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제소에 관련된 산업이 신청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거액의 반덤핑신청 비용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반덤핑조사의 실시

EU 반덤핑법 제6조에서는 반덤핑조사의 실시 및 그 중단에 관한 요건과 조사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사의 실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EU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덤핑의 경우에 조사개시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기간 이후에 취합된 정보는 고려되지 않는다(EU 반덤핑법 제6조 1항).

질문지를 받은 당사자는 적어도 30일간의 회신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

고 수출업자에 주어진 기한은 질문지 수령일로부터 기산된다. 수출업자에게 송달되거나 수출국의 적정한 외교대표에게 전달한 그 날로부터 일주일 후 부터 기산된다. 상기의 30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적절하게 밝히면 연장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6조 2항).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해당사자가 절차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청문해야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EU 반덤핑법 제6조 5항).

수출국 대표뿐만 아니라 제소자, 수입자, 수출자와 그들의 대표협회 및 사용자와 소비자 단체는 반덤핑조사에서 당사자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검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보는 회원국 정부가 준비한 내부서면과는 별개로 비밀정보가 아니어야 하고, 그들의 사건에서 제시되고 조사에서 사용된 정보이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6조 7항).

2) 조사의 중단

조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중단된다.

- 조사당국의 증거불충분 결정이 있을 때
- 덤핑마진이 미소수준(de minimis)의 경우
- 덤핑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일 때
-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

덤핑마진이 미소수준이라는 것은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것을 말하며, 덤핑수입량이 무시할 만하다는 의미는 덤핑수입량이 동종상품의 전체 수입

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덤핑수출국들의 전체 덤핑수입합산이 7%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재심적용 여부

미소수준을 재심(reviews)시에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재심시 미소마진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EU 반덤핑법에도 이러한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리적 해석으로는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시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EU 반덤핑법 제5조 8항 및 제11 참고).

위의 네 가지 사유 중 조사당국의 증거불충분 결정이 있을 때와 덤핑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일 때 조사가 중단되는 사유는 보통은 조사 개시 후 초기에 집행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덤핑마진이 미소수준(de minimis)이라는 것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사유이다.

3) 조사기간

조사는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 실시 후 15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6조 9항). 이 점은 WTO 반덤핑협정이 18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과 차이가 난다. 15개월 또는 18개월 이라 함은 피제조자의 권리를 보호해 가급적 반덤핑조치의 가부에 대한 모든 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 덤핑과 피해의 증거 동시 고려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EU 반덤핑법 제5조 7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U 반덤핑법 제5조 7항에 규정된 동시고려의 의무는 EU 반덤핑법 제5조 7항과 제7조 1항 및 3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동시고려 의무는 첫째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시부터 그리고 조사개시 후 반덤핑관세의 부과 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사개시 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덤핑과 피해의 증거를 동시에 고려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피제소자 등에게 덤핑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증거를 취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덤핑과 피해의 증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없는 기간이다.

⇒ 조사개시 신청서 접수 → 조사개시 신청 : 동시고려 의무 있음

- 조사개시 결정 후 → 잠정조치 적용 가능일(60일 이내) : 동시고려 의무 없음
- 잠정조치 적용 가능일 이후 →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 동시고려 의무 있음

4.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반덤핑조사가 최대 15개월까지 지속되는데, 장기간 덤핑행위를 방치하면 EU산업에 더욱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에 있을지라도 조사 중인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잠정반덤핑조치의 부과조건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7조 1항).

- EU 반덤핑법 제5조에 따라 절차를 개시하였을 것
- 절차개시에 대해 이해당사자에게 그 결과가 통지되고, EU 반덤핑법 제5조 10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제출할 기회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을 것
- 덤핑과 그 결과 EU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긍정된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을 것
-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연합이익에 부합되어야 할 것

상기의 조건이 충족되면 잠정반덤핑관세(provisional duties)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반덤핑관세는 절차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절차 개시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잠정반덤핑관세 부과액수

잠정반덤핑관세액은 잠정적으로 결정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하면 즉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적다면 덤핑마진 이하로 부과되어야 한다.

⇒ 잠정반덤핑관세 부과형태

잠정반덤핑관세는 보증서로 담보되며, 관련 상품의 EU내 유통은 보증서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상 담보형태는 현금 공탁이나 채권으로 담보하게 하고 있다(제7조 2항).

집행위원회는 제15조 4항에 규정된 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에 따라 잠정조치를 부과한다.

⇒ 잠정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잠정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다. 추가로 3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관련 무역부분을 상당한 정도로 대표하는 수출자들이 연장 또는 9개월 부과를 요구하거나 집행위원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3개월이 연장되거나 9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장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EU 반덤핑법 제7조 6항). 다만, 여기서 상당한 정도를 대표하는(representing a significant percentage)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가격인상약속

1) 의의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국내산업의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덤핑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경쟁이 가능하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절차가 간편한 제도가 있다면 굳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절차로 고안된 것이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가격인상약속을 제안하면 조사당국이 이를 검토해 수락하는 ‘가격인상약속 제안에 대한 수락(Undertakings)’ 제도이다(WTO 반덤핑협약 제8조 및 EU 반덤핑법 제8조)

2) 요건

이러한 가격인상약속 제안에 대해 EU 당국의 수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덤핑과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 집행위원회가 제15조에 규정된 advisory 절차에 따라
- 수출업자가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덤핑가격을 만족스러운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자발적으로 하고
-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 제거에 만족스럽다고 결정할 때 가격인상약속 제안에 대한 수락은 성립된다.

이러한 약속제안은 수출업자 또는 집행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수출업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또한 수출업자가 이러한 가격인상약속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해 사건의 결정에 편견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덤핑수입이 지속된다면 피해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데에도 역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가격인상약속 제안에 대한 수락은 수출자측에서 제안하였던지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던지 간에 당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결정을 잠정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제안은 제20조 5항에 따른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할 수 없다(EU 반덤핑법 제8조 3항).

3) 가격인상약속 제안의 거부

집행위원회는 가격인상약속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비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EU 반덤핑법 제8조 3항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책상의 이유

- 수출업자의 수가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제안이 실현될 수가 없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EU의 일반적인 정책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상의 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동 법은 침묵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제안의 수락여부는 집행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EU 반덤핑법 제8조 1항과 제8조 3항의 해석상, 가격인상약속 제안의 수락은 제안한 수출자 또는 일부 수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제안의 수락거절시에 집행위원회는 관련 수출자에게 이러한 수락거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구의 해석상 의사표명의 기회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기에 비공개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WTO 반덤핑협정 제8조 제3항에서도 가능하다면 (where practicable), 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to the extent possible) 라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종적인 반덤핑결정 시에는 이러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가격인상액의 결정

이러한 가격인상약속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그 인상액은 우선, 덤핑마진제거에 필요한 정도로 가격인상액을 정하여야 하고,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이러한 덤핑마진액이 피해마진보다 크다면 피해마진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EU 반덤핑법 제8조 1항).

5) 조사의 종결

가격인상약속의 제안이 수락되면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종결(terminate)해야 하며, 덤핑과 피해의 조사를 완결(complete)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결과 완결의 의미는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종결은 모든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며, 완결은 덤핑과 피해의 조사에 한해서 종료를 의미한다. 덤핑과 피해의 조사를 완결하라는 것은 가격인상약속 제안 시 인상액은 최소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이 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덤핑과 피해의 조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 결과 덤핑과 피해가 없다는 결정(negative determination)이 내려진다면 가격인상약속 제안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동 결정이 가격인상을 제안한 것에 대부분 기인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격인상약속을 지킬 것을 수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가격인상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의 제공과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비협조는 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EU 반덤핑법 제8조 제7항).

수락 당사자의 위반 또는 철회나 집행위원회의 수락 철회시에는 잠정조치 또는 확정조치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관련 수출자에게 의견표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철회의 결정시 관련회원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이해관계인이나 회원국은 가격인상약속 제안의 위반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에 대한 평가는 6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기에 대한 요청사유가 있다면 9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9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잠정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 BIA)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가 즉각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위원회가 잠정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려면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의 산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반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면 그만큼 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위원회가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시에 이미 취득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확정 반덤핑조치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하면 모든 절차는 종결된다. 단, 이러한 절차를 종결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의 종결이 연합이익에 반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조사나 절차를 종결한다.

한편 조사대상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고 EU 소비량의 3% 이내일 경우에는 그 피해는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되어 절차는 종결되며, 조사대상 상품의 덤핑마진이 2% 이내여서 미소마진인 경우에도 절차는 즉시 종결된다.

덤핑과 피해가 존재하고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합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제15조 3항에 규정된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확정 반덤핑조치를 부과한다. 잠정조치가 시행 중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잠정조치가 만료되기 전 1개월 전에 확정 반덤핑조치의 부과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반덤핑관세 부과액은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EU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과 차이점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원래 수입국의 재량사항이었지만, 국제무역의 확대와 자유무역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국제간 합의를 통해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그 금액의 결정은 국제적 규범에 합치하여야 비로소 적법한 관세의 부과가 된다. 예를 들면, 관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수입국 당국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그 부과의 한도를 일정한 수준(덤핑마진의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수입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덤핑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국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액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입국 전체의 공익에 반한다면 관세부과를 하지 않도록 이 역시 권고하고 있다.

EU 반덤핑법은 이 지점에서 WTO 반덤핑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EU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액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관세의 부과가 EU의 전체 이익에 반한다면 역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EU 반덤핑법의 특색은 여러 회원국(현재 28개)으로 구성된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EU의 국가구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임은 연합이익 편에서 살펴보았다.

⇒ 피해마진의 개념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한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액’이라 함은 바로 피해마진을 의미하며,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을 비교해서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적다면 피해마진에 근거하여 관세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최소부과의 원칙(the lesser duty rule)이라 함을 피해마진의 산정부분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최소부과의 원칙은 EU 반덤핑법에서는 의무사항이지만, WTO 반덤핑협정 제9조 제1항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해마진의 산정방식 자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제까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EU는 중국산 전기자전거(e-bike) 사건을 계기로 반덤핑관세의 부과시 원칙적으로는 최소부과원칙을 따르되, 원재료에 대한 변형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EU 반덤핑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제2a 내지 제2d가 적용 되도록 2018년에 개정하였다(EU 개정반덤핑법(Regulation 2018/825) 제1조 4항 b 및 6항 참조).

이러한 개정은 연합이익 테스트에서 입증책임이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중 더 높은 것을 선택해 부과하는 것이 연합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반해서 반보조금 조치에서는 반보조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연합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EU 개정 반덤핑법(Regulation 2018/825) 제1조 6항 및 제2조 4항과 7항 참조).

⇒ 중국산 전기자전거(ebike) 사건⁵⁰⁾

가. 사실관계

2017년 10월 20일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EU내 일반자전거 총생산의 45% 및 전기자전거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자전거제조자협회(the European Bicycle Manufacturers Association; EBMA)가 신청하였으며(일몰재심), 집행위원회는 덤핑과 피해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고 고려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5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73(OJ L 16/108).

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를 피해의 측정과 관련된 관련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21일에는 반보조금 조사를 별개로 개시하였다.

EBMA는 집행위원회에 동 상품을 반덤핑조치 대상 예정품목으로 해당국 관세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등록명령을 발하였다. 여기에서 상품을 등록한다는 의미는 나중에 확장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인 중국의 기계류 및 전기제품의 수출입을 위한 중국 상무국 및 유럽전자전자수입업자협회(the Collective of European Importers of Electric Bicycles; CEIEB) 그리고 기타 개별당사자에게 관련 핵심사실들에 대해 통보한 후 관련 청문절차를 거쳐 2018년 7월 18일 잠정조치를 취하였다.⁵¹⁾ 잠정조치에 적용된 반덤핑관세율은 최저 21.8%에서 최고 83.6%였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2019년 1월 17일 확정 반덤핑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하였다. 최종적인 반덤핑관세율은 최저 10.3%(Jinhua Vision Industry)에서 최고 70.1%(비협조기업 등)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반덤핑관세율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20여년 간 부과되고 있었던 중국산 일반전자전자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48.5%였는데 비해 금번 전자전자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최고한도는 기존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

제소자인 EBMA는 전자전자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폭발적인 덤핑수입으로 인해 EU산업의 생산자들은 급격히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있어서 EU산업이 자체적으로 규모의 자본화를 꾀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전멸(annihilate)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업체는 중국정부의 보조금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매우 싼 가격으로 전자전자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중국산 수입물량이 2016년에는 43만 여대에서

5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1012(OJ L 181).

2017년에는 80만 여대에 이를 만큼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서 중국상무국(COCCME) 및 수출자인 Bodo Vehicle, Jinhua Vision 등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대우가 2016년 12월 11일 만료되었으므로 중국이 시장경제국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가격인하는 획기적인 기술혁명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혁신을 방해하며 나아가 유럽의 기후변화대책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조사결과 관련조사기간 동안에 EU 산업은 시장점유율을 23% 상실하였는데, 그 중 18%를 중국산 수입상품이 대체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중국산 수입상품으로 인해 가격이 최대 48%까지 인하되었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기간 대만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단지 5% 정도 상승하였는데 비해, 중국산 전기자전거의 가격하락폭이 EU생산자 판매가격 및 중국 외 다른 국가의 수출가격에 비해서 훨씬 크다. 그리하여 2015년 이후 EU산업은 판매예상량을 새로이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EU 산업이 실질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전기자전거가 EU의 환경친화적인 그린 & 스마트 e-mobility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부합하며, 오히려 EU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불공정한 무역상품을 허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국 지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의 자이언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시장개입으로 인해 알루미늄 튜브와 프레임의 싼 값에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특허조세, 환급 재정적 인센티브와 특별공제와 같은 세금체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대한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없는 시장경제국 대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27.5%의 반덤핑관세를 자이언트 그룹에 부과하였다.

7. 반덤핑관세의 부과

1) 부과대상

반덤핑관세는 덤핑과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상품에 대해서 개개의 경우에(in each case) 차별 없이 적절한 금액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여 이러한 가격인상약속에 따라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반덤핑관세는 '덤핑과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차별 없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원천이란 국가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반덤핑관세는 개개의 경우(in each case)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개개의 경우라 함은 반덤핑을 조사한 사건별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수출자가 여러 상품을 덤핑수출하여 여러 건의 상품 모두에 대해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받았다면, 상품 통관시에 납부해야 할 관세는 이러한 개별 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관세의 지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개별 집행위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에서는 개별 공급자에 대한 관세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관련된 공급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공급자 또는 지정된 국가와 법적으로 구분되는 공급자는 관세를 지정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의 실체로 간주된다. 이것의 적용을 위해서, 공급자와 지정된 국가간 또는 공급자간 구조적 또는 기업적 연결의 존재, 가격과 생산량의 측면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나 실질적인 영향력의 존재 또는 공급국가의 경제적 구조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집행위원회가 조사기업 및 상품의 수가 너무 많아 샘플링으로 조사하는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로 신고하였지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들의 정상가치가 제2조 1항에서 6항 또는 7항 (a)에 따라 정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산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여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집행위원회는 영의 마진, 미소마진 그리고 비협조기업에 적용되는 덤핑마진은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에 선정되지 않은 당사자의 반덤핑관세액의 한도는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 이내이어야 한다.

반덤핑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조사에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자신들의 실제 반덤핑관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대신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의 덤핑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 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다. 수입상품량에 단위당 덤핑마진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종량세 방식과, 덤핑마진율(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뺀 뒤 이를 다시 수출가격으로 나누어 산정되는)을 수입통관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종가세 방식이 그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종가세 방식을 대부분

의 국가가 사용해오고 있다. 또한 종량세 방식이든지 또는 종가세 방식이든지 결과적으로 산정된 관세금액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종가세 방식은 덤핑마진 금액을 덤핑마진율로 전환해야 하는 중간작업을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세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동일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관세당국에 신고한 상품의 금액이 다르면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세평가에 대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GATT 1994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of the GATT 1994) 또는 관세평가협정이라 불리는 규범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WTO 협정에서는 종량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가세 방식에서 덤핑마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FOB 수출가격 또는 CIF 수출가격 중 나라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EU는 CIF 가격을 선택하고 있다.

⇒ 반덤핑관세액의 한도를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들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이내라 할 때 가중치를 여기에서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보통은 수입된 상품의 수량을 기준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평균을 할 때 집행위원회는 영의 마진, 미소마진 그리고 비협조기업에 적용되는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할 때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아래는 위에서 설명한 가중평균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액을 산정하는 문제이다. 문제를 풀이하여 보자.

갑, 을, 병, 정, 무는 아래와 같이 EU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업자들로서 반덤핑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들이다. 한편 A는 조사에 선정되지 않은 한국의 수출업자이다. A에게 적용될 반덤핑관세액의 한도는 얼마가 될 것인가? 단, 무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수출자이다.

수출자	수량	정상가격 (유로)	수출가격 (유로)	덤핑마진율 (%)	가중평균 덤핑마진율 (%)	비고
갑	100	120	100	20	31	
을	300	110	109	1		미소마진
병	200	150	100	50		
정	300	120	130	-10		제로잉
무	400	150	90	60		비협조

- ① 일단 상기의 사례에서는 덤핑마진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 덤핑마진율과 가중 덤핑마진율을 산정해야 한다.
- ② 먼저 개별덤핑마진은 다음과 같다. 갑은 $20/100=20\%$, 을은 $1/109=0.9\%$, 병은 $50/100=50\%$, 정은 $-10/130=-7.6\%$, 무는 $60/90=66.7\%$ 이다.
- ③ 다음으로 가중평균덤핑마진율은 미소마진과 영의 마진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수출자를 제외 시키고 난 뒤 갑과 병의 수출수량을 가중하여 덤핑마진율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④ $20\% \times 100/(100+200) + 50\% \times 150/(100+200) = 31\%$

그러므로 A 수출자에게 적용될 반덤핑관세율은 최고 31%를 한도로 하여 그 이내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샘플링에 의한 조사에 의하더라도 개별적 취급이 인정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 반덤핑관세는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므로 집행위원회는 부과상품의 공급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EU내 수입자가 지정된 공급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공급자 또는 생산자 전원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된 공급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된 공급국가가 다수일 때에는 관련된 공급국가 전부를 지정해야 한다.
- ⇒ 수출자별 또는 생산자별 반덤핑관세의 세부사항을 지정하는 집행위원회의 명령은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발하게 된다. EU법상 규칙은 특별한 국내입법의 전환절차 없이 회원국 전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8. 소급적용

WTO법상 잠정조치 이전 90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한 때로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확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를 위반한 수출업자에게 약속 위반과 잠정조치 부과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그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 확정관세 부과시 동 기간을 반영키 위함이다.

EU도 이러한 WTO 반덤핑법을 따라서 EU 반덤핑법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1) 소급적용의 요건

(1) 잠정조치와 확정조치

잠정조치와 확정조치는 동 조치가 취해진 날 이후에 법에서 규정된 예외 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유통된 상품에만 적용된다(EU 반덤핑법 제10조 1항).

⇒ EU 반덤핑법 제10조 1항은 동 법에서 규정된 예외사항에 따라(subject to the exceptions set out in this Regulation) 반덤핑명령이 발효된 날 이후에 소비용으로 수입되어 자유로이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 잠정조치 및 확정조치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외사항에 따라(subject to the exceptions)'란 표현은 어떠한 의미인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간혹 해석되기 때문이다. 동조가 소급적용에 관한 조문임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는 잠정조치 및 확

정조치가 부과된 상품들에 대해서 동 법이 정한 예외사항이 적용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문의 문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채택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덤핑과 피해가 존재하고 이러한 덤핑에 대해 잠정조치가 적용되어 왔다면, 집행위원회는 확정관세가 부과 될지에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부과되어온 관세 중 최종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10조 2항).

한편 집행위원회가 징수결정을 할 때 고려되는 피해에는 피해의 중대한 위협 및 EU산업 설립에 대한 중대한 지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잠정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잠재적인 피해가 실질적인 피해로 발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EU 반덤핑법 제10조 2항).

2) 잠정관세와 확정관세와의 차액의 처리

확정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되지 않는다. 반면 확정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를 위해 재산정되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10조 3항). 이는 수출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 예를 들면 잠정조치의 부과율이 20%이고 반덤핑명령 후 확정 부과율이 30%일 때 그 차액인 10%에 대해서는 징수되지 않는다.
- ⇒ 그러나 잠정조치의 부과율이 30%이고 반덤핑명령 후 확정 부과율이 20%일 때에는 10%에 해당하는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소급기간의 연장

확정 반덤핑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적용일 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개시 전 90일까지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EU 반덤핑법 제10조 4항).

- a) 제14조 5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품
- b) 집행위원회가 소급부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 관련 수입자
- c) 덤핑의 이력이 있거나, 수입자가 덤핑에 관해 알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
- d)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야기한 수입품의 수준에 더하여, 시기와 수량 및 다른 사정에 비추어 적용될 확정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를 실질적으로 상쇄(undermine)할 수도 있을 추가적인 중대한 수입품의 증가가 있는 경우

A(잠정조치 90일 전 시작일) → B(잠정조치 효력발생일) → C(반덤핑명령일)

- ⇒ 동 조항은 반덤핑관세의 가격 교정효과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수출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전에 집중적으로 덤핑을 실행할 경우 이는 당연히 EU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가격인상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의 경우

가격인상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의 경우에는 확정 반덤핑관세는 동법 제 14조 5항에 따라 등록되고 가격인상약속 위반이나 철회 전에 소비용으로 수입되어 자유로이 유통된 상품에 대해 잠정조치의 적용 전 90일간 소급적용할 수 있다.

A(잠정조치 조사개시일) → B(잠정조치 90일 전) → C(잠정조치 60일 전) → D(잠정조치 효력발생일) → E(반덤핑명령일)

- 조사개시 후 최소 60일 이후에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 잠정조치 적용 전 90일까지는 소급적용할 수 있으므로
- 결국 확정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점은 B가 될 것이다.

5) 소급금지

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지체의 경우에는 피해의 위협 또는 실질적인 지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확정 반덤핑관세만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만약 납부한 잠정관세가 있다면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다만, 잠정관세의 부과가 없었더라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위협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9. 재심, 기간 및 환급

1) 재심

(1) 만료재심

확정반덤핑조치는 반덤핑관세 부과와 종료로 인해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또는 재발로 이어진다는 것이 재심에서 결정되지 않는 한, 확정관세 부과일로부터 5년간 또는 덤핑과 피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심사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만료재심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또는 EU 생산자나 EU 생산자를 대표한 산업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며, 이 경우 반덤핑관세는 동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계속 부과된다.

⇒ 반덤핑관세의 만료의 경우

-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후 아무런 조치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 덤핑과 피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심사 이후
- 반덤핑관세의 만료로 인해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EU 당국의 자체적 판단 또는 EU산업의 요청으로 개시된 심사에서 만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러므로 심사가 계속되면 만료기한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5년의 기한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당국의 만료재심이 없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상기의 심사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종료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와, 만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즉 반덤핑관세의 효력이 5년을 넘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EU 당국이나 EU 산업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심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둘의 심사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만료재심은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납부한 관세액을 평가하는 반덤핑관세액의 소급적 기초에 의거한 산정의 경우는 만료재심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중간재심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덤핑의 효과를 상쇄하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신청 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더라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것 같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조사절차를 말한다.

⇒ 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년 이상의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
- 중간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한 증거에 의해
- 집행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국의 신청 또는 EU 생산자, 수출자나 수입자의 신청이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위원회는 중간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재심에서 덤핑과 피해에 관해서 의미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현행 반덤핑조치가 피해를 제거하는 결과를 놓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3) 신규수출자 재심

반덤핑명령은 수출국에 대해서 내리는 조치이며 이 경우 수출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덤핑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사기간 이후 새로이 동종상품을 수출한 수출자에 대해서 다른 수출자의 덤핑마진에 근거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신규로 수출한 수출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출해 내는 것을 신규수출자 재심이라 한다.

신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상품이 조사기간 이후 EU에 수출되었다는 것을 또는 EU에 상당한 양을 수출한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수출계약에 따른 의무 때문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재심은 개시된다.

⇒ 재심절차

신규수출자 재심시에는 통상적인 관세평가와 심사절차는 가속기준(accelerated basis)이 적용되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차를 가속하여 진행하더라도 신규수출자가 덤핑을 하고 있다면 EU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유보 또는 보증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심사기간 동안에는 반덤핑관세를 동 상품에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재심에서 덤핑판정이 있게 되면 재심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11조 4항).

한편 조사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제9조 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

반덤핑조치는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을 상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as long as)과 정도(to the extent)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료재심 및 중간재심은 재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규수출자 재심은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만료재심이 중간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개시된다면 중간재심은 만료재심과 동시에 종결된다.

⇒ 기한 내에 조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반덤핑관세는

- 만료재심 조사에서 종결된다.
- 만약 중간재심이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 중 만료재심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또는 만료재심과 중간재심이 동시에 개시되면 만료재심과 중간재심의 조사가 종결할 때에는 함께 종료되거나
- 중간재심과 신규재심에 따른 조사에서는 반덤핑관세는 변경되지 않는다.

3) 환급

반덤핑관세액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중 피해마진이 더 적다면 피해마진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2조 및 제9조 4항 참조).

수입자는 덤핑마진이 없어지거나 또는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조치에서 적용된 덤핑수준 이하란 것을 증명하면 징수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11조 8항).

동 신청은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된 회원국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 반덤핑관세액의 부과가 적절하게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잠정관세액을 확정적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이 적절한 증거에 의해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 이내에 환급되어야 한다. 지급은 집행위원회의 환급 결정 후 90일 이내에 관세를 징수한 회원국이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모든 재심 또는 환급심사에서 집행위원회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사 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수출가격의 신뢰성을 조사하여 제2조 제9항에 따라 수출가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면, EU 내에서 반덤핑관세액이 재판매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이후의 판매가격에서 납부한 반덤핑관세 금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 반덤핑조사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당시에는 이러한 자료는 모두 과거의 자료가 된다. 이러한 반덤핑관세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망적 기초(prospective basis)에 의한 산정방식과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에 의한 산정방식이 그것이다(WTO 반덤핑협정 제9조 3항 참조).

⇒ 전망적 기초에 의한 산정방식

전망적 기초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것을 미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전망치라고 인정하고 이를 반덤핑관세 또

는 그 한도로 정하는 것이다.

반덤핑관세액이 전망적 기초에 의해 덤핑마진율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세액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수입자의 환급' 신청이 없으면 계속 확정적인 반덤핑관세 금액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입자의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집행위원회가 반덤핑관세율을 재평가한 후 관세의 인하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덤핑이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하면 관세액의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 소급적 기초에 의한 산정방식

소급적 기초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전망적 기초에 의해 산정된 덤핑마진은 지금 현재의 실제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에 불과하므로, 일단 이러한 예상 반덤핑관세금액을 납부하고 난 후 일정 시점에서 소급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다.

- ⇒ 환급은 환급신청으로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덤핑마진을 재산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 둘이 중복될 경우에는 앞의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의 기한이 더욱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10. 흡수재심(Absorption)

흡수재심이란 EU산업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가 반덤핑조치가 시행된 지 2년 안에, 원 조사기간 후 또는 반덤핑조치 전·후에, EU내로 수입된 이후의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에서 수출가격이 하락했는지, 또는 변동이 없었는지 또는 가격변동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등 이에 대해서 소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집행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국의 요청으로 반덤핑조

치로 인해 수출가격의 변동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재심이 개시될 수도 있다. 이것을 흡수재심이라 한다.

이러한 재심기간 동안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EU생산자는 재판매가격이나 후속판매가격에 관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반덤핑조치로 인해 수출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판정을 할 때에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이전에 산정된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이 재산정된다.

그리고 재심에서 덤핑이 증가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질 때에는 시행되고 있는 반덤핑조치는 개정될 수 있지만 관세액의 증가는 최초 시행된 액수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재심기간은 재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동 기간 내에 재심이 종결되지 않으면 반덤핑조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11. 현장검증 및 샘플링

1) 현장검증

집행위원회는 수입자, 수출자, 대리인, 생산자, 무역협회 및 무역기구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덤핑과 피해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현장검증에 대한 요청에 대해 시기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EU 반덤핑법 제16조).

만약 관련기업이 동의한다면 제3국에서 이러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 정부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제3국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방문할 기업이 소재한 수출국 당국에도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관련 기업은 현장조사동안 검증되어야 할 정보의 성질, 추가로 제시해야 할 정보, 추가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샘플링

제조사, 수출자, 수입자, 상품유형 및 거래가 많은 경우 조사는 샘플의 선택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여 당사자, 상품 또는 거래의 수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할 수 있다(이하 EU 반덤핑법 제17조 참조).

또는 기한 내에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상품, 판매 또는 수출자에 제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조사개시 후 3주 내에 자기가 그러한 당사자에 해당되고 샘플로 선정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샘플링 방법으로 당사자, 상품 또는 거래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가급적 관련 당사자와 협의 및 동의로 샘플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샘플 선정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집행위원회에 있다.

샘플링에 따라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샘플에서 제외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덤핑마진이 산정되어야 한다. 단, 개별조사를 조사기한 내 마치는 것이 과도

한 부담이 될 만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들은 자신의 수출가격과는 무관하게 샘플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산정된 덤핑마진을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샘플에서 제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정해 이에 따른 덤핑마진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만약 샘플에 포함된 당사자가 조사에 비협조하여 조사결과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샘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협조가 지속되고 새로운 샘플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아래에 설명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가 적용된다.

3)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

이해당사자가 기한 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관계없이 예비 및 확정 판정을 할 수 있다(이하 EU 반덤핑법 제18조 참조).

한편 이해당사자가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정보를 채택하지 아니하며, 거짓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는 조사에 비협조한 기업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컴퓨터화된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화된 자료의 제출이 비합리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되거나 비합리적인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면 비협조기업이 되지 않는다.

⇒ 제출된 자료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진 않을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있다.

- 자료의 어떤 흠결이 정확한 판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에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고,
- 당사자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서,
- 정보가 적절하게 제시간에 제출되어,
- 제대로 검증할 수 있으면

만약 이해당사자가 관련정보를 주지 않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협조한다면, 협조한 이해당사자에 비해서 비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제출한 증거나 정보가 채택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그 이유를 고지받고, 기한 내 추가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추가적인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증거나 정보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집행위원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또한 공표된 결정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상가격의 결정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조사개시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조사기한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가능한 다른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이용가능한 다른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관해서 그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공표된 가격표, 공식적인 수입통계와 관세환급 또는 조사기간 동안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같은 것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세계 시장, 다른 대표 시장에 속하는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

4) 비밀정보

성질(by nature)상 비밀인 정보 또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이하 EU 반덤핑법 제19조 참조).

⇒ 성질상 비밀정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정보의 공개가 정보제공자의 상대방에게 중요한 경쟁적 이점이 될 경우
-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어도 좋을 요약본(non-confidential summaries)을 대신 제출해야 한다. 동 요약본에는 비밀로 제공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동 정보를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요청하면 이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를 밝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위원회가 상기의 비밀정보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일반적인 형태나 요약형태로 공개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꺼린다고 판단하면, 제출된 정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적절한 정보원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설명을 듣거나 확인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정보의 취급은 일반정보의 공개, 특히 결정이 취해진 그 이유, 사법절차에서 이유설명의 필요가 있는 한에 있어서 당국의 결정에 기여한

증거의 공개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공개시에는 영업비밀이 공표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은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간 정보교환 또는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이 작성한 내부분서의 교환은 동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의 공개

제소자, 수입자와 수출자 및 동 수입(출)자의 대표협회 그리고 수출국 대표는 집행위원회가 잠정조치를 부과한 그 주된 사실과 이유(considerations)를 적시한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잠정조치 부과 후 즉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는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공개되어야 한다(이하 EU 반덤핑법 제20조 참조).

위에서 열거된 당사자는 예정된 확정조치를 부과하는 근거 또는 관세부과 없는 절차 또는 조사의 종결의 주된 사실과 이유(considerations)의 최종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잠정조치에 사용된 사실과 이유가 확정조치에서 달라졌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의 최종공개 신청은 잠정조치의 부과 여부에 따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잠정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잠정조치 부과 후 1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최종 공개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한은 통상적으로는 제9조에 정해진 절차의 종료 전 1개월 이내이다.

집행위원회는 서면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상적으로는 제9조에 정해진 절차의 종료 전 1개월 이내 비밀정보의 보호에 주의해서 서면으로 공개한다. 하지만 신청 당시에 집행위원회가 관련 사실과 이유를 공개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 그 이후 집행위원회가 공개할 입장이 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집행위원회가 이후에 내릴 후속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실과 이유로 인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이유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되어야 한다.

VII 위원회 절차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⁵²⁾에 규정된 위원회를 지칭하며, 동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8조는 EU 반덤핑법 제15조에 준용된다(이하 EU 반덤핑법 제15조 참조).

52) Regulation (EU) No 182/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 제3조의 준용

- a) EU 반덤핑법 제15조에서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이하 '규칙 182/2011'이라 함) 제4조와 제5조 및 제8조만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칙 182/2011 제3조도 준용된다. 왜냐하면 규칙 182/2011 제3조는 공통 조항(common provisions)으로서 동조 1항에 의하면 동조는 동 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언급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동조 2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회 위원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고 집행위원회 대표가 그 의장이 되지만, 의장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예비집행행위(draft implementing act)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외에도 동 규칙 제3조는 위원회(자문위원회와 심사위원회 및 항소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절차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공통조항이다.
- b) 규칙 182/2011 제3조 제5항에 따라 확정조치의 채택을 위해서 그리고 일몰 재심의 개시 또는 비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면절차(written procedure)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결과가 없다고 의장이 결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다수(majority)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동 서면절차는 결과 없이 종료된다.
- c) 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어온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 결과가 없었다고 의장이 결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단순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절차는 결과 없이 종료된다.
- d) 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 결과가 없었다고 의장이 결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3/4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절차는 결과 없이 종료된다.

⇒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 제3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안이 적절한 경우에, 의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집행위원회의 집행행위 초안을 보내어 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절차에 의거해 받아야 한다. 한편 사안의 급박성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할 시한이 정해져야 하며, 정해진 시한 내에 초안에 반대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기권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은 묵시적으로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위원회의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

위원회의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는 다음과 같다(규칙 182/2011 제4조).

- 초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며, 결정이 나지 않을 시 투표에 의해 결정하며,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의 단순과반수이다.
-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최선을 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상기 자문절차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위원회의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는 다음과 같다(규칙 182/2011 제5조).

- 우선 초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이 찬성이면 집행위원회는 초안을 채택할 수 있다.
- 만약 초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이 반대이면 집행위원회는 초안을 채택할 수 없다.
- 단, 이 경우 의장이 유럽연합을 위해 초안이 필수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의장은 반대의견이 제출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심사위원회에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반대의견이 제출된 지 1개월 이내에 항소위원회(Appeal Committee)에 항소할 수 있다.
- 만약 아무런 의견도 제출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초안을 채택할 수 있다.

⇒ 반덤핑조치의 일원화

현행 EU 반덤핑법(Regulation 2016/1036)의 개정전 EU 반덤핑법인 Regulation 1225/2009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집행 주체가 이원화로 되어 있었다. 즉 잠정조치는 집행위원회가 부과하고, 확정조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각료회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Regulation 1225/2009 제7조 4항 및 제9조 4항 참조). 그러므로 집행위원회와 각료회의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일관성 있는 반덤핑정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현행 반덤핑법에서는 반덤핑정책의 집행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반덤핑조치의 집행주체를 집행위원회로 일원화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화에 대해 회원국의 우려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집행위원회의 권한강화에 따른 문제였다. 알다시피 EU 집행위원회의 집행권한(implementing powers)은 매우 막강하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가 행정 및 복지 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행정권이 비대해지고 그 권한이 점점 증대해져는 경향이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바로 한 국가의 행정부의 역할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일관성 있는 반덤핑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해진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를 제약할 필요성에 의해서 회원국이 고안한 견제장치가 바로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칙 182/2011⁵³⁾의 규정 중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핵심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자문절차, 심사절차 및 항소절차 등의 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이다. 이러한 절차에 도입된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항소위원회를 통하여 각 위원회의 조언과 의견을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집행행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53) 규칙 182/2011은 '유럽연합 기관(집행위원회 및 각료회의)에 인정된 집행권(implementing power)에 대한 회원국의 통제메커니즘에 대한 규정(rule)과 일반원칙을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칙(Regulation)에 미리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29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규칙 182/2011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 비대해져만 가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회원국이 통제하고자 고심 끝에 고안한 절차적 통제장치(mechanisms)이다. 이러한 절차적 통제장치에서의 핵심이 바로 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이며, 그 내용은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다.

VIII

우회덤핑

1. 우회덤핑의 개요

우회덤핑(Circumvention)이란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우회덤핑의 유형에는 반덤핑조치를 받는 상품의 미소변경, 조립공정, 제3국을 통한 환적 및 부정확한 관세의 신고 등이 있다.

EU는 1996년 기본규칙 384/96 제13조에서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 이래 현행 반덤핑법에서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전통적인 우회덤핑은 반덤핑조치가 특정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상품(완제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이러한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조립공정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delocalizing)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 우회라고 불리는 수입국 우회와 제3국 우회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생산 공정의 이전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회피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기업 활동으로 간주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지는 결국 WTO 전체회원국의 합의에 따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회덤핑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의 우회덤핑방지 조치가 이러한 국제규범과 합치되는 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WTO 반덤핑협정의 합치성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우회덤핑의 요건

우회덤핑의 경우 미소변경 여부를 떠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상품 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미소하게 변경된 수입품 또는 우회덤핑을 하고 있는 상품의 부품에 반덤핑관세는 연장되어 적용된다. EU 반덤핑법은 제13조 1항과 제13조 2항에서 전통적인 우회덤핑과 새로운 유형의 우회덤핑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제13조 제1항의 우회덤핑 요건

우회덤핑은 제3국과 EU간에 또는 반덤핑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의 개별 기업과 EU간에 발생한 무역패턴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며, 이러한 무역패턴의 변화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부와 이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 또는 경제적 정당성이 부족한 관행, 공정과정 또는 제조로부터 기인해야 한다. 또한 우회덤핑으로 말미암아 가격 그리고/또는 동종상품의 수량의 면에서 관세의 구제효과가 침해되고 있어야 하고, 원래 반덤핑조사에서 산정된 동종상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덤핑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EU 반덤핑법 제13조 1항).

⇒ 제13조 1항의 우회덤핑 요건

- 무역패턴의 변화가 있을 것
- 정당하지 않은 관행이나 공정과정 또는 제조를 통한 우회덤핑이 있을 것
- 가격 그리고/또는 동종상품의 수량의 면에서 관세의 구제효과를 침해할 것
- 동종상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있을 것

2) 제13조 2항의 우회덤핑 요건

EU 반덤핑법 제1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회덤핑의 요건은 1987년 일본산 스쿠류 드라이버 사건을 계기로 규정된 것이다. 즉 동 조항은 일본의 스쿠류 드라이버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자 이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공동체내 조립공장을 세워 공동체에 수출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효과를 침해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며 이러한 유형의 덤핑이 전통적인 우회덤핑의 유형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우회덤핑에는 제3국으로부터의 조립을 통한 수입도 포함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우회에 대처하기 위해 EU는 제13조 2항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EU에서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공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 중인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 조립공정이 반덤핑조사의 개시 후 또는 바로 직전에 시작되었거나 이러한 조립공정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고, 조립공정에 필요한 관련 부품은 반덤핑관세를 현재 부과받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관련부품이 조립된 상품의 부품 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60% or more of the total value of the parts)이어야 한다. 다만, 조립공정 또는 완성공정 기간 동안 상기 부품에 부가된 가치가 제조비의 25%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로는 조립된 동종상품의 가격 그리고/또는 조립된 동종상품의 수량의 측면에서 관세의 구제효과가 침해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원래의 반덤핑조사에서 산정된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similar products)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제13조 2항의 우회덤핑 요건

- 반덤핑조사의 개시 후 또는 바로 직전에 조립공정이 시작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관련 부품이 시행 중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었을 것
- 관련부품이 조립상품의 부품 총가치의 60% 이상일 것(60% or more of the total value of the parts)
- 조립공정 또는 완성공정기간에 상기 부품에 더해진 부가가치가 제조비의 25%보다 훨씬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립 동종상품의 가격 그리고/또는 조립 동종상품의 수량의 측면에서 관세의 구제효과가 침해되고 있을 것
- 원조사에서 설정된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similar products)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있을 것

3.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합치성 문제

1994년 UR 반덤핑협상에서의 쟁점은 덤핑결정의 방법, 동종제품의 범위, 국내산업 피해의 기준과 결정, 조사절차의 강화, 반덤핑관세의 소멸시효의 인정 및 기간,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이었으며, 이 중 EU와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바로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EU의 규범화 요구는 UR협상뿐만 아니라 이후 개최된 2001년 DDA 반덤핑협상에서도 미국과 EU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던 프렌즈 그룹의 반대가 심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의적인 우회덤핑방지 조치는 결국 철저적인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수출국의 수입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여기에서 자의적이라 함은 조사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반덤핑조사와 우회덤핑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 일반적인 반덤핑조사에서 제소는 EU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우회덤핑조사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자체 재량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 조사 개시 때 우회덤핑은 수입등록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 우회덤핑의 경우에는 덤핑과 피해가 존재하면 되며, 이 둘에 대한 인과관계는 필요치 않다.
- 우회덤핑의 경우에는 연합이익(Union Interest)의 고려가 반드시 의무적이지 않다.
- 동종상품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즉 우회덤핑방지 조치는 기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우회덤핑을 하였다고 판정이 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새로이 관세를 부과받는 상품이 과연 동종상품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EU는 우회덤핑방지 조항의 근거를 WTO 각료회의 결정과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및 제18조 1항과 GATT 제20조 (d) 등에서 찾고 있다. 즉 동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에 반대하는 주장은, 상기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외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회덤핑방지 조치는 오히려 상기 협정에서 금지하는 특별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우회방지조치는 보통의 반덤핑절차보다는 그 발동이 쉽고 우회방지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집행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는 점에서 보면 예외조치이기 보다는 WTO 반덤핑협정 등에서 금지하는 특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실체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도 모두 준수한 반덤핑조치일 때 비로소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적법한 반덤핑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벨라루스 PFT 사건⁵⁴⁾

벨라루스로부터 EC에 수출되는 PSF에 대한 잠정반덤핑조치 직후에 벨라루스의 수출자는 PSF(Polyester Staple Fibre)를 수출하지 않고 대신에 벨라루스산 PFT(Polyester Filament Tow)를 수출하였다. 한편 이러한 PFT는 벨라루스로부터 수입되어 공동체 역내에서 PSF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러한 PFT와 PSF간 유일한 차이점은 절삭 과정이 틀리다는데 있었다. 즉 Staple Fibre란 레이온에서 사용되면 연속적인 긴 섬유를 방적하기 위해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짧은 섬유를 말하는데 인조 섬유라고도 하고 스프라고도 한다. 한편 화학섬유는 절단하지 않은 하나의 긴 섬유로 방사되는데 이것을 필라멘트라고 한다. 천

54) Council Regulation (EC) No 2513/97 of 15 December 1997 extending the definitive anti-dumping duty imposed by Regulation (EC) No 1490/96 on polyester staple fibre originating in Belarus to imports of polyester filament tow from Belarus and levying the extended duty on the latter imports as registered under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93/97(1997 OJ (L 346) 12).

연섬유에서는 생사만이 필라멘트이다. 다시 말하면 filament를 자르면 staple fibre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출업자는 관세분류가 틀려 비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던 벨라루스산 긴 PFT를 이탈리아에 수출하여 짧은 PSF로 전환하였는데 이 둘은 단지 길이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한편 벨라루스 PFT 사건에서 PSF-PFT 대체율은 1994년 첫 조사 개시 이후 1%에서 조사가 종결되는 1997년에는 99%를 넘고 있었으며, 벨라루스산 장섬유에서 변환된 단섬유의 평균판매가격은 벨라루스로부터 수입되는 덤핑되지 않은 단섬유보다 평균 19.5% 저가이었다.

이러한 벨라루스 PFT 사건에서 수입업자는 벨라루스산 장섬유를 들여와 공동체에서 단섬유로 자르는 것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쉽고 저장 등에서 용이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집행위원회는 최초의 반덤핑절차의 개시에 따른 기간과 잠정조치부과 직후의 기간을 비교하고 난 뒤 수입업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단섬유가 아닌 장섬유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 유럽연합 내에서의 절삭 작업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PSF에 대해 잠정반덤핑조치를 부과한 후 PSF-PFT 상품의 혼용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우회덤핑조사기간을 통하여 이러한 특이한 변화가 계속되었으며 더욱 증가되었다고 결정하고 우회덤핑 판정을 내렸다.

IX 사법심사

리스본 조약의 한 축인 TFEU 제207조에 따르면 반덤핑조치 및 반보조금조치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연합이 가지며, 연합에 부여된 반덤핑조치의 집행은 반덤핑법 규칙 2016/1036 제7조 4항 및 제9조 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잠정 및 확정 반덤핑조치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TFEU 제263조, 제265조, 제268 및 제340조 등에 의거하여 이러한 EU기관(집행위원회(Commission) 및 각료회의(Council))의 행위는 또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U 기관의 반덤핑조치는 지금의 EU조약(리스본 조약)의 전신인 EC조약체제인 1994년에 일반법원(General Court; 이전에는 일심재판소로 번역되던 a Court of First Instance)에 반덤핑사건(반보조금 사건 포함)에 관한 사실심(1심)으로서의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었고, ECJ는 최종심인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이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ECJ에 제소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선결심(preliminary ruling)으로서 법원에 제소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직접 제소(direct actions)하는 경우이다.

선결심(preliminary ruling)으로서 ECJ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일단 회원국 국내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러한 소송의 사안이 TFEU 제267조에 따라 ECJ의 선결적 판단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의 요청(request)에 따라 ECJ가 먼저 판단하면, 회원국 국내법원이 ECJ의 이러한 선결적 판단을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직접소송(direct actions)은 TFEU 제26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유형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현재 반덤핑조치 및 반보조금조치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직접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직접소송이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TFEU 제263조 등에서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모두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소송의 1심 관할은 일반법원에 있다.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ECJ에 상고하면 되며, ECJ는 법률심으로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다루게 된다.

한편 ECJ는 소송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TFEU 제263조를 폭넓게 해석하여 소송의 관할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는 EU 기관에 의한 판단이 당사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실평가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조약 또는 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법규의 위배, 그리고 EU 기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는 태도를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⁵⁵⁾ 즉 주로 절차적 권리의 침해시에 법원이 관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법원 역시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EU 기관(Institutions) 중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 조약 또는 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법규의 위배라 함은 모법에서 규정한 또는 위임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집행명령이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데, EU 반덤핑법에는 모법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 2016/1036)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가 개별적인 집행규칙(implementation regulation)을 발하게 되는데, 당연히 집행규칙은 모법을 위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집행규칙의 모법 위배여부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EU 기관의 사실평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반덤핑판정에 요구되는 정상가격의 구성 가격 산정 및 수출가격 산정에 있어서의 오류, 공동체 산업의 피해 인정 및 피해 증거에 있어서의 평가의 오류, 공동체 산업의 상황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의 불충분, 덤핑마진 산정에 있어서의 오류 등과 같은 것이다.

55) Joined Cases T-163/94 and T-165/94, NTN Corporation and Koyo Seiko v Council [1995] ECR II-1381; Joined Cases C-191/09 P and C-200/09 P, Council and Commission v Interpipe Niko Tube and Interpipe NTRP [2012] ECR I-0000 등의 판결을 참고할 것

제3장 EU 반보조금법

I 개 관

1.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국가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하고, 1994년도 GATT 제16조에 규정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및 소득 또는 가격 지원으로부터 혜택이 있어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3조).

⇒ 보조금의 존재

- 가) 원산지국가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가 있을 것 여기에서 재정적 기여가 있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a)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예를 들면 자금의 무상교부, 대출, 지분참여와 같은)과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예를 들면 대출보증과 같은)의 직접적인 이전을 포함하는 정부의 관행이 있는 경우
 - b) 정부가 세액공제와 같이 징수가 예정되어 있는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c)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d) 정부가 기금제도(자금공여기관)에 지급하거나 위에서 예시한 하나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에 위탁하거나 직접 부여하는 경우
- 나) 1994년도 GATT 제16조에 규정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할 것
- 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및 소득 또는 가격 지원으로부터 혜택이 있을 것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란 EU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 또는 운송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EU 반보조금법 제1조 1항). 그리고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중간국을 경유하여 EU에 수입된 상품은 동 법이 적용되며 동 거래는 원산지국과 EU간에 발생된 거래로 간주된다.

WTO 보조금협정 제10조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6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상계 관세는 이 협정과 농업에관한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 설명된 Remark 36에서는 “상계관세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EU 반보조금법도 이러한 WTO 반보조금협정상 상계관세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3. EU 반보조금법의 개요

EU는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반보조금법을 규칙(Council Regulation) 3017/79⁵⁶⁾을 통해 1979년 처음 도입한 이래 현행 규칙(Regulation) 2016/1037⁵⁷⁾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반보조금 조치의 실행 건수는 예를 들면 2004년에서 2012년까지 대략 40여개의 반보조금 조치가 실행된 것에서 보듯이 반덤핑조치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적었다. 그 이유는 반덤핑조사에서는 EU산업이 집행위원회에 덤핑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의 증거가 비록 입증의 정도에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게 되지만, 반보조금 조사에서는 반덤핑조사와는 달리 거의 입증의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반보조금조사에서는 보조금 및 피해의 존재 그리고 보조금 및 피해간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서도 집행위원회의 재량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56) Council Regulation (EEC) No 3017/79 of 20 December 197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OJ L 339).

57) Regulation (EU) 2016/10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2016 OJ(L 176) 55.

하지만 EU는 1979년에 반보조금법을 도입한 이래 현행 반보조금법 2016/1037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반보조금법을 시행하여 왔다.

한편 현행 반보조금법이 시행된 후 규칙(Regulation) 2017/2321⁵⁸⁾, 규칙(Regulation) 2018/825⁵⁹⁾의 두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두 번의 개정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국 지위의 인정여부 및 중국산 전기자전거(e-bike)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은 앞에서 서술한 반덤핑법에서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반보조금조치에서 집행권 행사도 이전에 집행위원회와 각료회의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집행권행사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회원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규칙(Regulation) 182/2011⁶⁰⁾의 위원회 메커니즘이 반보조금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메커니즘은 동 규칙 전문 (4) 및 제1조에 규정된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에 관련한 것들이다. 즉 집행위원회의 집행권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 또는 검토절차(examination procedure) 중 하나의 절차를 택해서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검토절차가 반덤핑조치 또는 반보조금조치 시에 채택될 때에는 집행위원회는 위원회내 반대의견을

58)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19.12.2017 OJ (L 338) 1.

59) Regulation (EU) 2018/8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6.7.2018 OJ (L 143) 1.

60) Regulation (EU) No 182/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2011 OJ(L 55)13(이하 규칙 182/2011 이라 함).

의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EU 반덤핑법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표 3-1〉 WTO 보조금협정 및 EU 반보조금법 조문 비교

WTO 보조금협정			EU 반보조금법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부		일반규정	전문	목적 및 연혁
	1	보조금의 정의	1	원칙
	2	특정성	2	정의규정
제2부		금지보조금	3	보조금의 정의
	3	금지	4	상계가능 보조금
	4	구제		
제3부		조치가능보조금	5	상계가능 보조금액의 산정
	5	부정적 효과	6	수혜자에 대한 혜택의 산정
	6	심각한 손상	7	산정에 관한 일반조항
	7	구제		
제4부		허용보조금	8	피해의 결정
	8	허용보조금의 정의	9	EU 산업의 정의
	9	협약 및 승인된 구제	10	절차의 개시
제5부		상계조치	11	조사
	10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	12	잠정조치
	11	조사개시 및 후속조치	13	가격인상억속
	12	증거	14	조치없는 절차의 종결
	13	협약	15	확정관세 부과
	14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16	소급
	15	피해의 결정	17	존속기간
	16	국내산업의 정의	18	만료재심
	17	잠정조치	19	중간재심
	18	가격인상억속	20	가속재심
	19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	21	환급
	20	소급	22	재심과 환급에 관한 일반조항
	21	상계관세 및 가격인상억속이 존속기간 및 검코	23	보조금조치에 대한 우회
	22	판정의 공고 및 설명	24	일반규정
	23	사법적 검토	24a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25	위원회 절차

WTO 보조금협정			EU 반보조금법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6부	기구		26	현장검증
	24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와 보조기관		
제7부	통보와 감시		27	샘플링
	25	통보	28	비협조기업
	26	감시	29	비밀정보
			29a	잠정조치단계에서의 정보
제8부	개발도상회원국		30	공고
	27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31	연합이익
제9부	경과조치		32	상계관세조치와 타구제조치간 관계
			32a	보고서
			32b	위임권한의 행사
	28	기존계획	33	최종규정
	29	시장경제로의 전환	34	보고서
제10부	30	분쟁해결	35	폐지
제11부	최종조항		36	발효
	31	잠정적용		
	32	기타 최종조항		

4. 동종상품

동종상품이란 조사중인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identical)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조사중인 상품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성(characteristics)을 가지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EU 반보조금법 제2조 c).

반보조금법에서 정의된 동종상품의 설명은 반덤핑법에서 정의하는 동종상품의 정의와 동일하므로 반덤핑법 부분에서 설명한 동종상품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5. 피해의 의미

EU 반보조금법 제2조(d)에서 규정하는 피해(injury)는 EU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또는 중대한(material)) 피해를 의미하며,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할 위협(thereat)과 EU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체(material retardation)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피해의 의미도 반덤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 의미와 동일하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WTO 보조금협정이라 함) 제15조 1항을 따라 규정된 EU 반보조금법 제8조에서는 피해의 판정은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량과 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이 EU 시장에서 동종상품의 가격에 끼치는 효과 및 덤핑상품으로 인해 동종상품의 EU 산업에 끼치는 효과에 관해,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이 EU 시장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연속적인 영향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의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6. 규제되는 보조금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EU 반보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성을 가지는 보조금이어야 한다. 동 보조금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 제2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EU 반보조금법 제4조는 이러한 WTO 보조금협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성을 따르고 있다. 이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II

실체적 요건

이러한 규제되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EU산업의 피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과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EU 반덤핑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충분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하에서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보조금의 존재

1)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국가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하고, 1994년도 GATT 제16조에 규정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및 소득 또는 가격 지원으로부터 혜택이 있어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3조). 이러한 정의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 원산지국가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가 있을 것. 여기에서 재정적 기여가 있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예를 들면 자금의 무상교부, 대출, 지분참여와 같은)과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예를 들면 대출보증과 같은)의 직접적인 이전을 포함하는 정부의 관행이 있는 경우

- 정부가 세액공제와 같이 징수가 예정되어 있는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정부가 기금제도(자금공여기관)에 지급하거나 위에서 예시한 하나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부여하는 경우
- ⇒ 1994년도 GATT 제16조에 규정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할 것
- ⇒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및 소득 또는 가격 지원으로부터 혜택이 있을 것

2) 상계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

: 특정성(specificity)

원산지국가나 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와 소득 또는 가격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및 소득 또는 가격 지원으로부터 혜택이 있을 때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출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동 법에 저촉되는 보조금이라 할 수 없고, 반보조금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이어야 하며(EU 반보조금법 제4조 4항), 특정성

(specificity) 여부에 대한 결정은 증거에 근거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 공여당국이 관할하는 지역 내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특정한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EU 반보조금법 제4조 2항).

a) 공여당국이나 공여당국이 적용해야 하는 법률에서 특정한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에의 접근을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경우,

b) 단, 공여당국이나 공여당국이 적용해야 하는 법률에서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자격요건이 자동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는 경우,

⇒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이란?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함은 종업원의 수 또는 기업의 규모 등과 같이 중립적인 기준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평등하게 적용되는 수평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과 조건은 법과 규칙 또는 다른 공식적인 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c) a)와 b)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적으로는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사용, 특정 기업이 보조금의 대부분

을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비례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 공여 및 보조금 공여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방식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 c)의 적용과 관련하여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 내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성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공여기관의 관할범위 내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특정 기업에게 제한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설정 또는 변경은 동 법의 목적상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EU 반보조금법 제3조).

다) 가)와 나)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a) 부속서 I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 또는 다른 조건 중 하나의 조건으로서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수출 성과를 조건으로 하는 수출 보조금

b) 유일한 조건 또는 다른 조건 중 하나의 조건으로서 수입상품에 대해 국내상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대체 보조금

⇒ 수출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급이, 법적으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현재의 수출 내지는 장래의 수출 또는 수출수입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상계조치할 수 있는(countervailable)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된다.

2. 피해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만으로는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EU산업에 피해를 끼쳤어야 한다. EU 반보조금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러한 EU산업의 피해와 피해의 대상인 EU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U 반보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란 EU산업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EU산업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threat), 그리고 EU산업의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체(material retardation)를 가져오는 피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EU내의 동종상품 그리고 EU산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1) 동종상품

반보조금법에 규정된 동종상품에 대한 정의는 반덤핑법에 규정된 동종상품의 정의와 같다. 즉 동종상품은 동일한 상품 즉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같지는 않아도 덤핑상품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종상품의 범위는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매우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2조).

2) EU 산업

EU반보조금법에 규정된 EU산업에 대한 정의도 EU반덤핑법에 규정된 EU산업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EU 반보조금법 제9조 참조).

EU산업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EU 생산자 전체 또는 상품 생산량 합계가 해당 상품의 EU 총생산량 중 주요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하는데, 이 중 주요부분이란 EU 총생산량 중 50%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EU반보조금법 제10조 6항). 다만 다음의 두 경우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제외한다.

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되는 당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가 그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이 생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자를 말한다.

⇒ 생산자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 관련되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 관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세 경우를 말한다.

- a)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작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b) 둘 모두 제3자에 의해 작간접적으로 통제받는 경우
- c) 둘 모두 제3자를 작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또는 관련된 효과로 생산자를 관련되지 않은 생산자와 다르게 행동하게 할 수 있다고 믿거나 다르게 행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또는 영업적 지위에 있을 때 그 일방은 타방을 통제한다고 본다.

⇒ 이러한 생산자들을 EU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생산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의 판매에서 이익을 볼 수 있어 피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EU시장은 2개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세분될 수 있고 세분된 개별시장내 생산자도 분리된 산업으로 간주된다.

a) 한 시장에 속한 생산자가 해당 상품의 생산량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 시장에 판매하고,

b) 그 시장에서의 수요는 EU내 다른 지역에 있는 당해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충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EU 전체산업의 대부분에 피해가 없더라도 세분된 지역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집중되고, 동 상품으로 인해 동 시장내 생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U산업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생산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는 특정지역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가격이행약속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 연합이익에 대한 평가시 그 지역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가격 이행약속이 즉시 없거나, 제13조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상황이 적용되면 잠정 또는 확정 상계조치가 EU 전체차원에서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는 특정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EU 반덤핑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보조금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세분된 시장에도 불구하고 EU 전체로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EU 당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3) 피해의 결정

(1) 실질적인(material) 피해

피해는 실질적이고도 중대한(material) 피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가 실질적인지에 대한 결정은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량 및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EU 시장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EU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EU당국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8조 1항).

⇒ 보조금 지급 상품의 수량 및 이로 인한 가격의 변동

우선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의 수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나 또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상품의 실질적인 증가가 있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덤핑수입 자체의 증가량을 의미하며, 상대적이라는 것은 EU 산업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으로 인해 EU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끼친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U산업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는지,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효과로 상당한 정도의 가격하락이 있었거나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상당한 정도의 가격상승이 저지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 비교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보조금지급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서 가격상승이 상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EU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서 동시에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입효과가 아래의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 반보조금법 제8조 3항).

- a) 국가별 수입과 관련하여 상계조치할 수 있는 보조금액은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최소허용수준인 1%(de minimis) 이상이어야 하고 국가별 수입물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 b)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입품간 경쟁조건에 비추어 그리고 수입품과 EU내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에 비추어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반덤핑법상 미소마진(de minimis)의 경우에는 수출가격의 2% 미만이었으나, 반보조금법상 미소금액(de minimis)은 수출가격의 1% 미만인 점에서 차이가 난다.

⇒ 무시할 수 없는 수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란 WTO 반보조금협정에서는 대체로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수입하는 동종상품 전체의 3%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2009년 반보조금법 개정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량이 EU에서의 시장점유율 1% 미만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는 보조금지급 수출국들의 수입량 전체가 EU 전체소비의 3% 이상이 되지 않으면 조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반보조금법에서도 동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EU당국은 EU내 산업의 피해를 각 국가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누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의 EU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과거 보조금 및 덤핑의 효과로부터 EU산업이 여전히 회복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인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 모든 관련 경제적 요인 및 지표

모든 관련 경제적 요인 및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아래의 예시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이들 요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요인이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EU 반보조금법 제8조 4항).

- 상계가능한 보조금 액수
- 판매, 산출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가동율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하락
- EU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자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어왔는지 여부

(2) 피해의 위협

실질적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이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하게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8조 8항).

- a) 당해 보조금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b)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EU시장에 보조금 지급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 c)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EU내로의 보조금 지급 수출품의 실질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압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d) 수입품이 국내가격을 현저하게 인하하거나 가격인상을 현저하게 억제하는 가격으로 반입되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 조사중인 상품의 재고

이러한 요소들 중 그 어떤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인들 전체는 보조금지급 수출이 압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EU 산업설립의 실질적인 지체

EU 반보조금법 제2조(d)에서 규정하는 피해(injury)는 EU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또는 중대한(material)) 피해를 의미하며,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할 위협(thereat)과 EU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체(material retardation)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반덤핑법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U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체(material retardation)하는 것에 대해 반보조금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3. 인과관계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에 상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EU 산업에 대한 피해가 이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EU산업의 피해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보조금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과관계의 증명은 쉽지 않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당국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요인과 관련되지 않은 요인들 모두를 조사해야 하며, 관련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를 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에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은 반보조금법 제8조 2항에서 규정된 수량이 그리고/또는 가격수준이 제4항에서 규정된 EU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귀속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 이외에 동시에 EU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 피해가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보조금지급 수입품에 따른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행태에서의 변화
- 제3국과 EU 생산자간 제한적인 무역관행과 경쟁
- 기술의 발전
- EU 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4. EU 이익에 부합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상품으로 인해 EU 산업에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조금과 피해의 존재 및 보조금과 피해간 인과관계 외에 EU에서는 반보조금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EU 반보조금법 제31조에 규정된 연합이익(Union Interest) 테스트이다. 즉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합이익(Union Interest)에 반하지 않아야 비로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과 마찬가지로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public interest)조항은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EU 반덤핑법 및 반보조금법에서는 집행위원회가 반드시 연합이익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반보조금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EU 반덤핑법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생성 그 자체에 기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연합이익 테스트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EU산업의 생산자의 이익을 주로 고려하여 이익을 평가하였으며, 만료재심시에 연합이익 평가가 실질적이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러 비판을 반영하고자 연합이익의 평가시 EU산업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EU산업에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된 현재의 반보조금법에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사용자(user industry), 소매 판매업자, 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하여 이들의 조사에 있어서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III

절차적 요건

1. EU 반보조금절차의 개관

EU 반보조금법은 제10조 이하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청에 의한 절차의 개시와 직권에 의한 절차의 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신청자의 자격과 증거채택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제11조에서는 조사의 실시 및 조사기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각각 잠정조치와 가격약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반보조금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경우를, 제15조에서는 확정 반보조금조치의 부과에 대해서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소급규정을, 제18조에서는 일몰재심을 제19조에서는 중간재심을, 제20조에서는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환급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재심과 환급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23조에서는 우회조치에 대해서 제24조에서는 절차에 관한 일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집행위원회의 반보조금조치에 대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절차를 두고 있으며,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조사방법으로서 현장검증과 샘플링과 비협조기업에 대한 조치 그리고 비밀정보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서는 이러한 조사종결에 따른 내용의 공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단순한 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위에서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절차들은 반보조금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이 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되, EU 반덤핑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2. 절차의 개시

개시(initiation)란 EU 반보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적인 행위를 말한다. 반보조금 조사의 개시는 반덤핑 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한 개시와 직권에 의한 개시로 나누어진다.

1) 신청에 의한 개시

신청에 의한 개시는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서면으로 집행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자격은 EU산업을 위해 행위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가능하며, 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청자격을 가진다. 만약 서면이 회원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또한 제소자의 서면신청이 없더라도 회원국이 보조금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집행위원회에 알려주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직권에 의한 개시

집행위원회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있으면 제소자의 서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권조사를 정당화할 상계가능한 보조금과 피해의 존재 및 이 둘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집행위원회가 하는 즉시 관련 회원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WTO 보조금협정 및 EU 반보조금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제소에 관련된 산업이 신청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거액의 신청비용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보조금의 존재(가능하면 그 금액까지)와 피해 및 보조금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첫째,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상품의 EU내 생산량 및 생산가치에 관해 신청서에 서술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EU산업을 대표하여 서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동종상품의 알려진 모든 EU 생산자 (또는 동종상품의 EU 생산자협회) 명부를 통해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 생산자들에 의해 동종상품의 EU내 생산량 및 생산가치의 기술서에 의해 동 신청이 대표하는 산업

둘째, 보조금지급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개별 수출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수입자의 명부

셋째, 당해보조금의 존재, 액수, 성격 및 상계가능성에 관한 증거

넷째,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것과 같이, EU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과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보조금지급 수입품의 수량에서의 변화, 동 수입품의 EU시장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동 수입품의 EU산업에 미치는 후속적인 영향

집행위원회는 증거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증거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동종상품의 EU 생산자가 신청서에 표명한 찬반의사의 정도에 대해 검토한 것에 따라서 동 신청서가 EU 생산자에 의한 또는 EU 생산자를 대표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까지는 조사는 개시되지 않는다.

조사에 참가하여 신청서에 찬반의사를 표명한 EU생산자의 합계 생산량이 동종상품의 EU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동 신청서는 EU생산자에 의해 또는 EU생산자를 대표하여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에 명시적으로 찬성한 EU생산자가 EU산업이 생산한 동종상품의 총생산량 중 25%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EU산업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50% 초과 기준 및 25% 초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U 반덤핑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조사당국은 조사개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개

시를 구하는 신청서의 공표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집행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합의하에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협의과정에 참여하게 될 원산지국 또는 관련수출국에는 동 신청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과 피해에 관한 증거는 조사개시를 할지에 대해 그 여부를 결정할 때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보조금과 피해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된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의 국가들의 수입상품 합계가 EU 소비량의 3%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는 반덤핑법과 마찬가지로 소비량의 3% 미만인 상품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EU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EU 반덤핑법 제5조 7항 및 반보조금법 제10조 9항 참조). 그리고 신청서는 조사의 개시 전에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집행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45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신청서가 집행위원회에 접수된 지 45일 이내에 제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관련 회원국에 신청서 분석정보를 신청서가 접수된 지 21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10조 11항).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절차개시의 통지는 조사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절차개시 통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상품과 관련

국을 지정하고, 집행위원회에 신청된 정보의 요약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알리고, 이들이 제시한 견해와 정보가 조사기간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면 이해당사자가 서면으로 견해를 제시하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절차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EU 반보조금법 제10조 12항).

한편 집행위원회는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수출자, 수입자와 이들의 대표협회가 절차개시에 관해 잘 알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절한 주의를 하면서 알려진 수출자와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 당국에 서면신청서 전문(全文)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된 수출자들의 수가 매우 많으면,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 당국 또는 관련 무역협회에만 전문을 제공할 수 있다(EU 반보조금법 제10조 13항).

또한 반보조금조사는 통관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EU 반보조금법 제10조 14항).

3. 조사

1) 조사의 실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EU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

간은 보조금과 피해를 포함하도록 반보조금법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이 포함 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과 피해는 동시에 조사되어야 한다.

⇒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은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의 최근 회계연도이지만, 이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 및 기타 관련 자료가 이용가능하다면 조사개시 전 최소 6개월의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집행위원회의 질의서를 받은 당사자는 적어도 30일간의 회신기간을 가져야 하며, 그 회신기한은 질문지 수령일로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의 적정한 외교대표에게 수령 또는 전달된 날로부터 일 주일이 지나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30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적절하게 밝히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회원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때 회원국은 모든 검사,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와 함께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관련 수입자, 무역업자 및 EU 생산자에 대해서 회원국에게 필요한 검사와 감사를 수행하도록 회원국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회원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회원국도 정보가 비밀정보가 아닌 한 관련정보의 이송을 집행위원회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알려진 이해당사자는 관보에 고지된 기한 내에 절차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임을, 그리고 그들이 청문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청문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

반보조금법 제10조 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알린 수입업자, 수출업자와 신청자 및 원산지국가 그리고/또는 수출국 정부는 조사에서 반대의 이해당사자와 만나 반대의 견해를 듣고 논박할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기회는 당사자의 편의성과 정보의 비밀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그 참석여부가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주지 못한다.

또한 반보조금법 제10조 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알린 신청자, 원산지국가 그리고/또는 수출국 정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및 그들의 대표협회, 사용자와 소비자 단체는 집행위원회에 제공되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보는 EU 당국이나 회원국 정부가 준비한 내부서면과는 별개로 비밀정보가 아니어야 하고, 조사에서 사용된 관련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원산지국가 그리고/또는 수출국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사기간

조사는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가격약속 또는 확정상계조치의 결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또는 13개월 이라 함은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 가급적 상계조치 여부에 대한 모든 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반보조금조사가 최대 13개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에 비해 장기간 보조금지급 행위를 방치하면 EU산업에 더욱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을지라도 조사중인 상품에 대해서 잠정적인 상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EU 반보조금법 제12조).

⇒ 잠정조치의 부과조건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EU 반보조금 제12조 1항).

- a) EU 반보조금법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 b) 절차개시에 대해 이해당사자에게 그 결과가 통지되고, EU 반보조금법 제10조 1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제출할 기회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을 것
- c) 수입상품이 상계조치할 수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것과 그 결과 EU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긍정된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을 것
- d)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연합이익에 부합되어야 할 것

상기의 조건이 충족되면 잠정상계관세(provisional duties)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 상계관세는 절차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야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절차 개시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

⇒ 잠정상계관세 부과액수

잠정상계관세 금액은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계가능한 보조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상계관세 금액이 보조금 총액보다 적더라도 EU산업의 피해를 제

거하기 위해 충분하다면 보조금 총액보다 적은 상계관세 금액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부과의 원칙을 반보조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보조금 지급을 받은 상품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EU 구성원들 이룰테면 중간재 사용자 그룹 또는 소비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 잠정상계관세의 부과형태

잠정상계관세는 보증서로 담보되며, 관련 상품의 EU내 유통은 보증서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WTO 보조금협정상 담보형태는 현금공탁이나 채권으로 담보하게 하고 있다(WTO 보조금협정 제17조 2항).

집행위원회는 제25조 4항에 규정된 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에 따라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EU 반덤핑법의 위원회 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잠정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최대 4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다. 잠정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반덤핑조치와 달리 추가로 연장되지 않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상기에 설명한 잠정조치 부과조건이 충족된다면, 집행위원회는 요청서 접수 후 5근무일 내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가격인상약속

상계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국내산업의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경쟁이 가능하게 되도록 환

정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간이한 절차로 고안된 것이 수출자가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을 제안하면 집행위원회가 수락하는 것이 바로 가격인상약속의 수락(Undertakings) 제도이다(EU 반보조금법 제13조 및 WTO 반보조금협정 제18조)

1) 가격인상약속 제안의 수락 요건

이러한 가격인상제약에 대한 수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보조금과 피해가 있다는 잠정적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 집행위원회가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에 따라
-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이 보조금을 철폐 또는 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조금 지급효과와 관련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 수출자가 보조금 지급을 받아 혜택을 입은 만큼 가격을 변경하거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이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피해제거에 만족스럽다고 결정한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가격인상약속이 수락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잠정 및 확정 상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안은 수출자 또는 집행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수출업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또한 수출업자가 이러한 가격인상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해 사건의 결정에 편견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가격인상약속 제안에 대한 수락은 수출자측에서 제안하였던지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던지 간에 당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결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인상제안은 제30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할 수 없다.

2) 가격인상약속 제안의 거부

집행위원회는 가격인상약속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비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EU 반보조금법 제13조 3항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a) 일반적인 정책상의 이유

b) 수출자의 수가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제안이 실현될 수가 없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EU 반덤핑법과 마찬가지로, EU의 일반적인 정책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상의 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동 조항은 침묵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제안의 수락여부는 집행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반보조금법 제8조 1항과 제8조 3항의 해석상, 가격인상약속 제안의 수락은 제안한 수출자 또는 일부 수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제안의 수락거절시에 집행위원회는 관련 수출자 또는, 원산

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에게 이러한 수락거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문구의 해석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기에 비공개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WTO 반보조금협정에서도 ‘가능하다면(when practicable)’, 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to the extent possible)’ 라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종적인 상계조치 판정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동 제안을 받아들인 당사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비밀정보가 아닌 형식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3) 가격인상액의 결정

이러한 가격인상제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그 인상액은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액이 EU산업에 끼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하다면 이러한 가격인상액이 보조금 액수보다 적더라도 동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부과의 원칙이 가격인상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조사의 종결

가격인상액의 제안이 수락되면 집행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조사를 종결(terminate)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피해에 대한 조사도 완결(complete)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과 피해의 조사에 대한 완결 결과 덤핑과 피해가 없다는 부정적 결

정(negative determination)이 내려진다면 가격인상제안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동 결정이 가격인상약속의 존재에 대부분 기인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격인상약속을 지킬 것을 수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가격인상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의 제공과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비협조는 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락 당사자의 위반 또는 철회나 집행위원회의 수락 철회시에는 잠정조치 또는 확정조치가 부과된다. 이 경우 관련 수출업자 또는,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에게, 스스로 철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표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철회의 결정시 관련회원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나 회원국은 가격인상약속의 위반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에 대한 평가는 6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연기에 대한 요청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기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가격인상약속이 위반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가격인상약속의 철회 또는 위반의 경우에 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게끔 한 조사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 BIA)’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것은 집행위원회가 잠정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려면 상계가능한 보조금 금액과 피해의 산정이 필요한데, 만약 이러한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반 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면 그 만큼 더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으므로 집행위원회가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시 취득한 정보 등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확정조치의 부과

1) 확정조치 없는 절차의 종료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할 경우, 절차의 종결이 연합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절차는 종결된다. 또한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조사나 절차를 종결한다.

그리고 상계조치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액이 미소수준인 경우 또는 보조금지급 수입품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물량이 무시할 만하거나, 피해가 무시할 만하면 절차는 즉시 종결된다.

⇒ 미소수준 및 무시할 만한 수준

보조금 지급액이 미소한 수준이란 보조금 지급금액이 총가세의 1% 이내이면, 단 개발도상국의 경우 2% 이내, 미소수준으로 간주된다.

또한 제10조 11항에 규정된 절차에 관해서는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제10조 9항에 정해진 금액보다 작으면 미소수준으로 보통 간주된다. 단,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상품의 경우에는 EU내 동종상품의 총수입품의 4%이내 이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상품의 개별점유율이 총

수입 중 4% 이내인 개별수입품 전체의 점유율이 EU내 동종상품의 총수입품의 9% 미만인 경우에도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2) 확정 상계관세의 부과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피해가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연합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잠정조치가 시행 중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잠정조치가 만료되기 전 1개월 전에 확정조치의 부과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한편 보조금이 철회되거나 더 이상 관련 수출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계관세 금액은 보조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집행위원회가 제출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과원칙을 따르는 것이 명백히 연합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하면 보조금보다 적은 금액의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중국산 전기자전거(e-bike) 사건을 계기로 반덤핑관세의 부과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최소부과원칙을 따르되, 원재료에 대한 변형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EU 반덤핑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제2a 내지 제2d가 적용되도록 2018년에 개정하였다(EU 개정반덤핑법(Regulation 2018/825) 제1조 4항 b 및 6항 참조). 그러나 반보조금법에서는 이러한 반덤핑법의 개정과는 달리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최소부과의 원칙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계관세는 보조금 혜택과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상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무차별하게 적절한 금액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여 이러한 가격인상약속에 따라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상계관세는 개별적으로(in each case) 부과되어야 하는데, 개별적인 경우한 조사한 사건별로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수출자가 여러 상품을 보조금을 지급받고 여러 상품을 수출하여 여러 건의 상품 모두에 대해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받았다면, 상품 통관시에 납부해야할 상계관세는 이러한 개별 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건건 마다 상계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개별 규칙(regulation)에서는 개별공급자에 대한 관세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관련된 공급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 수출자별 또는 생산자별 반덤핑관세의 세부사항을 지정하는 집행위원회의 명령은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발하게 된다. EU법상 규칙은 특별한 국내입법의 전환절차없이 회원국 전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집행위원회가 조사기업 및 상품의 수가 너무 많아 샘플링으로 조사하는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로 신고하였지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산정된 상계관세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집행위원회는 영의 보조금, 미소 보조금 그리고 비협조기업에 적용되는 상계관세금액은 가중평균 상계관세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에 선정되지 않은 당사자의 상계관세금액의 한도

조사에 선정되지 않은 당사자의 상계관세금액의 한도는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 이내이어야 한다. 상계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도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조사에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자신들의 실제 상계관세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대신 조사에 선정된 당사자의 가중평균 상계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샘플링에 의한 조사에 의하더라도 제27조에 규정된 개별적 취급이 인정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소급

(1) 잠정조치와 확정조치

잠정조치와 확정관세는 동 조치가 취해진 날 이후에 동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반입된 상품에만 적용된다(EU 반보조금법 제16조 1항).

⇒ '예외사항에 따라(subject to the exceptions)'란?

제16조 1항은 동법에서 규정된 예외사항에 따라(subject to the exceptions set out in this Regulation) 상계조치가 취해진 날 이후에 소비용으로 수입되어 자유로이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 잠정조치 및 확정조치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외사항에 따라(subject to the exceptions)'란 표현은 어떠한 의미인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간혹 해석되기 때문이다. 제10조가 소급적용에 관한 조문임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는 잠정조치 및 확정조치가 부과된 상품들에 대해서 동 법이 정한 예외사항이 적용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문의 문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채택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상계가능한 보조금과 피해가 존재하고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 잠정조치가 적용되어 왔다면, 집행위원회는 확정 상계관세가 부과될지에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부과되어온 관세 중 최종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집행위원회가 징수결정을 할 때 고려되는 피해에는 피해의 중대한 위험 및 EU산업 설립에 대한 중대한 지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잠정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다만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잠재적인 피해가 중대한 피해로 발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EU 반보조금법 제16조 2항).

한편 WTO법상 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한 때로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확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의무를 위반한 수출업자에게 약속 위반과 잠정조치 부과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그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 확정 상계관세 부과시 동 기간을 반영키 위함이다. EU도 이러한 WTO 보조금협정 제20조를 따라 EU 반보조금법 16조 5항에서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3) 잠정관세와 확정관세와의 차액의 처리

확정 상계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되지 않는다. 반면 확정관세가 잠정관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를 위해 재산정되

어야 하며, 최종결정이 반보조금이 아니라면 잠정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EU 반보조금법 제16조 3항). 이는 수출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소급기간의 연장

확정 상계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적용일 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를 위해 반입된 상품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개시 전 90일 까지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EU 반보조금법 제16조 4항).

- a) 제24조 5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품
- b) 집행위원회가 소급부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 관련수입자
- c) 동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상계조치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상품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상황
- d)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기의 수입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소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가격인상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의 경우

가격인상 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의 경우 확정 상계관세는 반보조금법 제24조 5항에 따라 등록되고 가격인상 약속 위반이나 철회 전에 소비용으로 수입되어 자유로이 유통된 상품에 대해 잠정조치의 적용 전 90일간 소급적용할 수 있다.

(6) 소급금지

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지체의 경우에는 피해의 위협 또는 실질적인 지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확정 상계관세만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만약 납부한 잠정관세가 있다면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다만, 잠정관세의 부과가 없었더라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위험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7. 상계관세의 부과기간

상계관세는 피해를 야기하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는 기간 및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EU 반보조금법 제17조).

8. 재심

반보조금 조치 후 이루어지는 재심에는 만료재심, 중간재심, 가속재심 등이 있다.

1) 만료재심(Expiry reviews)

확정 상계조치는 상계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해 보조금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또는 재발로 이어진다는 것이 재심에서 결정되지 않는 한, 확정관세 부과일로부터 5년 또는 보조금과 피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심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료된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18조 참조).

이러한 만료재심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또는 EU 생산자 또는 EU 생산자를 대표한 산업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며, 이 경우 상계관세는 동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부과된다.

2) 중간재심(Interim reviews)

상계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덤핑의 효과를 상쇄하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신청 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더라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것 같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조사가 중간재심이다(EU 반보조금법 제19조 2항).

신청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 중간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한 증거에 의해 집행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국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EU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또는 원산지국 그리고/또는 수출국의 신청에 의해서 제기된다(EU 반보조금법 제19조 1항).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위원회는 중간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재심에서 보조금과 피해에 관해서 의미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현행 상계관세가 피해를 제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EU 반보조금법 제19조 4항).

3) 가속재심(Accelerated reviews)

가속재심이란 확정 상계관세의 대상이 된 수출자가 원조사기간 동안에 집행위원회에 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조사받지 않은 경우에, 신속하게 그의 개별 상계관세율을 산정하기 위

하여 집행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속재심은 EU 생산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 후에 비로소 개시된다(EU 반보조금법 제20조).

4) 재심기간

만료재심 및 중간재심은 재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가속재심은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종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료재심이 중간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개시된다면 중간재심은 만료재심과 동시에 종결된다. 또한 만료재심이 중간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개시된다면 중간재심은 만료재심과 동시에 종결된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22조 참조).

만약 기한 내에 조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상계관세는 만료재심 조사에서 종결되며, 중간재심이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 중에 만료재심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또는 만료재심과 중간재심이 동시에 개시되면 만료재심과 중간재심 조사의 종결시 함께 종료되거나 또는 상계관세는 중간재심과 가속재심에 따른 조사에서는 변경되지 않고 유효하다.

9. 환급

수입자는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부과 중인 상계관세 수준 이하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부과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21조 참조).

동 신청은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된 회원국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징수된 확정 상계관세액의 부과가 적절하게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잠정관세액을 확정적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이 적절한 증거에 의해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 이내에 환급되어야 한다. 지급은 집행위원회의 환급 결정 후 90일 이내에 관세를 징수한 회원국이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재심 또는 환급심사에서 집행위원회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사 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계관세가 개별수출자에 대해서 폐지되더라도 수출자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개별수출자는 재심 및 환급절차에 남아 이후의 후속재심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EU 반보조금법 제22조 4항).

10. 현장검증 및 샘플링

1) 현장검증

집행위원회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거래자, 대리인, 생산자, 무역협회 및 무역기구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조금과 피해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현장검증에 대한 요청에 대해 시기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26조 참조)

만약 관련기업과 관련국이 동의한다면 제3국에서 이러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기업의 동의가 있는 즉시 집행위원회는 원산지국가 그리고/또는 수출국에 방문할 기업의 이름과 주소 및 일자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기업은 현장조사동안 검증되어야 할 정보의 성질, 추가로 제시해야 할 정보, 추가적인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

2) 샘플링

제소자, 수출자, 수입자, 상품유형 및 거래가 많은 경우 조사는 샘플의 선택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여 당사자, 상품 또는 거래의 수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할 수 있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27조 참조).

또는 기한 내에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상품, 판매 또는 수출자에 제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샘플링 방법으로 당사자, 상품 또는 거래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당사자는 조사개시 후 3주 내에 자기가 그러한 당사자에 해당됨과 동시에 샘플로 선정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가급적 관련당사자와 협의 및 동의로 샘플을 선정하여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선택권은 집행위원회에 있다.

샘플링에 따라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샘플에서 제외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계조치할 보조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단, 개별조사를 조사기한 내 마치

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될 만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샘플에 포함된 당사자가 조사에 비협조하여 조사결과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샘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협조가 지속되고 새로운 샘플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

이해당사자가 기한 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잠정 및 확정 판정을 할 수 있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28조 참조).

이해당사자가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정보를 채택하지 아니하며, 거짓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는 조사에 비협조한 기업으로 인정된다.

요청한 자료는 컴퓨터화된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화된 제출이 비합리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되거나 비합리적인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면 비협조기업이 되지 않는다.

제출된 자료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진 않을지라도 자료의 어떤 흠결이 정확한 판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에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고, 당사자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보가 적절하게 제시간에 제출되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면 자료는 채택될 수 있다.

제출한 증거나 정보가 채택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그 이유를 고지받고 기한 내 추가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추가적인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증거나 정보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공표된 판정문에 기록되어야 한다.

상계조치할 수 있는 보조금액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조사개시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조사기한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가능한 다른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관한 인용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공표된 가격표, 공식적인 수입통계와 관세환급 또는 조사 기간 동안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같은 것이 있으며, 적절하다면 세계 시장에 속하는 관련 데이터 또는 다른 대표 시장에 속하는 관련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이해당사자가 관련정보를 주지 않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협조한다면, 협조한 이해당사자에 비해서 비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11. 비밀정보

성질(by nature)상 비밀인 정보 또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밀로 취급될 것을 요구한 정보는 당국은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 (EU 반보조금법 제29조 참조).

성질상 비밀정보란 정보의 공개가 정보제공자의 상대방에게 중요한 경쟁

적 이점이 될 경우,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자는 대신에 공개되어도 좋을 요약본(non-confidential summaries)을 제출해야 한다. 동 요약본에는 비밀로 제공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이해당사자는 동 정보를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를 밝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위원회가 상기의 비밀정보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일반적인 형태나 요약형태로 공개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꺼린다고 판단하면, 제출된 정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적절한 정보원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설명을 듣거나 확인이 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비밀정보의 취급은 일반정보의 공개, 특히 결정이 취해진 그 이유, 사법 절차에서 이유설명의 필요가 있는 한에 있어서 당국의 결정에 기여한 증거의 공개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공개시에는 영업비밀이 공표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은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간 정보교환 또는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이 작성한 내부분서의 교환은 동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보의 공개

제소자, 수입자와 수출자 및 동 수입자, 수출자의 대표협회 그리고 원산지국가 그리고/또는 수출국은 집행위원회가 잠정조치를 부과한 그 주된 사실과 이유(considerations)를 적시한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잠정조치 부과후 즉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는 직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서면으로 공개되어야 한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30조 참조).

상기에 규정된 당사자는 확정조치부과를 권장하는 근거의 주된 사실과 이유(considerations) 또는 관세부과 없는 절차나 조사 종결의 주된 사실과 이유의 최종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 사용된 사실과 이유가 확정조치에서 달라졌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공개의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잠정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잠정조치 부과의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하며,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최종 공개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한은 보통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의 종료 전 1개월 이내이다.

집행위원회는 서면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보통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정해진 절차의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비밀정보의 보호에 주의해서 서면으로 공개한다. 하지만 신청 당시에 집행위원회가 관련 사실과 이유를 공개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 그 이후 집행위원회가 공개할 입장이 되었을 때 가능한 한 조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로 인하여 집행위원회가 이후에 내릴 후속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다른 사실과 이유로 인해 후속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이유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

13. 위원회 절차

집행위원회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에 규정된 위원회를 지칭하며, 동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8조는 EU 반보조금법 제25조에 준용된다. 이 외 위원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U 반덤핑법 위원회절차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IV

상계조치의 우회

1. 개요

상계조치의 우회(Circumvention)란 상계관세가 특정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특정상품(완제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소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제3국을 통한 수출 또는 상계관세를 받는 수출국에서의 상품에 대한 미소변경 혹은 상계관세가 부과 중인 상품의 부품을 통하여 이러한 상계관세를 회피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이하 EU 반보조금법 제23조를 참고할 것).

이러한 상계조치의 우회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WTO 전체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WTO 반덤핑법에서와 마찬가지로, GATT 및 WTO 반보조금협정에서는 이러한 우회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우회의 요건

상계조치의 우회는 제3국과 EU간에 또는 상계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의 개별기업과 EU간에 발생한 무역패턴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며, 이러한 무역패턴의 변화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 이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 또는 경제적 정당성이 부족한 관행, 공정과정 또는 제조로부터 기 인해야 하고, 피해의 증거가 있거나 또는 가격 그리고/또는 동종상품의 수량의 면에서 관세의 구제효과가 침해되고 있다는, 그리고 수입된 동종상품 그리고/또는 부품은 여전히 보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관행이나 공정 또는 작업(a practice, process or work)을 통하여 우회가 있을 것, 둘째는 유럽연합과 제3국간 또는 상계조치를 부과받는 국가의 기업 간 무역패턴에서의 변화(a change in the pattern of trade)가 있을 것, 셋째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이유 외에는 다른 정당한 이유나 경제적인 정당성이 없을 것(insufficient due cause or economic justification other than the imposition of the duty), 넷째는 상계관세의 구제효과(remedial effects of the duty)를 침해할 것, 다섯째는 피해의 증거(evidence of injury)가 있을 것이다.

⇒ 관행이나 공정 또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보통 상계조치를 부과받지 않는 관세코드에 분류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미소변경을 가하는 경우(이러한 미소변경이 관련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 상계조치 중인 상품의 제3국을 통한 위탁판매(consignment)
- 제조업자의 상품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보다 낮은 개별관세율을 적용받는 생산자를 통해 수출자나 생산자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상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상계조치 중인 국가에서의 판매형태나 판매통로를 재조직하는 경우

3. 조사절차

우회여부에 대한 조사는 집행위원회의 발의나 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위원회가 발하는 개별 규칙(regulation)으로 조사는 개시된다. 조사의 개시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관련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지시하여 조상대상이 되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의 협조를 받아 상계조치의 우회가 있었는지를 조사가 개시된 후 9개월 이내에 결론지어야 한다. 사실조사의 결과 상계조치가 확대되는 것이 정당화되면, 집행위원회는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위원회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상계조치의 확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우회결정의 효과

조사결과 상계조치를 우회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조사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상계조치는 확대된다. 즉 미소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상품 또는 상계조치 중인 국가에서 미소변경된 동종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부품에 대해 상계조치가 확대된다. 이러한 상계조치의 확대는 제24조 제5항의 등록절차에 따라 상품이 등록된 날 또는 등록 대신에 보증금을 요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잔여상계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계관세는 상계조치의 우회가 발생한 때 상계조치 중인 국가에서 개별관세로 혜택을 받고있는 기업의 수입품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상계조치의 확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입증되는 증거를 통해서 기한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EU 밖에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이루어져 우회가 이루어졌다면, 관련상품의 생산자는 그가 상계조치를 받는 생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우회를 위한 관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상계조치의 확대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EU 내에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이루어져 우회가 이루어졌다면, 수입자는 그가 상계조치를 받는 생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상계조치의 확대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계조치의 확대에 대한 재심은 상계조치가 확대시행된 지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면제를 요청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요청할 당사자의 수가 상당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재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EU 통상장벽규칙(TBR)⁶¹⁾

I TBR의 의의

EU의 TBR⁶²⁾은 비EU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그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EU의 ‘공세적’ 무역정책 수단의 하나에 해당된다. 즉, TBR은 2009년 발효된 TFEU 제206조와 제207조에 근거한 공동통상정책(CCP)의 주요 수단으로서, 반덤핑·반보조금·세이프가드 조치 등과 같이 비EU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EU 통상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 무역방어수단(TDI)과 함께 EU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⁶³⁾ 비교법적으로 TBR은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

61) EU TBR에 관해서는 김대원, ‘2015년 EU 통상장벽규칙(TBR)과 국제통상규범’, 『강원법학』 제56권 (2019.2)에서 수정 재인용하였다.

62)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5년 TBR로, EU Official Journal (OJ) Legislation (L) 272 (2015년), pp.1-13 참조[Regulation (EU) 2015/18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2015 laying down Union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63) EU의 FTA 정책은 TFEU 제206조~제207조(EC조약 제131조~제134조) 등에 기초한 ‘공동통상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TFEU 제206조(EC조약 제131조)에 따라 EU는 세계경제질서의 기초 아래 대내적으로는 EU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및 법률의 조화를 통하여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역외국가와 효과적인 경제관계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EU회원국들의 협상력 제고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공동통상정책’의 틀을 기초로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및 무역장벽제거 등의 각료회의 규칙들에 근거하여 EU의 대외무역관계에 적용되는 무역정책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여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보조하고 있다. EU 내 회원국마다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무역정책’을 EU 차원에서 단일화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통합의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산피법)이나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또는 중국의 대외통상장벽조사규칙(对外贸易壁垒调查规则)⁶⁴⁾과 유사한 제도로써, 통상장벽을 조사하고 철폐하려는 이러한 공세적 성격의 제도는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TBR은 1984년 EC의 신통상정책(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NCPI)에 연원을⁶⁵⁾ 두고 있고, 그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95년 WTO의 출범과 2009년 발효된 EU의 리스본 조약으로 이루어졌다. 즉, WTO 이후 통상 분쟁의 경우 분쟁 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회원국의 '일방적' 무역제재는 위법한 조치가 될 수 있어 NCPI의 절차와 그 실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1994년 TBR 출현의⁶⁶⁾ 주된 이유가 되었다. 또한 리스본 조약 이후 EU CCP의 적용 범위의 확대와 EU 기관과 회원국 간의 의사결정체제(Comitology: 코미탈리지)가 변화되어 CCP의 한 축인 TBR 개정 필요 때문에 2015년 TBR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TBR은 국제무역규범의 측면에서 다음의 4 가지 중요한 의의가

규모가 커지면서 그 '공동통상정책'의 적용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수, 「EU 공동시장법」(한국학술정보, 2010), p.234.

64) 중국상무부(MOFCOM) Order No. 4(2005.02.02.).

65) EU Official Journal (OJ) Legislation (L) 252 (1984년), pp.1-6 [Council Regulation (EEC) No 2641/84 of 17 September 1984 on the strengthening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with regard in particular to protection against illicit commercial practices]. 관련 자료는 EUR-Lex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에서 열람할 수 있다.

66) OJ L 349 (1994년), pp.71-78 [Council Regulation (EC) No 3286/94 of 22 December 199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Community'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TBR은 제3국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공세적’ 무역정책수단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EU도 회원국인 WTO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제23.1조에서 “[WTO]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DSB의 절차에 호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방적 무역제재를 금지하고 있어 TBR 발동요건 중 ‘통상장벽의 개념’을 균형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TBR을 통한 EU 무역정책조치의 근거 규범과 WTO 규범간 충돌 가능성을 (norm conflicts) 고려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의 무역정책조치에 대한 WTO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양자 간의 충돌이 격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이전의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운용 및 그에 대한 WTO의 사법심사에서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났다. 통상 이러한 규범충돌은, 무역정책조치에 대한 WTO 규범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EU 통상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규율)와⁶⁷⁾ 같은 소극적인 경우와 무역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국내법과 WTO 규범이 같이 존재하여 양자 간 적용 요건이나 효과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적극적인 경우가⁶⁸⁾ 가능한 바, TBR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TBR은 회원국 뿐만 아니라 EU 산업이나 개별 기업과 같은 사인(private person)도⁶⁹⁾ EU집행위

67) 공정무역론의 위험성에 대한 고전적 저작으로는 J. Bhagwati & R. Hudec (eds.), *Fair Trade and Harmonization: Prerequisites for Free Trade?* (The MIT Press, 1996), Volume 2 참조

68) 이러한 적극적 규범 마찰은 특히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회원국 국내법에서의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제시하는 입법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와 관련한 대표적 예가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둘러싼 통상법상의 논쟁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대원, “미국 관세법 337조의 WTO 합치성 검토”, 『국제법논총』 제11권(2005), pp.33-52 참조.

69) WTO는 기본적으로 정부 간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행위자는 정부이다. 이런 점에서 사인(private parties)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특히 WTO의 ‘헌법화’ (constitutionalization)와 관련해 그 역할의 증대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P. Mavroidis & W. Zdouc, “Legal Means to Protect Private Parties’ Interests in the WTO: The Case

(European Commission)를 통해 WTO DSB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협력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넷째, EU 통상법과 관련하여 TBR은 집행위가 TBR 조사나 조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통상장벽위원회(Trade Barrier Committee: TBC)와 보조를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EU 코미탈리지와 관련되어 있고 리스본조약에서 그 내용이 변화되었다. 즉 리스본조약 이전에는 5 개의 절차로 나누어졌던 코미탈리지 위원회의 업무가 2011년 코미탈리지 규칙⁷⁰⁾ 개정으로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4조)와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5조)의 2 가지로 단순화되어 코미탈리지 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 관료가 공동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EU의 의사결정절차나 방식으로서의 코미탈리지는 EU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인 바, 그 점점에 TBR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2015년 채택되어 발효된 TBR을 중심으로 EU의 무역정책조치의 최근 동향을 일람하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규범과의 관련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of the EC New Trade Barriers Regul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998) pp.407-432 참조.

70) OJ L 55/13 (2011), Regulation (EU) No 182/2011.

II TBR의 근거와 TDI와의 비교

1. TBR의 입법적 변천

TBR은 EEC 설립조약 제113조 2항에 따라 1963년 EEC 집행위원회의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각료회의 규칙에 대한 제안에서 시작 되었다(미채택).⁷¹⁾ 이것은 농산품에 대한 타국의 불공정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52조에 대응하여 나온 규정으로 특히 동조에서는 처음으로 사인(private person)이 요구하면 대통령은 외국의 통상장벽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²⁾

그 후 1984년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EC는 신통상정책(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NCPI)을 시행하였고, 그 뒤 추가적 사항의 추가와 곧 출범할 WTO 분쟁해결절차에 상응하기 위해 1994년 TBR로⁷³⁾ 개정되었고, 2008년에 TBR 조치시행에 기준이 되는 국제무역규범에 ‘양자 간 협정’도 포함시키는 개정이⁷⁴⁾ 이루어졌다. 그 후 2009년 리스본조약 발효 후 TFEU 제207조 1항에 따라 CCP의 범위가 확

71) EEC집행위원회, Commission's proposal to the Council of 29 November 1963, Bulletin No. 1 (1964, Supplement 30).

72) 19 USC § 1882(d).

73) OJ L 349 (1994년), pp.71-78 [Council Regulation (EC) No 3286/94 of 22 December 199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Community'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특히 프랑스의 제안을 포함한 80년대 유럽 상황에 대해서는, 채형복,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통권 제8호 (1998), pp.65-66 참조.

74) Council Regulation (EC) No 125/2008.

대되어 이전의 개정사항을 종합하면서 2015년 개정이 이루어졌다.⁷⁵⁾ 또한 국제무역규범상의 분쟁해결 결과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이행규칙’⁷⁶⁾ 까지 시행하였다. 또한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인 2011년부터는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와 각료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통상투자장벽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전과 달리 투자장벽에 대한 사항도 TBR에서 다루고 있다. 1996년 이래 현재까지 TBR 절차가 발동된 것은 모두 24번이고 이 중 한국 관련은 3건이었다.⁷⁷⁾ 가장 최근은 2017년 EU 제지산업이 청원한 터키의 수입제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감시조치에 대한 것이다.

2. TBR과 TDI의 비교

EU 설립조약상 TBR의 근거가 공동통상정책(CCP)에 관한 TFEU 제207조 1항의 “[...] 덤핑 또는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취하는 무역보호조치 등에 관한 통일원칙”에 근거하므로 무역보호조치로서 방어적 무역방어수단(Trade Defense Instruments: TDI)와 공세적 통상장벽규칙(TBR)의 양자간 관계가 문제되는데, EU의 통상이익을 위한 무역보호조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양자는 별개의 정책수단이다.

75) OJ L 272 (2015년 10월 16일), pp.1-13 [Regulation (EU) 2015/18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2015 laying down Union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76) OJ L189/50 (2014년), REGULATION (EU) No 654/2014.

77) EU 집행위원회 사이트 <http://ec.europa.eu/trade/policy/accessing-markets/dispute-settlement/trade-barrier-investigations/> 참조. 한국 관련으로는 Imports of Cosmetics Products (1998년), Pricing and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 Products (1999년), Pricing and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 Products (2000년) 등이다.

즉, (1) 반덤핑조치, 보조금조치, 세이프가드조치⁷⁸⁾ 등의 TDI가 외국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TBR은 주로 EU기업의 역외시장 진출 장애를 조사하고 철폐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TBR은 TDI에 보충적인 조치라는 것을 또한 규칙에서⁷⁹⁾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기구적으로도 양자를 관할하는 각각의 소관 위원회(committee)가 있어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3) TDI의 경우 특별한 경우 집행위원회가 EU 산업의 청원이 없이도 직권으로도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⁸⁰⁾

〈표 4-1〉 TBR의 규범적 변천 (2019년 1월 현재)

구분	1984년 NCPI	1994년 TBR	2015년 TBR (현재 입법)
근거	•EEC설립조약 113조 •Council Regulation (EEC) No 2641/84	•TEU 113조 •Council Regulation (EC) No 3286/94	•TFEU 207조 •Regulation (EU) 2015/1843
목적	•공동통상정책 분야에서 국제법상 의무와 절차에 합치하면서, ① 제3국의 위반한 무역관행에 의한 피해 제거와 ② 제3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공동체 권리의 완전한 실행 (1조)	•공동통상정책 분야에서 국제통상규범, 특히 WTO상 의무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① 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제거와 ② 제3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으로부터의 불리한 무역효과 제거 (1조)	•공동통상정책 분야에서 국제통상규범, 특히 WTO와 EU가 당사자인 기타 국제통상규칙하의 의무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① 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제거와 ② 제3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으로부터의 불리한 무역효과 제거 (1조)
제(개)정 이유	•미국 301조의 강화에 따른 EU 통상이익 보호	•WTO 설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특히 일방적 무역제재를 금지한 DSU 23조 고려와 기존 NCPI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2009년 리스본조약 발효에 따른 공동통상정책의 변화와 그간의 국제통상규범 변화 반영, 특히 그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내용도 반영

78) 세이프가드는 OJ L83/16 (2015년), Regulation (EU) 2015/47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on common rules for imports를 참조.

79) 규칙 2015/1843/EU, 제16조("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in cases covered by other existing rules in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field. It shall operate by way of complement to [...]").

80) 반덤핑의 경우 OJ L176/21 (2016), Regulation (EU) 2016/1036, 5.6조 참조.

III TBR 개요

2015년 10월 6일의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2015/1843/EU는 국제 통상규칙들, 특히 WTO 하에서 확립된 국제통상규칙들(international trade rules)상의 EU의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하여 공동통상정책(CCP) 부문에서의 EU 절차를 규정하였다.⁸¹⁾

〈표 4-2〉 EU TBR(통상장벽규칙) 규정

조문 번호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EU 산업을 대표하는 청원
제4조	EU 기업을 대표하는 청원
제5조	청원 절차
제6조	회원국에 의한 청원
제7조	위원회 절차
제8조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에 대한 통보
제9조	심사절차
제10조	기밀
제11조	증거
제12조	심사절차의 종료 및 중지
제13조	통상정책조치의 채택
제14조	의결절차
제15조	보고
제16조	일반규정
제17조	폐지
제18조	발효

81) Regulation 2015/184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2015 laying down Union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1. 전문에 대한 분석

EU의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는 EU운영조약(TFEU) 특히 TFEU 제207조 2항에 유념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proposal)에 유념하며, 회원국들 국내의회들(national parliaments)에게 법률 초안을 제출한 후에, EU 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자문 의견(opinion)⁸²⁾에 유념하며,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⁸³⁾에 따라 동 법안을 채택하였다.

1) 국제통상규칙과의 합치성과 관련하여

각료회의 규칙 3286/94/EU⁸⁴⁾은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명확성과 합리성을 위해 동 규칙은 성문화되어야 했다.⁸⁵⁾ 공동통상정책(CCP)은 통일된 원칙들, 특히 통상방어(구제)(commercial defence)에 근거해야 하며, 국제통상규칙 하에서의 EU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U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통상규칙은 주로 WTO의 보조 하에 확립되었고, WTO 부속서들(Annexes)에 규정되어 있지만, EU가 당사자이고 EU와 제3국 간의 무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협정에 규정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규칙'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협정들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⁸⁶⁾

82) Opinion of 10 December 2014.

83)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7 July 2015 & decision of the Council of 18 September 2015.

84) Council Regulation 3286/94/EC of 22 December 199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Community'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OJ L 349, 31.12.1994, p.71).

85) 규칙 2015/1843/EU, 전문 (1)-(2).

국제통상규칙에 따라 EU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EU 절차는 ① EU법제에 기초하여 완전히 투명(fully transparent)하고, ② 국제통상규칙에 따라 EU의 권리를 주장하는 결정(decision)이 ‘정확한 사실정보’(accurate factual information)와 ‘법률분석’(legal analysis)에 기초하여 취해진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⁸⁷⁾ 그러한 법제는 제3국(비EU 국가)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통상장벽이 ‘피해’나 ‘부정적 무역효과’를 초래함에 있어서, 제소권(right of action)이 존재하는 경우 ‘조치가능한’(applicable) 국제통상규칙 하에서 그러한 장벽들에 관하여 대응하는 EU 기관들에게 무역구제를 위한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⁸⁸⁾

2) 공동통상정책상 설립된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그러한 법제에 의지 할 수 있는 권리는 회원국들이 다른 기존의 EU 절차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을 제기할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TFEU 제207조 3항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the committee)와 관련되어 그러하다.⁸⁹⁾

TFEU 제207조 3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committee)란 다음을 말한다. TFEU 제207조 3항에 의하면 대외통상협상 분야에서 집행위원회는 각료회의의 특별위원회 외에 유럽의회에도 통상협상 과정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동 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대외통상협상 과

86) 규칙 2015/1843/EU, 전문 (3)-(4).

87) 규칙 2015/1843/EU, 전문 (5).

88) 규칙 2015/1843/EU, 전문 (6).

89) 규칙 2015/1843/EU, 전문 (7).

정에서 유럽의회가 각료회의 특별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함을 의미하며, 이로서 유럽의회(EP)는 각료회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인 통상관료와는 달리 보다 정치적인 논리로 통상이슈에 접근(예를 들면, 로비활동 가능)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럽의회(EP)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의원의 전문성과 윤리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 유럽의회(EP)에 대한 EU업체의 로비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한·EU FTA 타결에서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가 자국 출신 유럽의회(EP) 의원을 통해 전략을 구사했듯이, 통상문제에 대한 회원국 국내 정치적 요구가 자국 출신 유럽의회(EP) 의원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⁹⁰⁾

TFEU 제207조 3항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the committee)의 제도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통상정책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EU기관들을 위한 자문 형성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에게 광범위한 정책적 함의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사건들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⁹¹⁾

3) 본 규칙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의무가 협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러한 국제의무에 대해 EU가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되는 것은 적절하며, 그러한 협정이 설립한 목적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EU가 유지하도록 요청되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당해 절차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EU의 국제 의무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규칙(규칙 2015/1843/EU)이 적용되지 않는 경

90) 김두수, 「EU법」 (한국학술정보, 2014), p.273.

91) 규칙 2015/1843/EU, 전문 (8).

우로서 TFEU 제207조에 따라 직접 채택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⁹²⁾

4) 절차상의 유의점

이 규칙 2015/1843/EU에서 규정된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중 준수해야 할 절차규칙은, 특히 ‘EU당국기관들’ 및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①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에 관한 조건 및 ② 심사절차에서 기인하는 중요 사실관계와 고려사항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⁹³⁾

5)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이 규칙 2015/1843/EU에 따라 행동함에 있어서, EU는 이 규칙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의 적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대응 행동)’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⁹⁴⁾

6) EU의 이익 보호와 인과관계의 필요

오직 ‘EU의 이익(interests of the EU)’을 위하여 개입이 요청될 경우에만, EU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의 체계 내에서, 제3국(비EU국가)에 의해 채택되거나 또는 유지되는 통상장벽에 관해 행동할 ‘집행위원회’의 의무가

92) 규칙 2015/1843/EU, 전문 (9)–(10).

93) 규칙 2015/1843/EU, 전문 (11).

94) 규칙 2015/1843/EU, 전문 (12).

주어진다. 그러한 'EU의 이익(이해 관계)'을 평가할 때 집행위원회는 심사 절차상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들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⁹⁵⁾ 그리고 이 규칙 2015/1843/EU에 규정된 심사절차의 이행은 그러한 심사절차의 수행에 대한 '결정'의 채택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조치'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요구한다.⁹⁶⁾ 그러한 '조치'는 유럽의회/각료회의 규칙 182/2011/EU⁹⁷⁾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7) 자문절차 및 기타 절차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는 조치에 효과를 준 현재 진행 중인 심사의 중지를 위해 이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조치의 순차적 논리의 제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⁹⁸⁾ 그리고 유럽의회(EP)와 각료회의는 광범위한 정책적 합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 규칙 2015/1843/EU 하에서 진전 상황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⁹⁹⁾ 또한 제3국(비EU국가)과의 '합의'(agreement)가 통상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한 '협상'(negotiations)은 TFEU 제207조에 규정된 절차들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¹⁰⁰⁾

여기에서 TFEU 제207조상의 절차란 다음을 말한다. 공동통상과 관련된

95) 규칙 2015/1843/EU, 전문 (13).

96) 규칙 2015/1843/EU, 전문 (14).

97) Regulation 182/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OJ L 55, 28.2.2011, p.13).

98) 규칙 2015/1843/EU, 전문 (15).

99) 규칙 2015/1843/EU, 전문 (16).

100) 규칙 2015/1843/EU, 전문 (17).

역내 입법 사안의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각료회의가 최종 승인한다. 대외 통상 협상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각료회의가 검토한 후 협상 개시를 승인하면 집행위원회가 대외통상협상을 수행한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대외통상협상 과정에서 TFEU 제207조(EC조약 제133조)상의 위원회(각료회의 특별위원회: 회원국 통상전문 관료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원국들은 동 위원회를 통해 대외통상협상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한다. 한·EU FTA에서와 같이 특정 분야(예를 들면, 서비스분과)에 대한 협상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교섭하되, 회원국들 외교관이 읍저버 자격으로 후열에 배석하여 참석하기도 하였다. 단, 소규모회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참석한 후 그 결과를 회원국들에게 브리핑한다. 과거에는 대외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최종서명, 정식발효 전 잠정발효, 최종비준에 대한 결정은 각료회의가 전권을 행사하였으나,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에는 대외통상 협상과정에서 유럽의회(EP)의 공식적 역할이 강화되어 유럽의회(EP)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통상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통상협상체결에 대한 승인권(비준에 해당)을 가진다.

2. 본문 규정들에 대한 분석

앞에서 언급한 전문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본문상의 세부적인 TBR 규정들이 채택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1) 목적

이 규칙은 국제통상규칙,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원으로 확립된

국제통상규칙 하의 EU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통상정책(CCP) 분야에서의 EU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국제적 의무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a) 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injury)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시장(market of the Union)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b)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무역효과(adverse trade effects)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국 시장(market of a third country)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¹⁰¹⁾ 상기 제1조 첫째 단락에 언급된 절차는 특히 공동통상정책 영역상의 국제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후속 행동 및 종료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정의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통상장벽

‘통상장벽’(obstacles to trade)이란, 제3국(비EU국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일체의 통상행위(trade practice)로서 국제통상규칙에서 제소권(right of action)이 확립된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제소권은 국제통상규칙이 어떤 통상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거나 또는 통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가 문제된 통상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¹⁰²⁾

101) 규칙 2015/1843/EU, 제1조.

102) 규칙 2015/1843/EU, 제2조 1(a).

(2) EU의 권리

‘EU의 권리’(the Union’s rights)란, 국제통상규칙에 따라 EU가 이용할 수 있는 국제통상권(international trade rights)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맥에서 ‘국제통상규칙’은 주로 WTO의 후원 하에 설립되고 WTO협정의 부속서(Annexes)에 규정된 것이지만, 또한 EU가 당사국인 다른 모든 협정에 규정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EU와 제3국 간의 무역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규정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¹⁰³⁾

(3) 피해

‘피해’(injury)란, 통상장벽이 제품(product) 또는 서비스(service)와 관련하여 EU 시장에서 EU 산업에 유발하거나 또는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피해(material injury)를 의미한다.¹⁰⁴⁾

(4) 부정적 무역 효과

‘부정적 무역효과’(adverse trade effects)란, 통상장벽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EU 기업(EU enterprises)에게, 제3국 시장에서 원인이 되거나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EU 또는 EU 지역(a region)의 경제에 대한 중대한 영향 또는 EU의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권자(complainant)가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로서 EU 기관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¹⁰⁵⁾

103) 규칙 2015/1843/EU, 제2조 1(b).

104) 규칙 2015/1843/EU, 제2조 1(c).

(5) EU 산업

‘EU 산업’(Union industry)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 EU 내 모든 생산자 또는 공급자:

- 통상장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종(identical) 이거나 또는 유사한(similar) 상품이나 서비스의 (EU 내 모든 생산자 또는 공급자)
-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 경쟁(competing directly)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EU 내 모든 생산자 또는 공급자)

또는

- 통상장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자나 가공자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나 이용자로서 (EU 내 모든 생산자 또는 공급자)¹⁰⁶⁾

(ii) 문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EU총생산에서의 상당한 비율(major proportion)을 점하는 모든 상품 생산자 또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 그러나,

-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통상장벽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입업자인 경우, ‘EU 산업’은 다른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특별한 상황에서는, 즉 ‘해당 회원국’ 또는 ‘해당 회원국들’에게 통상장벽의 영향이 집중되고 그들의 ‘집단적 결과물’(조합생산,

105) 규칙 2015/1843/EU, 제2조 1(d).

106) 규칙 2015/1843/EU, 제2조 1(e)(i).

collective output)이 ‘해당 회원국’ 또는 ‘해당 회원국들’에서 문
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과의 ‘상당한 비율’(major proportion)
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EU 지역 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EU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⁰⁷⁾

(6) EU 기업

‘EU 기업’(Union enterprise)이란,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형성되고, EU
내 등록 사무소, 중앙 행정 또는 주요 사업장을 가지며, 통상장벽의 대상
인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련되는 회사(company) 또는
기업(firm)을 의미한다.¹⁰⁸⁾

이와 관련해서는 EU의 ‘회사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충적 이해가 필요하
다. 다른 회원국에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즉 ‘설립의 자유’
는 ‘회사’(companies) 또는 ‘개인 사업가’(자영업자, businessmen)가 지점
또는 본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회사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으나, 단 설립
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관련 회사는 등기상의 주소, 경영본부, 주된
영업지 중 하나를 ‘EU 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회원국에 설립되었으나, ‘설립국’에서는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점·지점·자회사를 설치한 ‘다른 회원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할지
라도 설립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개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는 점에 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⁰⁹⁾¹¹⁰⁾

107) 규칙 2015/1843/EU, 제2조 1(e)(ii).

108) 규칙 2015/1843/EU, 제2조 1(f).

109) Case C-446/03, *Marks & Spencer plc v. David Halsey (Her Majesty's Inspector of Taxes)*,

다만, TFEU 제51조(구 EC조약 제45조)에 의한 공무집행과 관련된 ‘공권력 행사’(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의 경우와 TFEU 제52조(구 EC조약 제46조)에 의한 공공정책(public policy), 공공안보(public security),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7) 서비스

‘서비스’(services)란, TFEU 제207조에 기초하여 EU가 체결할 수 있는 국제협정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¹¹¹⁾

(8) 서비스 공급자

이 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EU 산업’과 ‘EU 기업’이라는 용어의 맥락에서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이 회원국의 법률이나 규칙을 따르는 비상업적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다.¹¹²⁾

[2005] ECR I-10837, para.59; Case C-347/04, *Rewe Zentralfinanz eG, as universal legal successor of ITS Reisen GmbH v. Finanzamt Köln-Mitte*, [2007] ECR I-2647, para.70.

110) 그런데 이러한 설립의 자유는 ‘자연인’의 경우에 1차 개업과 2차 개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개업’은 아직 개업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개업하는 것을 말하며, 회원국 국민이 역내에서 이미 개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개업활동을 폐쇄하고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차 개업’은 어느 회원국에서 이미 개업하고 있는 회원국 국민이 그 개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원국에서도 개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2차 개업도 인정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EU 역내 ‘복수의 회원국’에서 동시에 개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EU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실체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설립의 자유는 1차 개업이든 2차 개업이든 모두 ‘고정시설’의 설치를 통한 수입국과의 영속적이고도 계속적인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업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TFEU 제49조에서와 같은 대리점·지점·자회사가 있다. 단, 사업자를 위해 영속적이고도 계속적으로 행동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소도 ‘고정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설립의 자유는 ‘회사’의 경우에 TFEU 제54조(자연인과 동일하게 취급)에도 불구하고 ‘2차 개업’의 권리만이 보장되고 있다. 회사는 경영본부를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대리점·지점·자회사의 설립 형태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 2009), pp.282-283 참조.

111) 규칙 2015/1843/EU, 제2조 1(g).

112) 규칙 2015/1843/EU, 제2조 2.

3) EU 산업을 대표하는 청원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조합(협회나 단체)은 EU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하는 EU 산업을 대표(대신)하여 서면청원서(written complaint)를 제출할 수 있다.¹¹³⁾

청원(complaint)에는 ‘통상장벽의 존재’ 및 그로부터 발생(인과 관계)된 ‘피해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의 증거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제11조(증거)에 명시된 요소들의 예시적 목록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¹¹⁴⁾

4) EU 기업을 대표하는 청원

EU 기업이나 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조합(협회나 단체)은 제3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의 결과로 인하여 부정적 무역 효과를 받는 EU 기업들로 간주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EU 기업들을 대신하여 서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¹¹⁵⁾

청원에는 통상장벽의 존재 및 그로부터 발생된 ‘부정적 무역 효과’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정적 무역 효과의 증거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제11조(증거)에 명시된 요소들의 예시적 목록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¹¹⁶⁾

113) 규칙 2015/1843/EU, 제3조 1.

114) 규칙 2015/1843/EU, 제3조 2.

115) 규칙 2015/1843/EU, 제4조 1.

116) 규칙 2015/1843/EU, 제4조 2.

5) 청원(이의 제기) 절차

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청원서는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복사본을 회원국들에게 송부해야 한다.¹¹⁷⁾ 청원은 철회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해지가 'EU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¹¹⁸⁾

한편 청원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 지는 경우 이로써 이를 청원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청원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¹¹⁹⁾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이 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청원에 따라 EU 심사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은 청원서 접수 후 45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청원자의 요청이나 또는 합의에 의해 일시 중지될 수 있는데, 이는 청원자의 사건의 유효성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보충 정보 제공을 허용하기 위함이다.¹²⁰⁾

6) 회원국에 의한 요청(청원)

모든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¹²¹⁾ 회원국은 '통상장벽'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영향'에 관하여 청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집행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피해'

117) 규칙 2015/1843/EU, 제5조 1.

118) 규칙 2015/1843/EU, 제5조 2.

119) 규칙 2015/1843/EU, 제5조 3.

120) 규칙 2015/1843/EU, 제5조 4.

121) 규칙 2015/1843/EU, 제6조 1.

나 ‘부정적 무역 효과’의 증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증거는 제 11조(증거)에 명시된 요소들의 예시적 목록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한다.¹²²⁾ 그 후 집행위원회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해당 청원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¹²³⁾

한편 청원(요청)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 지는 경우 이로써 이를 해당 회원국(신고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청원(요청)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¹²⁴⁾

집행위원회는 동조(제6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기한 청원(요청)에 따른 EU 심사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결정은 청원서(요청서) 접수 후 45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해당회원국의 요청이나 또는 합의에 의해 일시 중지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회원국의 사건의 유효성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보충 정보 제공을 허용하기 위함이다.¹²⁵⁾

7) 소관 위원회(통상장벽위원회) 절차

집행위원회는 통상장벽위원회(Trade Barriers Committee: TBC)의 보조를 받는다. 통상장벽위원회는 규칙 182/2011/EU(Regulation 182/2011/E

122) 규칙 2015/1843/EU, 제6조 2.

123) 규칙 2015/1843/EU, 제6조 3.

124) 규칙 2015/1843/EU, 제6조 4.

125) 규칙 2015/1843/EU, 제6조 5.

U)¹²⁶⁾상의 의미(목적) 내에서의 위원회를 의미한다.¹²⁷⁾ 한편 이 단락(제7조)을 언급 할 때, 규칙 182/2011/EU의 제4조(자문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규칙 182/2011/EU의 제5조(심의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¹²⁸⁾

8)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에 대한 통보(정보 제공)

집행위원회는 이 규칙 2015/1843/EU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information)를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에 제공하여, 이들 기관들이 공동통상정책(CCP)에 대한 모든 광범위한 영향이나 함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²⁹⁾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과 유사한 것으로 사전에 자문이나 협의 등을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유럽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또는 미국정부의 상원에 대한 사전 보고와 같은 측면이 있다.

9) EU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1) 집행위원회의 임무수행 일반

집행위원회는 심사절차의 개시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EU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26) Regulation 182/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OJ L 55, 28.2.2011, p.13-18).

127) 규칙 2015/1843/EU, 제7조 1.

128) 규칙 2015/1843/EU, 제7조 2-3.

129) 규칙 2015/1843/EU, 제8조.

(a) 유럽연합 공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에 심사절차의 개시를 공지하고, 해당 공고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관련 국가를 표시하고, 접수된 정보의 요약을 제공하며, 모든 관련 정보가 집행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집행위원회가 구두로 청취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¹³⁰⁾

(b) 해당 심사절차의 '대상'이며, 적절한 경우 '협약'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제3국 즉 비EU국가)의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¹³¹⁾

(c) 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하여, EU 차원에서 심사를 수행한다.¹³²⁾

집행위원회는 본 청원이 조사(investigation)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결정(decide)한 경우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의 필요시 추가 임무수행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a) 수입업자, 거래자, 대리인, 생산자, 무역협회 및 조직들과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는다. 단,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이 동의를 해야 한다.¹³³⁾

130) 규칙 2015/1843/EU, 제9조 1(a).

131) 규칙 2015/1843/EU, 제9조 1(b).

132) 규칙 2015/1843/EU, 제9조 1(c).

133) 규칙 2015/1843/EU, 제9조 2(a).

(b) 제3국들의 영역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단, 이들 제3국들의 정부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식 통보를 받았어야 되고, 해당 조사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¹³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확인 작업이 수행되는 해당 회원국의 공무원들에 의한 조사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국들의 임무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정한 세부 약정에 따라 해상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¹³⁵⁾

(4) 청원자, 관련 수출업자, 관련 수입업자, 관련 국가나 국가들의 대표의 임무

해당 청원자, 관련 수출업자, 관련 수입업자, 관련 국가나 국가들의 대표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 집행위원회 및 정부들의 이용을 위한 ‘내부 서류’(internal documents)를 제외한 집행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조사한다. 단, 그러한 정보는 제10조의 의미 내에서 그 이익(EU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밀 정보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집행위원회에 의해 해당 심사절차에서 사용된 것이어야 하고, 관계자는 요청하는 정보를 적시

134) 규칙 2015/1843/EU, 제9조 2(b).

135) 규칙 2015/1843/EU, 제9조 3.

함으로서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합리적인 요청(reasoned request)을 제기해야 한다.¹³⁶⁾

(b) 심사절차에서 기인하는 주요 사실들(principal facts) 및 고려 사항들(considerations)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¹³⁷⁾

(5) 집행위원회의 청문절차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은 EU의 관보(OJ)에 게시된 고지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절차의 결과에 주로(primarily) 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을 나타내는 청문회에 대한 서면요청(written request)을 한 경우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다.¹³⁸⁾

(6) 이해당사자와의 접촉 및 기밀 유지

집행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주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접촉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이로서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들과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접촉 회의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일지라도 해당 당사자의 사건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¹³⁹⁾

136) 규칙 2015/1843/EU, 제9조 4(a).

137) 규칙 2015/1843/EU, 제9조 4(b).

138) 규칙 2015/1843/EU, 제9조 5.

139) 규칙 2015/1843/EU, 제9조 6.

(7) 집행위원회의 판정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조사가 현저하게 방해되는 경우, 판정(findings)은 이용 가능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¹⁴⁰⁾

(8) 집행위원회의 통상장벽위원회에 대한 보고

집행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통상장벽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의 복잡성으로 집행위원회가 그 심사 기간을 7개월까지 연장하지 않는 한, 보고서는 (심사)절차 개시 공표 후 5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¹⁴¹⁾

10) 기밀(보장)

이 규칙 2015/1843/EU에 따라 접수된 정보는 ‘요청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¹⁴²⁾ 집행위원회, 회원국들, 그리고 이들의 공무원들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기밀 정보 또는 심사절차의 당사자가 기밀을 기초로 제공한 정보를 당사자의 ‘특별한 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취급을 요청할 때마다 해당 정보가 ‘기밀인 이유’를 적시해야 하며, 기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을 수반(첨가)하거나 또는 정보가 요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언급해야 한다.¹⁴³⁾

만약 공개가 해당 정보의 ‘공급자 또는 출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

140) 규칙 2015/1843/EU, 제9조 7.

141) 규칙 2015/1843/EU, 제9조 8.

142) 규칙 2015/1843/EU, 제10조 1.

143) 규칙 2015/1843/EU, 제10조 2.

(significantly adverse effect)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밀로 간주된다.¹⁴⁴⁾ 그리고 기밀유지의 요청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공급자가 정보를 일반화하거나 또는 해당 정보가 일반화된 경우, 해당 정보는 주의되지 않을 수 있다.¹⁴⁵⁾

이 조항은 EU의 일반 정보 공개 및 특히 이 규칙에 따라 취해진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공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공개는 관련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관계 당사자의 정당한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¹⁴⁶⁾

11) 증거(evidence)

(1) 피해의 경우

피해(injury)의 심사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a) 문제의 시장에서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측면에서 ‘현저한(상당한) 증가 또는 감소’가 있었던 경우의 관련된 EU 수입량 또는 수출량¹⁴⁷⁾

(b) EU 산업의 경쟁자들의 가격, 특히 EU 산업 또는 제3국 시장에서 EU 산업의 가격에 대한 현저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자의 가격¹⁴⁸⁾

144) 규칙 2015/1843/EU, 제10조 3.

145) 규칙 2015/1843/EU, 제10조 4.

146) 규칙 2015/1843/EU, 제10조 5.

147) 규칙 2015/1843/EU, 제11조 1(a).

148) 규칙 2015/1843/EU, 제11조 1(b).

(c)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 주식, 판매, 시장 점유율, 가격(즉,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격의 하락 또는 가격 인상의 방지), 이익, 자본 수익, 투자, 고용과 같은 특정 경제 요소들의 경향이 나타내는 지표.¹⁴⁹⁾

(2) 피해의 위협의 경우

피해의 위협(threat of injury)이 제기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특정 상황이 실질적 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a) EU 상품과의 경쟁이 발생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율’¹⁵⁰⁾

(b) 이미 존재하거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곧 운영될 원산지 국가 또는 수출국의 ‘수출 능력’(export capacity) 및 그 수출 능력에 기인한 수출이 상기 (a)에서 언급된 시장에 존재할 가능성.¹⁵¹⁾

(3) 인과관계

개별적으로든 또는 결합하여서든 EU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의한’ 피해는 심의 중인 관행들과 무관해야 한다.¹⁵²⁾ 즉 실질적 산업피해의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한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본 사건에 대한 피해로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비귀속의 원칙’이라고 하며, 설령 실질적 산업피해의 존재

149) 규칙 2015/1843/EU, 제11조 1(c).

150) 규칙 2015/1843/EU, 제11조 2(a).

151) 규칙 2015/1843/EU, 제11조 2(b).

152) 규칙 2015/1843/EU, 제11조 3.

가 있다하더라도 그 주요 원인이 해당 산업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불황일 수도 있고, 해당 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위 산업의 몰락일 수도 있으며, 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해당 산업 상품의 수요 감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와 해당 관행들과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정적 무역 효과 청원의 경우

‘부정적 무역 효과’가 제기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역효과가 ‘EU 전체’의 경제나 ‘EU의 한 지역’의 경제 또는 EU 경제 활동의 ‘한 영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이 부정적 무역 효과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상기 1항과 2항에 열거된 유형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 무역 효과는 통상장벽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가 금지, 방해, 전용되는 통상흐름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다. 또는 부정적 무역 효과는 공급이나 제공(inputs)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품, 성분, 또는 원자재를 EU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무역 효과의 ‘위협’(threat)이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특정 상황이 실제로 부정적 무역 효과(actual adverse trade effects)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¹⁵³⁾

집행위원회는 또한 부정적 무역 효과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이 규칙 2015/1843/EU 제2조(1)(a)에 언급된 관련 국제규칙들에 따라 조치권(right of action)을 규율하는 규정, 원칙 또는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¹⁵⁴⁾

¹⁵³⁾ 규칙 2015/1843/EU, 제11조 4.

(5) 추가 조사

집행위원회는 청원서나 또는 요청서에 포함된 기타 관련 증거를 추가로 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1조 1항부터 5항에서 제시된 요소 목록과 징후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요소들과 징후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피해나 또는 부정적 무역 효과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 지침을 제공 할 수 없다.¹⁵⁵⁾

12) 심사절차의 종료 및 중지

이 규칙 2015/1843/EU 제9조에 따라 수행된 심사절차의 결과로서 EU의 이익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경우, 본 심사절차는 제7조 3항 상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종료된다.¹⁵⁶⁾

그리고 제9조에 따라 수행된 심사절차 후, 관련 제3국이나 국가들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취하여 EU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본 심사절차는 제7조 2항상의 권고절차(advisory procedure)에 따라 행동하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중지될 수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때때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조치의 적용을 감독할 수 있고, 관련 제3국에게 요청하여 필요시 점검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제3국이 취한 조치가 폐지되거나 중지 또는 부적절하게 이행된 경우, 또는 집행위원회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이 항(제12조 2항)의 두 번

154) 규칙 2015/1843/EU, 제11조 5.

155) 규칙 2015/1843/EU, 제11조 6.

156) 규칙 2015/1843/EU, 제12조 1.

재 단락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사 결과 및 이용가능한 새로운 사실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제14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회원국들에게 통지한다.¹⁵⁷⁾

그리고 제9조에 따라 수행된 심사절차 후 또는 국제분쟁해결 절차의 전 후 또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통상장벽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은 제3국 또는 EU의 '실질적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제3국(들)과의 '협정의 체결'이며, 이 경우 해당 심사절차는 제7조 2항에 언급된 권고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중지되며, 해당 협상은 TFEU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¹⁵⁸⁾

13) 통상정책조치의 채택

본 규칙 제9조에 따라 시행된 심사절차의 결과로 사실적 및 법적 상황에서 심사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통상장벽으로 인한 '피해나 부정적 무역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상규칙상의 EU의 권리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이익'을 위하여 동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는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¹⁵⁹⁾

만약, EU의 국제의무가 협의를 위한 또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절차의 사전 이행을 요하는 경우, 제3항에 언급된 조치는 해당 국제절차가 종료된

157) 규칙 2015/1843/EU, 제12조 2.

158) 규칙 2015/1843/EU, 제12조 3.

159) 규칙 2015/1843/EU, 제13조 1.

후에 만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국제절차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EU가 어떤 국제분쟁해결기구에게 국제분쟁해결절차의 결과를 이행하기에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승인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러한 승인의 결과로 필요한 EU ‘통상정책조치’는 해당 국제분쟁해결기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¹⁶⁰⁾

그리고 통상정책조치는 현존하는 국제 의무 및 절차와 양립가능한 조치이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통상정책 협상으로 인한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¹⁶¹⁾

(b) 기존 관세의 인상 또는 수입에 대한 다른 비용(charge)의 도입¹⁶²⁾

(c)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의 도입, 또는 수입이나 수출 조건을 수정하는 기타 조치의 도입, 또는 관련 제3국과의 교역에 영향을 주는 여타 다른 조치의 도입¹⁶³⁾

해당 결정에는 근거가 되는 이유를 진술하고 EU 관보(OJ)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간행물)은 또한 주로 관련 국가들 및 당사자들에게 통고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⁶⁴⁾

14) 의결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

EU가 본 규칙 제3조(EU 산업의 청원)나 제4조(EU 기업의 청원)에 따

160) 규칙 2015/1843/EU, 제13조 2.

161) 규칙 2015/1843/EU, 제13조 3(a).

162) 규칙 2015/1843/EU, 제13조 3(b).

163) 규칙 2015/1843/EU, 제13조 3(c).

164) 규칙 2015/1843/EU, 제13조 4.

른 청원 또는 제6조(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요청의 결과로서 공식적 ‘국제 협의’(international consultation) 또는 ‘국제분쟁해결절차’(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를 따르는 경우, 해당 절차의 개시, 실시(이행)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는 공식적 국제협의 또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시작, 실시 또는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¹⁶⁵⁾

그리고 본 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조치를 위한 EU는 제12조 2항 3호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택할 통상정책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TFEU 제207조 및 적절한 경우 규칙 654/2014/EU(Regulation 654/2014/EU)¹⁶⁶⁾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한다.¹⁶⁷⁾

15) 보고(Report)

집행위원회는 각료회의 규칙 1225/2009/EC(Regulation 1225/2009/EC)¹⁶⁸⁾ 제22a조에 따라 유럽의회(EP)와 각료회의에 제출되는 무역방어조치의 적용 및 시행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이 규칙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¹⁶⁹⁾

165) 규칙 2015/1843/EU, 제14조 1.

166) Regulation 654/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3286/9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Community'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OJ L 189, 27.6.2014, p. 50).

167) 규칙 2015/1843/EU, 제14조 2.

168) Council Regulation 1225/2009/EC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OJ L 343, 22.12.2009, p. 51).

169) 규칙 2015/1843/EU, 제15조.

16) 일반규정

이 규칙은 공동통상정책(CCP) 분야에서 기존의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규칙은 다음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a) 농업시장의 공동조직을 설립하는 규칙 및 이행 규정¹⁷⁰⁾

(b) 농산물로 가공된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TFEU 제352조에 따라 채택된 특정 규칙¹⁷¹⁾

이 규칙은 TFEU 제207조에 따라 취해질 수 있는 다른 조치 및 TFEU 제207조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committee)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통상장벽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EU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7) 폐지

이전 규칙 3286/94/EC(Regulation 3286/94/EC)는 폐지되며, 폐지된 규칙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에 대한 참조로 해석되어야 하며, 부속서 II(Annex II)의 상관관계표(대조표, correlation table)에 따라 독해되어야 한다.¹⁷²⁾

170) 규칙 2015/1843/EU, 제16조 (a).

171) 규칙 2015/1843/EU, 제16조 (b).

172) 규칙 2015/1843/EU, 제17조.

IV

TBR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검토: '청원권자'와 '조사절차'를 중심으로

1. 청원권자(Complainant)¹⁷³⁾

2015년 TBR에서는 통상장벽의 종류에 따라 3 종류의 청원권자가 있다.¹⁷⁴⁾ 먼저 2가지 종류의 통상장벽이 전제되어 있다(제1조). 즉 (1) EU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으로서 EU 산업에 '중대한 피해'(material injury)를 야기하는 통상장벽과 (2) 제3국 (즉 비EU국가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으로서 EU 기업에 부정적 교역 효과(adverse trade effects)를 야기하는 통상장벽이 그것이다. 청원권자를 위의 2 가지 통상장벽에 따라 구분해 보면 (1)의 경우는 단일 또는 복수의 EU 기업이나 EU 회원국이 청원을 제기할 수 있고 (2)의 경우는 공동체 산업이나 회원국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1) 첫 번째 청원권자: EU 산업(Union Industry)¹⁷⁵⁾

EU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EU 산업을 대표하여 EU 산업이나 전문적인 유관 단체에 의해서도 청원이

173) TBR과 그에 상응하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 모두 절차 개시자로 "complaina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 민사절차에서는 원고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 경우 plaintiff와 병용된다. 여기서는 어떤 위법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청원서(a bill of complaint 또는 a complaint)를 제출하는 자로 이해된다. 참고로 미국법과 달리 EU법에서는 직접효력(direct effect)에 따라 사인도 국가기관을 매개하지 않고 어떠한 EU 차원의 행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법상 사인이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는 법적 뉘앙스는 다른 점이 있다.

174) 규칙 2015/1843/EU, 제3조, 제4조, 제6조.

175) 규칙 2015/1843/EU, 제3조.

제기될 수 있다. ‘EU 산업’에는 2 가지 범주가 존재하는데, (1) ① 통상장벽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identical), 유사한(similar)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directly competing) 상품 또는 서비스의 EU내 모든 생산자 또는 공급자 또는 ② 통상장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자나 가공자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나 사용자로서 EU내 모든 생산자 또는 공급자 공동체 내의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관련 통상장벽의 영향을 받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을 말한다.¹⁷⁶⁾

다음으로 (2) 누적된 산출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EU내 총생산의 ‘상당한 비율’(major proportion)을 점하는 모든 (상품) 생산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생산자나 공급자가 수출입업자와 관계되거나 그들이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업자일 경우는 기타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EU 산업이 되고 특별한 경우, EU의 일정 지역 내의 생산자들이나 공급자들이 EU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⁷⁷⁾ 관련하여 EU 반덤핑규칙¹⁷⁸⁾ 제5.4조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50%와 25%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2) 두 번째 청원권자: EU 기업(Union Enterprises)¹⁷⁹⁾

또한 청원은 단일 또는 다수의 EU 기업을 대표하여 EU 기업이나 (법인격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association)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된 통상장벽이 제3국의 시장에 부정적 교역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176) 규칙 2015/1843/EU, 제2조 1(e)(i).

177) 규칙 2015/1843/EU, 제2조 1(e)(ii).

178) OJ L176/21 (2016), Regulation 2016/1036/EU.

179) 규칙 2015/1843/EU, 제4조.

다. EU 기업은 EU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등록된 사무실과 중심적인 행정 또는 영업의 주된 장소를 공동체내에서 영위하는 기업으로 문제된 통상장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 생산 및 서비스 공급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¹⁸⁰⁾ 따라서 TBR에 의해서 자회사(subsidiary)는 청원할 수 있지만 영업지국(branch)은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된 통상장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 생산을 하는 기업’이란 EU 기업으로 그러한 상품을 공급, 투입 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로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세 번째 청원권자: EU 회원국(Member State)¹⁸¹⁾

28개 EU 회원국도 또한 위의 두 가지 유형의 통상장벽에 대해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단일국가가 국제무역규정상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EU 시장 또는 제3국 시장을 불문하고 ‘중대한 피해’ 또는 ‘부정적 교역효과’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집행위는 회원국 청원이 있는 경우 기타 회원국들에 즉시 통보하고,¹⁸²⁾ 집행위는 앞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45일 내 조사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¹⁸³⁾

2. 조사절차

1) 청원서 제출

공식적 청원 전에 청원권자는 집행위와 절차 협의를 위한 비공식적 접촉

180) 규칙 2015/1843/EU, 제2조 1(f).

181) 규칙 2015/1843/EU, 제6조.

182) 규칙 2015/1843/EU, 제6조 3.

183) 규칙 2015/1843/EU, 제6조 5.

이 권고되고 집행위 관련부서가 청원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¹⁸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복사본 3부를 같이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청원은 다음으로 자문절차로서 통상장벽위원회(TBC)에서의 협의를 위해 회원국에 회람된다.¹⁸⁵⁾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⁸⁶⁾

(1) 통상장벽에 영향을 받는 상품 및 서비스 적시: ① 기술적인 사항 및 관세 분류, ②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입, ③ 생산 및 판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청원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적시: ① 이름, 주소, 대표성, ② 청원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생산물, 수익, 고용 종업원 수 등), ③ 해당 통상장벽과 청원자 생산물과의 관련성, ④ 청원자 관련 교역자료 등이 포함된다.

(3) 통상장벽에 관한 일응의(prima facie) 증명: 이는 TBR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통상장벽의 존재에 대한 증빙자료를 의미한다. 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즉 ① 모든 관련 법규의 복사본과 함께 통상장벽의 사실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만약 제3국의 무역관행에 관한 법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청원자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관련성과 무역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업자나 판매대리점의 주장 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무역관행의 진행에 대한 요약, ③ 만약 동 관행에 대해 이전의 제소가 있는 경우는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84) EU집행위, "Trade Barriers Regulation: Opening Markets for European Exporters"(2008), p.7.

185) 규칙 2015/1843/EU, 제5조, 제6조.

186) EU집행위, *supra* note 123, pp.10-12.

2) 조사개시의 결정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원 제기 후 45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45일이라는 기한은 청원자의 추가적 정보제공을 위해 연장될 수도 있다.¹⁸⁷⁾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EU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¹⁸⁸⁾

3) 조사 및 보고서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정보(confidentiality)의 취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¹⁸⁹⁾ 조사는 원칙적으로 5개월을 넘지 말아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¹⁹⁰⁾ 조사 종결 후 통상장벽위원회(TBC) 내의 회원국에 보고서가 제출된다. 동 보고서는 법적 및 사실적 쟁점의 정리를 통해 국제무역규정상 가능한 대응과 제3국에 교정 요청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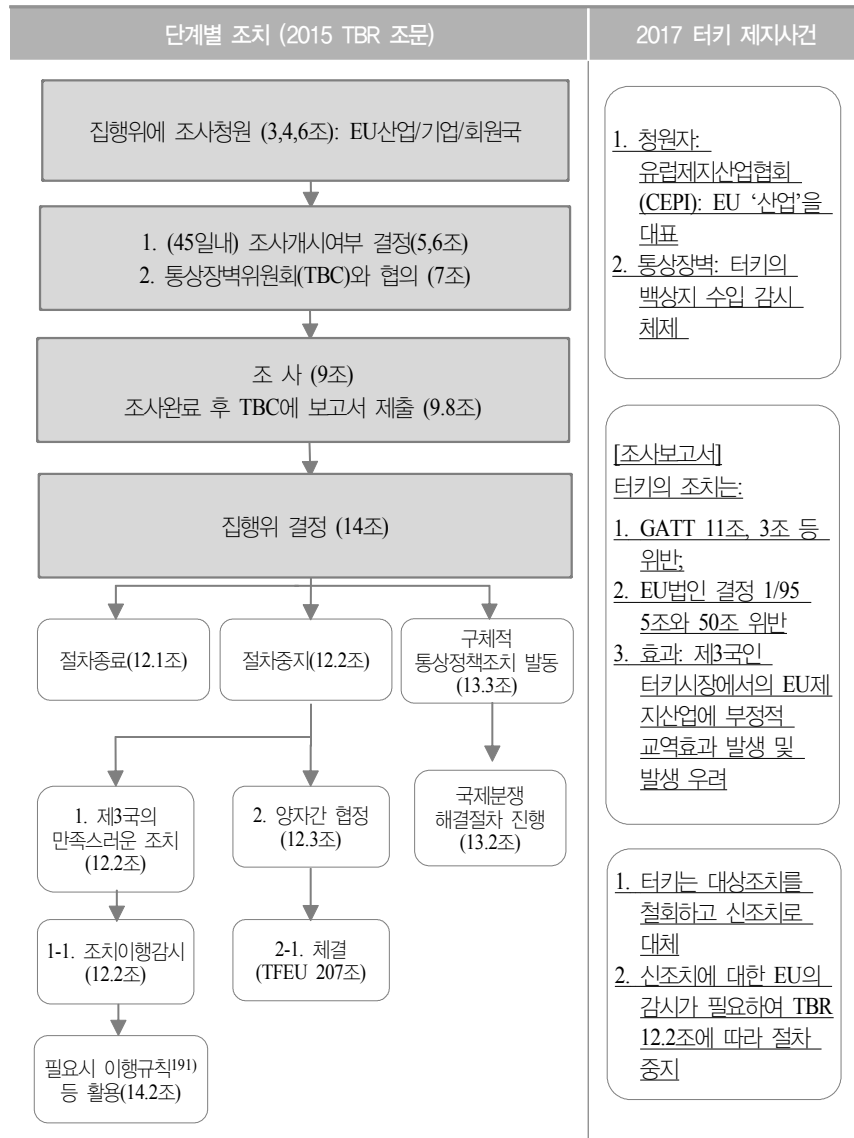
187) 규칙 2015/1843/EU, 제5조, 제6조.

188) TFEU 제263조.

189) 규칙 2015/1843/EU, 제10조.

190) 규칙 2015/1843/EU, 제9조 8.

〈그림〉 TBR 조사절차 (2017년 터키 제지사건 사례)



191) OJ L 189/50, Regulation 654/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V

TBR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검토: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1. 통상장벽의 의미

TBR은 제1조에서 각종 통상장벽에 대해 EU가 국제무역규범(international trade rules)상 실행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면서, 무역에 관한 현재 또는 잠재적 통상장벽을 교정할 수 있는 EU의 국제무역규범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우선, TBR의 대상인 통상장벽의 범위는 “제3국(비EU국)’에 의해 채택 또는 유지되고 있는 ‘무역(에 관한)조치’(trade practices)로서 국제무역규범상 ‘EU에게 제소권’(right of action)이 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¹⁹²⁾ 입법적으로 통상장벽은 1984년 NCPI 제1조에서는 제3국의 ‘위법한 무역조치’와 전자를 포함하여 EC가 ‘국제규범상 제소권이 있는 제3국의 무역조치’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나 1994년 TBR부터는 통합되어 나타난 요건이다.¹⁹³⁾

먼저 ‘무역조치’는 제3국 기관에 귀속가능한 법규나 요건에 근거한 행위로¹⁹⁴⁾ 해석된다. 또한 ‘국제무역규범’은 복수국간 협정을 포함한 다자무역협정, 특히 WTO 협정을 주로 지칭하고 양자간 협정도 이에 포함된다. 따

192) 규칙 2015/1843/EU, 제2조 1(a): “(a) ‘obstacles to trade’ means any trade practice adopted or maintained by a third country in respect of which international trade rules establish a right of action;[...]”

193) EC집행위, “Uruguay Round Implementing Legislation”, COM(94) 414 final(1994), pp.334-336 참조.

194) EU집행위, “Interim Evaluation of the European Union’s Trade Barrier Regulation (TBR)”(2005), p.7.

라서 TBR의 통상장벽은 ‘제소가능한’(actionable) 통상장벽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장벽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 상품 무역과 관련해서는 관세표준이나 평가, 차별적인 세제, 관세평가제도, 수출입에 관한 수량제한, 수입 인증, 원산지 증명과 라벨링(labelling) 제도 등이 있고, ②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는 WTO/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예를 들면 GATS상 최혜국대우나 국내규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원칙(GATS 제6조) 위반 또는 GATS하의 구체적 약속의 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¹⁹⁵⁾ ③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상표의 원본 라벨의 위조나 소프트웨어 또는 음반의 해적판 녹음 등이 예가 된다.¹⁹⁶⁾

따라서 TBR상의 조사 청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청원하려는 통상장벽이 제3국 정부와 공적인 관련을 가지고 채택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제관습법상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의 ‘국가행위’에 관한 제2조(a)와 맥락을 같이한다. TBR 청원의 대상인 되는 제3국의 무역조치 형식에 대해서 ‘모든 무역실행’(any trade practices)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¹⁹⁷⁾ 다소 모호하나 그 문언과 맥락을 보면 미국 통상법 제301조와 같이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을¹⁹⁸⁾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로는 공공기관의 작위(예를 들면, 불충분한 입법, 내국인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정조치,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 등), 또는 부작위(예를 들면,

195) 규칙 2015/1843/EU, 제2조 1(g).

196) 1996년 11월부터 개설된 ‘The Market Access Database’(http://madb.europa.eu/madb/indexPubli.htm)에서 EU 수출과 관련된 국가별, 분야별 통상장벽을 일람할 수 있다.

197) 규칙 2015/1843/EU, 제2조 1(a).

198) 19 USC § 2411(a).

국제조약에 의해 의무가 강제된 국내법규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입법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복제나 해적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강제절차의 흠결 등)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동 실행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나 방조를 받는 사인의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국제무역규정에 의해 제소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소권은 국제무역규정이 어떠한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WTO 비차별원칙 위반 등)나 그러한 국제무역규정에 따라 EU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제소권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금지된 보조금)에 주어진다.

2. 통상장벽의 ‘부정적 효과’

1) 개요

TBR 요건 중 가장 복잡하고 다의적인 것이 통상장벽에 의한 ‘중대한 피해’(material injury) 또는 ‘부정적 무역 효과’(adverse effects on trade)에 관한 것이다.

연혁적으로 보면 1984년 NCPI에서는 2 가지 접근을 통해 제3국의 통상장벽에 대응하려고 했다. 첫 번째는 외국의 ‘부당한’ 조치(illicit practices)로 중대한 피해를 겪은 공동체 ‘기업’이 조사청원 하는 경우가 있고,¹⁹⁹⁾ 두 번째는 국제무역규범에 의해 제소권이 주어지는 경우로 외국의 부당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경우에 회원국이 조사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99) 규칙 2015/1843/EU, 제3조.

것이다.²⁰⁰⁾ 여기서 ‘부당한’(illicit)의 의미는, ‘위법한’(illegal)과 달리, 제3국의 통상조치가 GATT(또는 WTO)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공동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또는 제3국이 GATT 가입국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²⁰¹⁾ 그에 따른 ‘중대한 피해’ 요건은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조치와 같은 다른 무역보호조치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두 번째 경우의 국제규범에 의해 제소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GATT 제23조의 비위반제소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1994년 TBR에서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 효과’라는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²⁰²⁾

2) 부정적 효과와 비위반제소

TBR의 ‘부정적 효과’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은 논의와 결정예가 있는 비위반제소 개념을 통해 TBR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GATT/WTO 상 비위반제소란 어떤 회원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는가를 불문하고 그 조치가 협정상 이익을 무효화(nullifying) 또는 침해하는(impairing) 경우 침해된 이익에 대해 양자간 협의나 다자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만족할 만한 조정’(satisfactory adjustment)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상 소인(제소요인)의 하나이다.²⁰³⁾

그간의 GATT/WTO의 사법적 결정에 의해 확인된 비위반제소 요건은 (1) 회원국에 의한 조치 적용, (2) 관련된 WTO 협정하의 이익의 존재, (3) 그 조치 적용의 결과로 인한 이익의 침해 또는 무효화(nullification or

200) 규칙 2015/1843/EU, 제4조.

201) P. Jan Kuijper, et als., *The Law of EU External Relations* (Oxford UP, 2015), p.434 참조.

202) 규칙 2015/1843/EU, 제2조 4.

20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산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pp.51-53 참조.

impairment of the benefit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이다.²⁰⁴⁾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TBR의 ‘부정적 교역효과’는 EU의 경제적 이익 침해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사실상 ‘중대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사례의 청원내용이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 사실상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3)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정리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첫 번째 TBR 사례이기도 한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1916년 법’)에 대한 1997년 청원 조사보고서를 통해 TBR 통상장벽의 효과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동 사례는 유럽철강산업협회가 철강산업을 대표하여 미국의 ‘1916년 법’을 TBR에 따라 조사 청원한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고서는 동 법이 ‘통상장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WTO 반덤핑협정, GATT 제3.4조 등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WTO DSB에 제소하였다. 또한 ‘1916년 법’에 근거한 미국내 소송은 철강을 수출하는 당시 EC 기업의 미국내 활동을 위축하였고(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부정적 효과), 그에 따른 판매 부진은 EC 내의 철강산업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EC내의 부정적 효과), 향후 ‘1916년 법’에 근거하여 제기될 추가 조치는 ‘부정적 효과 우려’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²⁰⁵⁾ 따라서 실제에서는 부정적 효과의 장소적 범위나 그 정도 등에서 혼용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4) 대표적으로 WTO Panel Report, WT/DS44/R (“Japan-Film”), para.10.41.

205) EU집행위, DGIE3/EM D (1997), p.13 참조.

〈표 4-3〉 TBR의 실제적 요건의 변화

구분	1984년 NCPI	1994년 TBR	2015년 TBR
청원자	1. 공동체 생산자 (3조) 2. 회원국 (4조)	1. 공동체 산업 (3조) 2. 회원국 (6조) 3. 공동체 기업 (4조) (추가)	1. EU 산업 (3조) 2. 회원국 (6조) 3. EU 기업 (4조)
무역실행 (청원대상)	1. 위법한 실행(illicit practice) [1조(a)] 2. (제3국의 무역실행을 포함) 공동체의 국제법상 권리실행 [1조(b)]	1~3. 통상장벽 (1조) (통합)	1~3. 통상장벽 (1조)
부정적 효과	1. 중대한 피해(material injury)[1조(a)] 2. 관련 국제법에서 요구되는 것 [예를 들어 GATT의 경우는 이익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 요건]	1. 중대한 피해 (3.1조) 2. 중대한 피해 또는 부정적 교역효과 (6조) 3. 부정적 교역효과(adverse trade effect) (4.1조) (추가)	1. 중대한 피해 (3.1조) 2. 중대한 피해 또는 부정적 교역효과 (6조) 3. 부정적 교역효과 (4.1조)
효과발생 시장	1 & 2. 공동체 시장 또는 제3국 시장 (3.1조 & 4.2조)	1. 공동체 시장 (3.1조) 2. 공동체 또는 제3국 시장(6조) 3. 제3국 시장(4.1조)	1. 공동체 시장 (3.1조) 2. 공동체 또는 제3국 시장(6조) 3. 제3국 시장(4.1조)

VI TBR 사례 연구²⁰⁶⁾

다음 사례 연구들은 다양한 경로의 예들이며, TBR 청원들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졌다.

1. 제3국의 만족스러운 조치 사례

1) 콜롬비아

수입차에 대한 세금 차별(Tax discrimination on imported motor vehicles)

2000년 7월 7일에 Volkswagen AG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장벽은 최대 1400cc의 용량의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자동차를 차별하는 ‘콜롬비아 자동차 VAT 체제’였고, TBR 조사가 2000년 8월 18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분쟁이 된 관행은 1994년 GATT 제3조상의 콜롬비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206) 이하 사례는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Trade, *Trade Barriers Regulation (TBR)*, 2008 Brochure 참조.

(2) 결과

EU와 콜롬비아는 콜롬비아가 수입차에 대한 ‘현재의 차별적 세금’을 1400cc까지 증가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차별적 VAT를 2005년 7월 1일까지, 2 개월마다 1 또는 1.5 %의 비율로 주기적, 정기적 및 지속적 감소를 통하여 제거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첫 번째 감액은 2003년 7월 1일에 적용되기로 하였다.

상기 차별적 VAT의 점진적인 제거를 규정하는 법률 초안은 2002년 12월 27일 콜롬비아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따라서 해당 TBR 절차는 2003년 5월 20일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해 중단되었다. 본 사건은 상호 합의되어 해결되었다.

2) 캐나다

❖ 보르도 메독(Bordeaux Médoc)

2001년 12월 6일 CIVB(Conseil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Bordeaux)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지리적 표시 “Bordeaux” 및 “Médoc” 등의 표시로, TBR 조사는 2002년 5월 25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본 조사 결과, 캐나다 상표법(Canadian Trade Marks Act)에 대한 C-57 개정안이 TRIPS 제23.1조 및 제2조뿐만 아니라 제24.3조(소위 정지조항(standstill clause))를 위반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침해는 TRIPS

제24.6조에 따른 예외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청원자의 법적 주장을 확인하였다.

(2) 결과

2003년 4월 24일, 집행위원회는 와인과 주류 거래에 관한 캐나다와의 양자협정을 시작했으며, 이 양자협정의 발효로서 “Bordeaux”, “Médoc” 및 “Médoc” 등 캐나다에서 “일반적(총체적)”(generic)으로 표시된 이름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2003년 7월 9일, 집행위원회는 양자협정이 발효되자마자 심사절차를 중단하기 위해 본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6월 1일, 위에서 언급한 양자협정이 발효되어 캐나다는 보르도(Bordeaux)와 메독(Médoc)을 C-57 개정안에서 제공한 일반 명칭(generic names)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TBR 절차가 종료되었다.

본 사건은 상호 합의된 해결의 결과를 달성하였다.

2. EU 후속조치가 필요했던 사례

1) 한국

❖ 화장품 수입 규정(Regime for imports of Cosmetics)

1998년 4월 2일에 COLIPA가 청원을 제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한국에서의 EC 화장품 제품의 수입 및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

(adversely affect)을 미치는 한국의 표준 및 기타 요건들이었으며, TBR 조사는 1998년 5월 19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화장품의 수입 및 영업에 관한 한국의 제도는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WTO 협정(TBT협정)의 규정들에 위배되며, 수입 제품이 현지 생산품과 다르게 취급됨에 따라 EC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2) 결과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로 1999년 7월 한국 당국과 EC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합의는 EC 생산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표준이 한국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당국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제도 변경' 결정을 발표했으며, 화장품에 관한 새로운 법규와 시행세칙을 도입하였다.

그런 다음 집행위원회는 1999년 협정의 올바른 적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새로운 법규 및 시행규칙'과 '해당 협정 및 국제무역규칙 및 관행'과의 합치성을 검증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하에, 집행위원회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기적으로 EU 회원국들에게 보고하였다. EU와 한국은 당시 EC 화장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데 있어 '남아있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제안한 "공유 합의된 목표"를 계속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2) 브라질

섬유(Textiles)

1998년 1월 12일 FEBELTEX(Belgian Textile Federation, 벨기에 섬유 연합)이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브라질의 비자동 수입허가 시스템(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system)은 섬유 제품에 적용되며, 의무 지불 조건과 최소 가격을 통해 운영된다는 것이었으며, TBR 조사는 1998년 2월 27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본 조사는 브라질 당국이 ‘최소 가격’ 및 ‘의무 지불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특정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거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WTO협정상의 몇몇 규정들(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및 GATT 1994상에서의 몇몇 규정들(제X조, 제XI.1조) 하에서의 브라질의 의무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였다.

1999년 10월 14일, EC는 1999년 11월 19일에 개최된 WTO 협의 절차를 요청했다. 집행위원회는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당국은 TBR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섬유 제품을 비자동 수입 허가 시스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TBR 절차는 2001년 6월 8일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단되었다. 정지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EC 산업과 긴밀히 접촉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여, 브라질이 자유 이동을 위해 출시시 적용되는 최소 관세 가치를 통하여 동일 제품에 최소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결과

EU와 브라질은 2002년 11월 6일 ‘섬유 무역 자유화’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 하였으며,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자는 어떠한 비관세 장벽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관세 평가(customs 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의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통상장벽이 제거되면 해당 조사 절차의 종료를 예상할 수 있었다.

3) 아르헨티나

❧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입에 관한 조치(Measures concerning import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1999년 10월 11일 Euratex(European Apparel and Textile Organisation, 유럽 의류 및 섬유 기구)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헨티나가 유지 관리하는 특정 조치들로 선적 전 통제의 반복 및 관세 평가 절차에 따른 처벌,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과도한 요구 조건으로 인한 상품 운송의 방해, 세관 서류 및 라벨링에 관한 과도한 요구 조건 등이었다. TBR 조사는 1999년 11월 27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일부 조치가 GATT/WTO 규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요구 조건’이 GATT 제VIII.1(c)조, 제VIII.3조, 제X조 및 제XI.1조 및 WTO 섬유 및 의류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제7.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링 요건’에 대해, TBR 조사는 WTO 무역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제2.2조 및 GATT 제 VIII.1(c)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선적 전 검사 통제의 반복과 특정 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특정 국제적 의무에 대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검사 대상 제품의 수입에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형식을 추가하고, 거래에 불리한(비우호적인) 맥락을 조성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결과

조사 후, 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아르헨티나 당국과 상기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평가 관행과 관련하여 지난 3 년 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관세 평가를 위한 지표 가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투명성(transparency)이 향상되었다.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제거되었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에 있어서, 2002년 2월의 새로운 법안은 현재의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EU로부터의 수출을 촉진할 것이다. 라벨링 측면에서 2007년에 채택된 새로운 규칙으로 보완된 새로운 라벨링 규칙이 도입되면서 고무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 절차는 2008년에 종료되었다.

4) 한국

❖ 의약품 수입 규제(Regime for imports of Pharmaceuticals)

1999년 6월 5일 EFPIA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한국 시장에서 EC 의약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가격결정 및 상황에 관한 규칙 및 관행상의 차별이었으며, TBR 조사는 1998년 7월 30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본 조사의 결과 한국에서 수입 의약품의 가격책정 및 환급 시스템은 WTO GATT 협정의 규정들에 위배되며, 수입 제품이 현지에서 생산된 것과 다르게 취급되어 EC 산업에 부정적 무역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U 산업의 다른 문제들은 신약의 임상 시험 및 신개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의 존중과 관련이 있었다.

(2) 결과

조사 과정에서, 한국은 기존의 법적 차별 요소(existing de jure discriminatory elements)를 제거하는 법률상의 상당한 변화를 취하였고, 이로서 수입 제품이 현재 상환 가능한 의약품 및 수입 제품 목록에 처음으로 허용되도록 법률을 크게 변경했으며, 이제는 국내 제품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상환되었다. 새로 수입된, 주로 혁신적인 R&D 기반 의약품의 가격은 현재 7개 선진국(소위 A-7 국가들)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실질 거래 가격(ATP)을 기준으로 한 상환 제도(reimbursement system)를 도입하여 기존의 불법 할인의 관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종종 욕설을 불러 일으켰던 처방하는 의사나 기관들이 약을 조제하는 만연한 광범위한 관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및 처방의 의무적 분리제도’(SDP)를 도입했다.

의약품의 가격 책정 및 상환(환급)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한국 시장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였다. 이러한 관행의 관찰 동안, 실제로 혁신 의약품이 A-7 국가들 평균을 기준으로 한 표준 의약품 가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 의약품 가격 책정 규칙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위원회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가격 및 상환 규칙을 계속 수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의료 예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당시 가격 및 상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측과의 토론에서 주요 주제였다. 임상 시험 및 지적 재산 문제는 여전히 논의 대상 목록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2006년 말 가격 및 상환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2006년 12월 26일, 한국은 개혁 체제의 이행 방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와 한국 당국 간에 서신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EU 제약 산업에 대한 일부 우려 사항이 남아 있었다.

3.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

1) 미국

미국의 국경 간 음악 라이선스(Cross-Border Music Licensing in the USA)

1997년 4월 21일 IMRO(Irish Music Rights Organization)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바닥면과 시청각 기자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라디오 또는 TV로 음악 작품 방송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무가 있는 ‘저작권 면제’의 레스토랑, 바, 상점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 대한 미국 법률이었으며, TBR 조사는 1997년 6월 11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조사 결과 TRIPS협정 제9(1)조 및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제11조 및 제11bis조 위반이 발견되었다.

(2) 결과

미국 당국과의 비공식 협의는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1998년 12월 22일, 집행위원회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패널이 설치되었다. 제110(5)조(Section 110(5))의 WTO 불합치성을 판단한 패널 보고서가 2000년 7월 26일 분쟁해결기구(DBS)에 의해 채택되었다. 패널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에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EU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고, 영향을 받는 EU 권리 보유자들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임시 해결책에 대한 원칙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중재 패널은 그러한 손실의 정도를 결정하는 임무를 위임받았다. 2001년 11월 9일, 중재자는 EU 권리 보유자들에 의한 로열티 수입 금액을 연간 1,100만 달러로 판정하였다. 330만 달러에 대한 미국의 일시불 지급을 근거로 미국과 EU는 3년의 기간을 포함하는 임시 협정을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 미국은 입법이 TRIPS협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했다.

해당 청원자는 조사 결과, 패널 보고서, 그리고 미국과의 임시 합의에 만족하였다. 이 청원자는 제110(5)조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해당 중재인이 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EU 권리 보유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2) 미국

미국 반덤핑법(US Anti-Dumping Act)

1997년 1월 10일에 EUROFER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1916년 미국 반덤핑법(Anti-Dumping Act, 1916)은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또는 판매할 때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 또는 도매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TBR 조사는 1997년 2월 25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조사결과 GATT 1994의 위반 및 WTO 반덤핑협정과 WTO 설립협정상의 규정들에 대한 위반이 밝혀졌다.

(2) 결과

미국 당국과의 비공식 협의는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1998년 4월 28일, 집행위원회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식적인 협의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패널이 설치되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미국이 여러 WTO 규정들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지속적인 준수 부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WTO 승인(authorization)을 요청하였다. 2004년 2월, WTO는 EU가 적절한 시기에 '미국의 덤핑행위 제품'에 대해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채택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3) 한국

❧ 한국에 관한 TBR 사례 - 상업용 선박의 무역 상계 조치(TBR Case concerning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2000년 10월 24일 CESA(Committee of European Union Shipbuilders Associations, EU조선협회위원회)가 청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무역 장벽은 한국의 한국 조선 업체에 부여된 보조금 또는 혜택의 부여였으며, TBR 조사는 2000년 12월 2일에 개시되었다.

(1) 조사 결과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로 국가소유인 한국수출입은행(Korean Export-Import Bank: KEXIM)의 수출제도, 부채탕감, 그리고 정부소유

또는 정부통제의 재정기관들에 의한 부채-주식 교환(debt-to-equity swaps)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상당량의 보조금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문제의 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의 의미 내에서 여러 주요 민간상업선박(commercial vessels) 부문에 있어서 EU산업에 중대한 피해 및 심각한 손상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2) 결과

2001년 11월 CESA는 2001년 EU 산업이 부정적 효과로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TBR 보고서의 갱신을 요청하였다. 이 업데이트 조사는 첫 번째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기간 내내 집행위원회는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분쟁을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EU와 한국 사이에 2002년 8월과 9월 두 차례의 양자협상이 실패한 후 집행위원회는 WTO 협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요청은 2002년 10월 21일에 개시되었다. 2002년 11월과 12월에, 2003년 5월에 3 차례의 협의가 이루어 졌으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EU는 2003년 6월 24일에 패널을 요청했으며, 패널은 2003년 7월 21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설치되었다. 패널 보고서는 2005년 3월에 발행되었다. 집행위원회는 패널의 권고 사항 이행을 모니터링 하였다.

VII 맺음말

TBR은 국제화시대에서 통상주체의 국내법규와 국제무역규정 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EU의 통상법규이다. 따라서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TBR이 얼마나 국제무역규정과 조화롭게 규정 및 운용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TBR 유형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조사절차에 관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통상장벽’의 기준과 범위 문제인데, 국제무역절차와의 합치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절차적으로는 ‘제소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제소가능성’ 또는 소인(제소요인)과 관련해서 국제무역규범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WTO의 소인인 GATT 제23.1조(무효화 또는 침해)와 DSU 제26조(비위반제소)의 내용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TBR은 그간 개정으로 국제무역규범과의 비합치가 대부분 교정되었지만, EU 공동통상정책(CCP)의 범위나 운용이 향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무효화를 그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장벽의 부정적 효과와 관련해서 현재 TBR은 장소적으로 EU 내와 제3국으로 나누어 각각 ‘중대한 피해’와 ‘부정적 교역효과’라는 겹쳐지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제무역규범에서 ‘중대한 피해’ 등을 근거한 반덤핑 등의 ‘무역구제’(trade remedies)제도가 국내산업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존치될 수밖에 없지만 그 기준에 대한 각종 분쟁해결절차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정적 교역 효과’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083호, 2017. 11. 28.)이나 관세법 제51조 등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점이라 판단된다.

저자 소개

김대원 [책임저자], (現)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환 [공동저자], (前)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EU 무역방어제도(TDI)

| 발행일 | 2020년 2월

| 발 행 | 법무부 국제법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 2110-3661~2
Fax. 02) 2110-0327

| 인 쇄 | 동광문화사 ☎ 02) 503-5165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1067-01